연구보고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이민희(평택대학교·교수)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 노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김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차년도 과제로서 아동권리협약에서 분류한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의 지표를 검토·보완하여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개발하고자 실시함.

- 상기 설문도구를 활용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발달권·참여권 영역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가늠하고자 함.

- 발달권·참여권영역에서의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며, 인권신장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반복횡단자료의 축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국제기준대비 OECD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내용

-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산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부분적으로 개발된 설문도구를 검토하여 올해에는 전체 4개의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분야에서 지표의 보완과 추가산출 작업을 수행함.

---

*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표준화란 척도의 타당도와 문항 간 신뢰도 분석을 통한 표준화작업이 아닌 - 인권문항이 하나의 지표를 대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은 불필요함 - 인권변화양상의 시계열적 횡단자료의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될 기본조사도구를 개발한다는 의미임.

-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표준화된 설문도구의 개발을 위해 기(旣) 개발된 지표항목들 중 관심영역별 대표항목을 선별·추가하여 관계전문가·실무자 등과의 협의를 진행함.

-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새로운 지표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영역의 모든 지표를 포괄하는 133문항(청소년용 기준)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였음.

- 새로 개발된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 95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보고서는 총 세 종으로 발간되었으며 Volume I는 정성지표 중심의 연구보고서로 지표개발과정과 정책제언 중심으로, Volume II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분석중심의 자료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olume III는 행정지표를 토대로 세부별 현황과 정책적 제안을 기술하고 있음.

- 조사결과보고서(Volume I.II)에 행정통계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추가하여 (보고서 Volume Ⅱ) 해당 정성지표 중심의 설문조사결과를 보완했으며, 정성·정량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환경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

-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참여권분야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있는 중요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연령층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음.

[발달권영역 주요 실태결과 요약]

-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아동과는 달리 성적하위 집단이나 경제수준 하위집단 청소년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남.
- 학업 포기의 이유로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높게 나타남.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집단 보다, 조손 및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집단보다 학업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부모자녀관계,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가정 학교 및 친구에 대한 만족정도, 전반적인 행복감정도에서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이 중간 및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남.
-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 및 정서적 고립감 정도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집단에서 높았음.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수준은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이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에 대한 가입율도 아주 낮았음.
- 갈등해결방식 중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회피, 양보전략을 주로 사용함. 지배전략을 사용한다는 빈도는 매우 낮았음. 협력전략과 양보전략의 경우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 상위집단 아동·청소년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관찰됨.
- 청소년의 60%가 진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만족정도 수준은 낮았음. 진로준비행동 정도와 진로직업 태도는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높았음.

-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중학생의 45.5%는 인문계 진학, 추후결정이 28.8%,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15.1%, 전문계 진학이 9.3%로 나타났음.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6.5%가 4년제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음. 2년제 대학진학과 졸업 후 취직은 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 및 중간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충분했지만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부족하게 나타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양부모가정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양호하게 평가함.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남.

[참여권영역 주요 실태결과 요약]

-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낮았으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등에 있어 아동·청소년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 인권은 유보되는 측면이 있었고,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며 잠재적 문제집단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미흡하였는데, 학내 매체, 학생회, 동아리 등 의견표현 통로나 자치모임 운영의 민주성과 활성도, 학생 자율성 보장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 반영 수준도 낮았으며,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결정 시 학생의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아동·청소년정책과 시설 설치·운

영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로 '학교성적 반영'을 1순위로 꼽고 있음(중·고등학생).

- 참여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정책 홍보자료와 인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인권교육 실시 정도도 매우 미흡함.

-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요인이자 활성화 방안으로 '시간부족'과 '정보부족', '사회의 편견' 등의 사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아동·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은 인권 옹호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3. 정책적 제언

[아동의 발달 · 참여권 관련 정책제언]

- 아동의 성장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정책 수립이 요청됨.

- 아동정책이 수립되면 각 정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성과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아동지표 및 정책 성과지표의 확립이 요구됨.

-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과 방법을 도입할 의무와 표출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명시할 수 있는 '아동참여'에 대한 논의 공론화 및 체계화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아동정책조정기구 활동 및 운영 재개가 요청됨.

-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으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동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집행할 아동 담당 부서의 확대 및 핵심연구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함.
- 아동의 자기 의견표명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환경조성과 여러 장치에 의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 지도자,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청소년 발달권 · 참여권 관련 정책제언]

- 청소년 발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안하여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발달권 규정과 과학적인 지표체계 구축
-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개선을 정책방안 마련
- 청소년들이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정서적 발달 정책 개선방안 마련
- 동아리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청소년의 직업적 발달을 위해서는 체계적이 진로교육의 실시와 지역사회의 직업자원을 종합한 직업자원지도의 작성 및 직업현장과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
- 충분한 수면 시간의 확보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도록 학교체육과

사회체육 활동 강화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담당자, 청소년지도자,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참여에 관한 정책과 제도, 경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실제 참여 행동의 전제로서, 이를 위한 참여 정보의 제공과 참여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

- 아동 · 청소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참여 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도시) 모델 형성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집단과 세대간, 부문간 참여 협력 체계가 요청됨.

-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의 증진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밑으로부터 정책 참여 활성화와 비제도권 참여 수렴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함.

-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 · 청소년 참여 관련 국제 교류 활성화를 강화함.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방법 ····· 6

Ⅱ. 이론적 배경 ····· 9

1. 2006~2009년 아동과 청소년 관련 인권연구에 대한 고찰과 전망: 발달권 및 참여권을 중심으로 ····· 11

1)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1

2)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관련 4개년도 선행연구 분석 ·· 27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시사점 ····· 57

4) 2010년도 인권수준연구에 대한 개관 ····· 65

Ⅲ. 지표 및 설문도구 개발 ····· 73

1. 201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설문체제 개발방향 ····· 75

2. 지표산출과 설문문항 개발과정에 대한 개요 ····· 77

3.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 ····· 79

1)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개별지표의 타당화조사 ····· 79

2) 발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 80

3) 참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 83

4.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 87

5.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 90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 · 참여권 실태조사 표본설계 ····· 97
1. 조사실시의 목적과 필요성 ····· 99
2. 모집단 ····· 99
1) 목표모집단 ····· 99
2) 조사모집단 ····· 99
3) 모집단 층화 ····· 100
3. 표본설계 ····· 105
1) 표본크기 ····· 105
2) 표집방법 ····· 106
3) 모수추정 ····· 109
4) 무응답의 처리 ····· 112
4. 표본응답률 및 대체율 ····· 113
1) 표본응답률 ····· 113
2) 표본대체율 ····· 113

Ⅴ. 아동·청소년 발달권 · 참여권 실태조사결과 ····· 117
1.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 119
1) 조사결과 분석방법 ····· 119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19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 123
1) 발달권 영역에서의 조사 개요 ····· 123
2) 결과요약 및 시사점 ····· 125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 132

Ⅵ.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 참여권 정책방안 ····· 139
1. 아동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 141
1)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 환경 ····· 142
2)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 ····· 148

3)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정책방안 ····· 158
4) 결 론 ····· 167
2. 청소년의 발달권 · 참여권 정책방안 ····· 168
1) 청소년 발달권 정책방안 ····· 168
2) 청소년 참여권 정책방안 ····· 179

참고문헌 ····· 193

표 목차

<표 Ⅱ-1-1> 청소년 발달권 지표(2006) ····· 30
<표 Ⅱ-1-2> 청소년 발달권 지표(안) ····· 31
<표 Ⅱ-1-3> 발달권 관련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 32
<표 Ⅱ-1-4> 2006~2008 청소년 발달권 지표항목 및 실태조사 문항 ····· 34
<표 Ⅱ-1-5> 2006년 청소년 참여권 지표 분류체계 ····· 42
<표 Ⅱ-1-6> 참여권 관련 UN에 제출된 2차 정부보고서 내용 ····· 44
<표 Ⅱ-1-7> 2006~2008 청소년 참여권 지표항목 및 실태조사 문항 · 47
<표 Ⅲ-3-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 81
<표 Ⅲ-3-2> 2010 아동·청소년 참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 86
<표 Ⅲ-4-1>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 89
<표 Ⅲ-4-2> 초등학생용 설문지에서 제외된 개별지표항목 ····· 90
<표 Ⅲ-5-1> 발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 93
<표 Ⅲ-5-2> 참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 94
<표 Ⅳ-2-1>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통계틀 ····· 101
<표 Ⅳ-2-2>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 102
<표 Ⅳ-2-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 103
<표 Ⅳ-2-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 104
<표 Ⅳ-3-1> 표본크기 ····· 105
<표 Ⅳ-4-1> 2010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표본응답률 ····· 114
<표 Ⅳ-4-2> 2010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표본대체율 ····· 115
<표 Ⅴ-1-1> 조사대상자의 성별·학교급별 특성 ····· 121
<표 Ⅴ-1-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 122
<표 Ⅵ-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및 과제 ····· 144
<표 Ⅵ-1-2> 2008년까지의 아동정책 체계 ····· 149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년차 과제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영역 중 발달권과 참여권 분야에서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언과 향후 정책설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 및 참여권 영역에서 권리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반복 횡단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요구되며,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설문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이용한 실태조사는 현시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과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제기준대비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수준 향상과 그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OECD 위상에 걸맞은 인권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152개 항목의 청소년인권 지표체계를 개발하였고,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전체 4개영역의 핵심정성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63개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한국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3차년도인 2008년에는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하는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2009년 4차년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영역에서 총 34개의 새로운 지표항목이 추가로 발굴·보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3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생존권 46문항, 보호권 84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5차년도 마지막 연구에서는 전체 4개 영역으로 분류된 인권체계 중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함께 묶어 주요 지표의 추가 산출을 통해 133문

항(청소년용 기준)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실시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과 인권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별 지표의 선정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을 기준으로 관심영역별 대표항목을 선별·추가하여 관계전문가·실무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개선된 설문도구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행정통계에 근거한 정량지표를 추가하여 해당 정성지표 중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였다. 정성·정량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정리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예정이며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계열적 횡단자료 축적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방향의 효용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있는 중요 지표를 중심으로 연령층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두 부분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총 세 종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정성지표 중심의 결과보고서와 행정지표를 토대로 세부별 현황과 정책적 제안을 기술한 정량지표중심의 보고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기술된 결과분석 보고서가 추가될 것이다.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차에 걸쳐 제작된 한국판 아동·청소년 인권조사도구를 이용해 추후 격년으로 반복횡단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구축기반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과 과제로 대두된 우리 아동·청소년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 인권신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010년도 5차년도 연구의 내용은 아래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행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인권지표 중 발달권과 참여권권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을 통해 이론적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국제적 기준과 우리 현실에 부합한 지표와 세부항목의 선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특히 기존에 진행된 연구 중 지표의 개선과 개발을 통한 설문도구의 표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둘째, 2006년부터 3차년에 걸쳐 진행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인권지표(안)을 세부적으로 분석, 발달권·참여권분야에서 종단적 실태조사에 활용할 최종지표의 선정 및 표준화된 설문도구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청소년인권지표-대분류(5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에 총 152개의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량지표 77개, 정성지표 75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지표관련 연구결과를 기초로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및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지표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표를 검토·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셋째, 이렇게 제작된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발달권·참여권영역에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9591명이다. 조사결과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실태조사결과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의 설정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영역에서 국가 행정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정량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서 해당 영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의 제세와 더불어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적 리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정책·법·제도 및 주요 인권이슈와 활동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인권환경개선에 적합한 정책방안 및 실천과제를 도출함으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 개선과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연구내용과 상응하여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진행과정과 방법은 제Ⅳ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청소년 발달 및 참여권 분야에서 인권현황 및 모니터링 사례에 대한 선행 조사결과와 주요 국가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지표에 대한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본 체제에 맞는 지표산출을 위한 이론적 논거로 삼았다. 동시에 국내에서 연구된 인권지표체계 검토를 통해 후속 지표개발 및 조사도구 개발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이용하였다.

둘째, 전문가 의견조사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조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지표항목 및 설문문항의 선정 및 확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환경의 개선과 인권신장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 및 구체적 실천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이용하여 8500명 내외의 청소년을 표집하였다. 체계적인 연구절차를 거쳐 제작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단위 학급을 중심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항목은 청소년의 발달권·참여권 영역에서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1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연령층의 사회·인지적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용과 청소년용 두 가지 유형의 설문도구로 구성하였다.

넷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통해 산출된 실태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인권관련 학계 및 해당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보완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협의와 개선된 인권지표 결과 생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개발현황과 개선과제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2010,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2010).

Ⅱ. 이론적 배경

1. 2006~2009년 아동과 청소년 관련 인권연구에 대한 고찰과 전망: 발달권 및 참여권을 중심으로

Ⅱ. 이론적 배경

1. 2006~2009년 아동과 청소년 관련 인권연구에 대한 고찰과 전망: 발달권 및 참여권을 중심으로

1)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역사적 고찰

지난 2009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국제기준 대비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보호권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이미 간략하게 서술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관한 역사적 고찰도 유럽에서의 인권사적 논의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이성은 노예제도와 왜곡된 신으로부터의 질곡, 그리고 봉건영주 시대를 거쳐 마침내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으로 만인이 평등하게 동등한 주체로 인정된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탄생과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J. J. Rousseau; 1712~1776)가 아동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기초이자 서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루소의 주장이 동시대에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탄생했음에도 인권은 당시 성인들만의 소유물이었을 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은 미처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프랑스대혁명이 그러했듯이 1989년 UN에서 아동권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이 성사되기까지 아동·청소년 권리의 국제적 실천은 근 200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 역사적 과정을 보다 자세히 고찰해보자.

비록 프랑스대혁명의 역사적 위업의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계몽사상가 루소는 천부인권설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아동에게도 인간 고유의 가치와 인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루소의 교육소설 『에밀(Emile)』에서 시사된 것

과 같이 당시에는 점차 상류층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신체, 도덕,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적 방법에 따라 아동들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하류층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19세기에 들어와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노동의 착취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839년 프로이센(Preußen) 조례에 공장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조항이 도입되었고, 1891년 근로보호법, 1903년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어 모든 아동·청소년의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법이 등장하였다(DTV, 1994: XXIX). 사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아동·청소년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야만 한다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후 아동권리 사상의 싹이라 할 수 있는 '아동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아동복리회의 창설자인 애글렌타인(J. Eglantyne)에 의해 1923년에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5개조로 된 이 선언은 아동의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동포 인류에 대한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만 한다'라는 말로 끝맺고 있어 역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해인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한 5대 원칙을 포함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을 최초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고,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대해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정상적 발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육의 태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UN을 중심으로 인권의 보편화와 이에 대한 철저한 적용이 추진되면서 개별적인 인권

과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선언과 협약이 작성되기 시작했다. 194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7회 총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결의」가 행해졌다. 1946년 5월 세계인권선언에 앞서 사회위원회에서는 '아동권리선언' 작업이 개시되었고, 또한 1946년 11월에는 UNESCO, 동년 12월에는 UNICEF 등 아동권리와 관련된 국제기구가 발족되었다. 1948년 12월에는 UN이 '제네바선언'을 개정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는데, 여기에서는 1924년 '제네바선언'에서 결의된 아동복지를 위한 5대 원칙을 포함한 권리에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부가한 7개 조항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 인권법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의 선구로서 아동의 인권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인권 보편화에 대해서도 선구적 역할을 한 최초의 선례가 되었다.

UN 총회에서는 1959년 전문 10조로 된 '세계 아동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공포하였다. 이 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서 구성되었는데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데서 아동 인권 선언 사상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아동을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 파악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아동의 참여권을 기초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세계아동권리선언'은 1924년의 '제네바선언'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UNESCO과 UNICE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모든 문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던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총괄한 것이었다. 즉, '제네바선언'과 비교할 때 이름과 국적 취득권, 적절한 영양·주거·의료의 혜택을 받을 권리, 심신 장애아의 특수교육과 보호, 의무교육과 여가, 학대·방임·고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한층 상세하고 넓은 관점에서 그 내용이 확대·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UN은 1975년에 청소년의 세 가지 주요영역을 참여(participation), 발달(development), 그리고 평화(peace)로 정하고 각 영역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1979년 '국제 아동의 해'를 통해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의 초안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

성함으로서 UN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UN은 1985년 '청소년의 해'를 선포하고 이어서 1989년 마침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66년 제21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아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협약은 아동인권의 존중 및 확보의 관점에서 필요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권리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라고 하는 4개 주요 권리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한 특징은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협약의 회원국들이 매 5년마다 협약의 준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극적 보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규정하여 아동의 의사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은 그 이전의 선언과 비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강력하게 천명함으로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아동의 최선과 최대 권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여 그 이전의 어떤 선언보다도 진일보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국제적 규약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UN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선포된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9월 29~30일 양일 간 뉴욕에서는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d Summit for Children)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전 세계 71개국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아동'이라는 단일 주제 하에 참석하여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의 성과는 곧 바로 1993년 3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서 개최된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센터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 세계행동계획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과 관련해서 국제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인권문화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들이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수준의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체제 교과내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칠 것, 비공식적 상황 및 특수한 맥락과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인권정보에 관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연구센터와 검색기관 설립 및 문맹이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인권매체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인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 NGO 청소년 인권대회가 개최되어 모든 인권 문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 국의 UN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이 강력히 촉구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경청 될 권리,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이 고려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이 제시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해' 10주기를 맞은 1995년에는 미래 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이 될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정해진 10개의 정책우선영역은 교육(education), 취업(employment), 기아와 빈곤(hunger and poverty),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 약물남용(drug abuse),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 여가활동(leisure-time activity), 여성청소년(girls and young women), 의사결정에의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이다*.

한국은 일찍이 어린이 애호 사상이 사회나 가정 안에서 배어있어 신라 시

* 2003년 유엔총회 때 다시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에이즈(HIV/AIDS), 청소년과 무력분쟁(youth and armed conflict),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의 5가지 우선영역을 추가하여 총 15가지 우선영역을 갖추었다(United Nations, 2005).

대에는 부모 없는 어린이에 대한 급식과 양육을 실시했고, 고려 시대에는 고아로서 대리 양육자가 없는 경우 10세에 이르기까지 관에서 급식을 담당했다. 조선시대에는 유기 및 부랑아 등 요보호 어린이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명하는 보호 법령이 있었고, 이후에도 현대적 의미의 각종 어린이 보호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구체적이고 선언적으로 보다 명문화된 아동의 권리는 일제 강점시기인 1923년 '어린이 날'이 제정되면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고,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유·무상의 노동을 폐지하며,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 교육법(1949), 근로기준법(1953), 소년법(1958), 아동복리법(1961), 미성년자보호법(1961), 학교보건법(1967), 모자보건법(1973), 특수교육진흥법(1977), 아동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1), 청소년육성법(1987),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보호법(199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청소년활동진흥법(2004),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등의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법제도적 안에 스며들어 점차 인식과 실현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어린이헌장'(1975)과 '청소년헌장'(1990)이 선포되어 각기 1988년과 1998년에 개정된 것도 주지할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헌장은 제네바선언, 아동의 권리 공약 3장, 그리고 세계 아동의 권리 선언을 종합하여 구성됨으로서 한국의 아동의 권리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헌장'을 통한 한국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시도는 청소년의 권리 부분에도 영향을 주어 '청소년헌장'을 선포하게 하였고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의식화 과제를 열어주었다. 이후 한국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 권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이 단체의 촉구로 1990년 UN에서 제정한「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비준하여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국제수준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발을 맞추게 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는 1994년 1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처음

제출한 바 있으며, 2000년 2차 국가보고서를, 2008년에 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UN에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요약하면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을 한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혹은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상황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keyword)를 '청소년인권'과 청소년의 '자율', '참여'로 설정함으로서 청소년이 정부 청소년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헌장'도 1998년 10월에 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의 권리 11개항과 청소년의 책임 9개항을 담은 새로운 '청소년헌장'으로 개정됨으로서 청소년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가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학술활동으로,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확산시킨 것은 작지만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긴 미래를 내다볼 때에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중요한 담론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개념적 고찰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 참여권은 생존권 및 보호권과 더불어 영국의 젭(E. Jepp)여사가 1923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 초안을 발표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선언에서의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과 5개 조항밖에 되지 않았다.

> 1. 아동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에 필수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 2. 배고픈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받아야 하고, 지체

아동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행 아동은 교화되어야 하고, 고아와 집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원조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아동은 재난 시에 우선적으로 구조를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동료 인류에 대한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위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발달권에 관한 조항은 1항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5항은 인류의 보편적 선(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참여권에 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후 이 선언은 1959년 국제연합에서 선포한 '세계아동권리선언'을 거쳐 확대되어 1989년 UN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선포되어 완성되게 된다.

①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개념 고찰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개념은 위의 '아동권리선언' 제1항에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인 수단'들을 제공 받을 권리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발달권 개념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정상적인'의 의미의 범주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와 함께 '발달'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발달권의 정의나 구성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이중섭·박해석, 2006: 15~46). 또한,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발달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발달의 의미와 내용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엄격히 볼 때에 차별화되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즉, 아동의 발달권 지표와 청소년의 발달권 지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지표개발과 관련 설문내용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아동권리선언'의 1항에 서술된 '정상적인'의 말의 의미는 당시 이 선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당시 아동의 생

물학적 발달이 아동의 필요한 발달 수준에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아동에게 일정 필요한 수준의 발달을 촉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이라는 말이 당시에는 최고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아동의 발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의미하는 최소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발달'이라는 개념을 두고는 학자 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발달'을 영어로 'development'로 사용했을 때에 이에 대한 번역이 '개발'의 의미로도 수용되므로 '발달'과 '개발' 사이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중섭·박해석, 2006: 22~24). 이러한 논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인식하여야할 사항은 자연적 상태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마땅히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있어야 할 제반 조건들이 결핍된 비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결핍된 상황이나 상태는 보충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자연적 발달의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개발'은 자연적 상태로의 환원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과 조작을 통해 발달을 꾀하려 시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개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만일 '개발'이 인간의 성장과 성숙, 발전을 통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인위적 개선과정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장과 성숙, 발전의 끝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동과 청소년 각 개체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의도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 개념은 자칫 아동과 청소년을 하나의 인적자원으로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효용성을 증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적 개발 논리에 귀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결국 '개발'이라는 이름아래에서 지속적이고 무한대의 인간개발을 위한 경쟁으로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개념의 의미와 내용도 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목표로 해야 하고, 여기서 '정상적인'의 개념의 범주도 지속적이고 무한정의 개발의 의미가 아닌 가장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발달과 그의 발달 조건을 충족해주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원래 인간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자연권 사상에서 비롯한 '천부인권설'의 근본 사상과도 맞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 개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권리가 새삼스럽게 선포되고 요청되는 일은 이러한 자연적인 인간의 권리가 다른 인간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해 침해받았을 경우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인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자연적인 인권이 침해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요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동권에 있어서도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만 노동권이 요청되는 것이지 필요이상의 노동권을 확대 해석하여 과장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노사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비이성적인 폭력이 개입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발달이 최우선의 목표이고 그 이후에 더욱 발달을 인위적으로 꾀하기 위하여 개발하려는 시도는 각 개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개념에 기초하여 볼 때에 현재 가장 아동·청소년 발달권 개념정의와 이에 따른 지표개발에 있어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UN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하여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5조에서는 포괄적으로 책임자들에게 **"발달하는 아동의 능력에 따른** 적절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책임 및 권리와 의무가 존중될 것을 말하고 있다. 제6조 2항에서는 국가의 발달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 1항에서는 부모에 의해 **"양육**을 받을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제12조와 13조에서는 나이와 성숙도의 발달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14조 2항에서는 제

* 협약 제6조 2항에는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에서 '가능한 최대한도의 발달'을 발달의 최대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최대한도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

5조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17조에서는 대중매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접근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1항에서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완전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이들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문화적, 정신적 발달을 포함하는 개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및 여가의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최상수준의 건강 향유 및 질병 치료와 건강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이들의 발달을 최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 제26조는 사회복지적 혜택으로 아동의 발달을 돕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직접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의 확보와 필요한 지원들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아동의 발달에 가장 필요한 교육과 직업, 제30조에서는 다문화 아동에 대한 기회균등, 제31조에서는 아동의 휴식 및 여가, 놀이와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이민희, 2008: 54~56).

지금까지의 위에서 살펴본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해당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발달권 개념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각자의 발달 단계와 능력에 따라 국가 및 부모와 책임자들로부터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 서비스, 정보 서비스, 취업준비, 여가활동, 기회균등 등의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개념 고찰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4대 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가장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 참여

권이라 할 수 있다. ‘참여’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행위에 함께 하기 위한 개체의 능동적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의 행위에 대한 참여의 능동적 의사표시와 의사결정은 참여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가치판단에 의한 의사표시나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형성이 어려운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참여권의 행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참여권은 아동보다는 청소년에게 더 의미가 있는 인권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아동의 나이를 청소년의 연령을 포함하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참여권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923년 영국의 젭(E. Jepp)여사의 ‘아동권리선언’ 초안 제5항은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동료 인류에 대한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서 아동의 참여권이 일찍부터 이타적인 의식형성과 함께 양육의 과정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여권에는 참여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내재하고 있다. 만약 참여에 외부의 강요가 있거나, 부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면 그러한 참여는 진정한 참여라고 할 수 없다. 즉, 참여권은 필연적으로 자유권과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강현아, 2006: 32). 아동·청소년의 4대 권리라 할 수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에서 참여권은 가장 정신적 및 의지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이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우선적으로 관련이 있는 권리라면 참여권은 이러한 가장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신체적 권리가 충족된 이후에 요구되어 질 수 있는 정신적, 의지적 권리인 것이다. 또한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참여권은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더 많이 요청되기 때문에 긴급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3대 권리보다 못 미치기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다른 중요한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보다 정책적·제도적으로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아동 법령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아동관련 법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

복지법'에서도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비해 참여권에 해당되는 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반면에 비록 '아동복지법'으로부터 늦게 독립된 청소년 관련 법령들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하여 보다 많은 가치와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1991년 제정되어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발전되어온 청소년관련 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년기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청소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제2조(기본이념) 2항 1호 "청소년의 참여보장"과 2호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에서는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방향이 청소년의 참여권과 직접 관계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제46조의 2(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참여권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법조항들은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1998년에 시작되면서 당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keyword)인 '청소년인권, 자율, 참여'가 법령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권의 법제도적 보장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법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2항에서는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선진 독일의 사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제11조 1항에서는 청소년사업의 서비스들은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결정되어야 하고, 함께 형성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 2항에는 청소년단체에서는 청소년사업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함께 형성하며, 함께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은 UN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9년에 공포된 이후 아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하고 사회적 결정들과 논의들에 아동과 청소년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조 1항에서는 남성과 여성 청소년들이 정부나 민간의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모든 결정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 3항에서는 청소년 개체의 인권을 존중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청에 그들의 긴급상황이나 갈등상황에 대하여 의뢰를 해왔을 때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을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그들의 중요한 삶의 결정들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BfFSFJ*, 2007: 49).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연방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부

-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안(發案) 권리와 행동들
- 아동·청소년 의회
- 아동포럼과 원탁회의
- 아동위탁과 아동변호
- 프로젝트 관련 행사들
- 학교에서의 학생 대변
- 청소년사업 현장에서의 청소년 대변
- 청소년단체와 시설들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 청소년보호시설과 교육시설에서의 청소년 대변

위에서 살펴본 독일의 아동·청소년 참여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이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1992년 회원국이 되면서부터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고찰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내용들도 모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부터 유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이 협약의 내용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한 강현아도 결론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2조(아동의사의 존중), 13조(표현의 자유),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5조(결사와 집회의 자유), 17조(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총 5개 조항을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들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참여권의 개념을 구성하였다(강현아, 2006: 34~43). 하지만 17조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강현아가 참여권과 관련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련조항들을 분석한 표를 보면 한국지역사회복리회(1999)와 Hart(1997), 그리고 김인숙(2004), 이용교(2005), Sherrod(2006) 등이 모두 17조를 참여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강현아, 2006: 35). 그러나 17조는 오히려 13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에서 오히려 발달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히 판단하자면 참여의 전제여건으로서의 아동 개체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권한 부여는 협약의 12조, 13조,

14조 15조로 제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4조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논해보자.

먼저 제12조(아동의사의 존중)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이 선언되고 있다. 이 12조는 13조(표현의 자유)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12조는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어떠한 특정한 사법적, 행정적 경우에 필요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반면에 제13조에서는 아동이 **언어나 문자, 예술 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만들고, 수용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가질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 두 조를 간략하게 축약하면 아동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과 모든 생각과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참여권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자유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참여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제14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1항과 3항은 **아동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 법에서 따로 정하거나, 공공성과 타인을 위해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15조(결사 및 집회의 자유) 1항은 가장 직접적으로 아동의 참여권을 시사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어린 저 연령층의 아동들에게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 청소년들의 참여권에 더 적합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참여권은 참여권을 포함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 보장을 위하여 스스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인과 같이 평등하게 인간 개체로서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라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개념정의를 내리자면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자신의

---

* 한국정부가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회원국으로서 UN에 제출한 발달권 관련 1,2차 정부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정보접근권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이중섭·박해석, 2006: 64).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에 있어서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 양심,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나 모든 사상과 정보들의 표현과 소통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이를 전제로 자신들의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관련 4개년도 선행연구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에 대한 연구는 1차 년도인 2006년에는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과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2차 년도에는 청소년 발달권 및 참여권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분석이 4대 권리 영역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3차 년도인 2008년에는 2차 년도까지의 지표개발과 설문지 개발로부터 수행되어온 연구결과를 가지고 종합해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과 국제비교를 함으로서 발달권 및 참여권을 포함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수준이 국제기준에 대비하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9년에는 4대 권리 영역 중에서 1차로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만을 먼저 묶어 총 34개의 지표항목들을 새롭게 추가 발굴하고 보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존권 46문항과 보호권 84문항 배경 변인 9문항의 총 139문항의 새로운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이러한 새로운 설문도구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적 시의성이 있는 중요지표들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고찰되었다. 2010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하여 지표항목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2009년과 2010년의 2년에 걸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2006년 지표는 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표이지만 2009년과 2010년의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각 대상의 연령을 고려한 지표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둘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2006년도에 최초로 개발된 지표가 그간 실증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발전적으로 지표가 개선되어 발굴된 의미가 있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과정에서 이미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국내외의 실태조사와 비교조사를 통해 지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한 것은 향후 새로운 지표개발 연구의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넷째, 이러한 5년의 과정에 걸친 전체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의 지표개발과 그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종단적 실태조사는 결국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1) 3개년도(2006~2008) 발달권 선행연구 분석

① 2006년도 발달권 연구 내용

2006년도에 연구된 내용들은 청소년인권지표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청소년인권지표 체계구축 및 영역별 지표(안) 개발,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들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과 관련된 연구내용들을 분석해보자.

먼저, '청소년인권지표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발달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의미의 발달만을 고려하지 않고, 발달을 위한 제반 여건과 환경에 대한 요소도 고려하여 개발의 의미를 포함하는 발달을 전제로 개념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로 해서 "청소년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최창욱 외, 2006: 19~20).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 발달 권리'보다는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를 더 중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권리는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아동 권리 선언'이 영국의 애글렌타인에 의해 1923년에 최초로 성문화되 동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쟁의 참상으로 인한 최소한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가 인간 개체의 권리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인권지표의 개발에 영향을 주는 발달권의 개념정의는 무엇보다 신체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최우선으로 가치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이 정상적인 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먼저 지켜진 후 각 아동·청소년의 고유한 잠재적 능력의 발달 권리가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지표의 구성요소는 먼저 크게 관심영역을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아래의 <표 Ⅱ-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관심영역을 배치하였다(최창욱 외, 2006: 117~127). 이 표에 대하여 보충적 제안을 하자면 먼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체적 발달이 다른 발달의 전제조건으로서도 발달권에서는 최우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심영역에서 정서적 발달은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명료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발달 영역을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의 서로 다른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할 때에 심리적 발달에는 심리발달 환경과 심리적 안정의 세부관심영역을, 감성적 발달에는 감성발달 기회와 감성능력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이러할 경우에 생존권과 발달권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를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양의 섭취와 관련하여 일정한 수준의 영양이 결핍되면 생명이 위협될 수 있고, 생존의 수준이 넘어서 정상적인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양의 영양 공급이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생존권과 발달권의 지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각 권리의 경계의 기준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와 수준을 정하고 생존의 수준을 넘어서부터는 발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지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Ⅱ- 1- 1> 청소년 발달권 지표(2006)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1. 인지적 발달	1-1. 인지 발달 기회
	1-2. 인지 능력
2. 정서적 발달	2-1. 정서 발달 환경
	2-2. 정서적 안정
3. 사회적 발달	3-1. 사회성 발달 기회
	3-2. 사회성 발달 정도
4. 직업적 발달	4-1. 진로 준비 기회
	4-2. 직업 능력
5. 신체적 발달	5-1. 신체 발달 기회
	5-2. 신체적 능력

※ 이중섭·박해석(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인지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는 세부관심영역에 각기 인지 발달 수준과 신체 발달 수준을 넣어서 아동과 청소년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인지 발달과 신체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정상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지 능력이나 신체 능력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부관심영역의 지표들에서 '기회'와 '환경'으로 지표들이 표현되어 있는 데, 기회는 시간적 의미를 지니고, 환경은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표가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모두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세부관심영역 지표들 중에서 인지 발달 기회는 인지 발달을 위한 기회와 환경 모두가 발달에 영향을 둘 수 있으므로 지표의 명시를 '인지 발달 기회와 환경'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감성 발달 기회는 감성 발달 기회와 환경으로, 사회성 발달 기회는 사회성 발달 기회와 환경으로, 진로 준비 기회도 진로 준비 기회와 환경으로, 신체 발달 기회도 마찬가지로 신체 발달 기회와 환경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6년 개발된 지표를 수정 보완하면 5개 관심영역에서 감성적 발달이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로 세분화되면서 6개 관심영역으로 확대되고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은 인지 발달 수준과 신체 발달 수준이 추가되고, 정서적 발달

관심영역이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로 분리되어 각기 2개의 세부관심영역을 가지게 되므로 총 14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확대되어 발달권 지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표로 다시 정리하여 새로운 안으로 제시해 보면 아래의 <표 Ⅱ-1-2>와 같다.

<표 Ⅱ- 1- 2> 청소년 발달권 지표(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1. 신체적 발달	1-1. 신체 발달 기회
	1-2. 신체적 능력
	1-3. 신체 발달 수준
2. 인지적 발달	2-1. 인지 발달 기회와 환경
	2-2. 인지 능력
	2-3. 인지 발달 수준
3. 심리적 발달	3-1. 심리 발달 환경
	3-2. 심리 발달 수준
4. 감성적 발달	4-1. 감성 발달 기회와 환경
	4-2. 감성 능력
5. 사회적 발달	5-1. 사회성 발달 기회와 환경
	5-2. 사회성 발달 정도
6. 직업적 발달	6-1. 진로 준비 기회와 환경
	6-2. 직업 능력

‘아동·청소년인권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의 발달권에 관한 연구내용은 이중섭과 박해석이 제시한 아래의 <표 Ⅱ-1-3>에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다. 한국은 1991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국이 되면서 1994년 11월에 1차 국가보고서를, 2000년 5월에는 2차 국가보고서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래의 표에서는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하였지만 대부분의 1차 보고서 제출 후의 권고조치들이 2차 국가보고서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1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최대한 보장과 취약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대한 조치 등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UN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장 취약한 아동의 상황에 보다 협력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Ⅱ- 1- 3> 발달권 관련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문제영역	권고내용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낮은 예산 할당	· 가용자원 내 우선적 배정 · 공공/민간/비정부 부분의 국가예산 규모 비율 확인
	인종차별정보 미비, 헌법에 차별금지 명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 입법화 및 공공교육 캠페인 실시
	아동견해 존중 저해의 사회분위기	복지법 개정 등 촉진입법화, 교육의 아동의견정책, 사업, 영향력 검토
	학생회의 표현결사의 자유제한	표현 및 결사 자유 향유토록 법 개정
	기초보건 및 복지환경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모유수유권장, 청소년보건연구실시, 장애인통합교육 확대
	교육에서의 차별 및 낮은 수준	교육정책 검토
	특별보호조치 개선	이주자 자녀의 권리보장

※이중섭·박해석(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 67.
자료: 김인숙 외(2004), 재구성

청소년 발달권 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은 역시 이중섭·박해석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분석되었다(이중섭·박해석, 2006: 68~96). 여기서 분석된 국내 지표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길은배 외, 2001), 아동지표(정영순, 1997), 청소년지표(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청소년 복지지표(이소희 외, 1999), 청소년개발지표(김진호 외, 2004; 2004) 등이었다. 외국의 지표들은 UNICEF의 세계아동상황지표, 미국 교육부통계센터(NCES)의 청소년지표(2005), 뉴질랜드 정부 사회개발부의 아동·청소년복지지표(2004), 존스(Jones, 2003)가 제시한 캐나다의 청소년발달지표, 그리고 워터스 등(Waters et al.,

2002)이 사용한 아동 건강, 발달 및 복지지표, 미국의 연방관계부처포럼(FIFCFS)의 아동복지지표(2000), 메릴랜드(Malyland, 2000)의 발달연령에 따른 지표, 랜드 등(Land et al., 2001)이 제시한 미국의 아동복지지표 등이 광범위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표의 비교분석의 결과는 이중섭과 박해석에 따르면 발달보다는 개발의 관점에서 지표가 개발된 사례는 있지만(김진호 외, 2003) 명확히 발달권이라 명명된 지표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발달권 관련 지표들이 교육이나 문화, 정보에의 접근 등 학습권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의 권리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메릴랜드의 지표 사례에서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발달영역 즉, 학습, 성장, 연대(사회적·정서적 안정), 노동, 지도와 같이 발달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표가 독창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분석이 강조되었다.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된 이중섭과 박해석의 아동·청소년 발달권 지표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의 결과는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권이 학습권과 동일시되는 경향은 모든 지표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지적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발달이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먼저 신체적인 발달에 있어서 최소한의 발달의 기회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최소한의 신체적 발달을 전제로 다음 단계의 학습적, 문화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표 Ⅱ- 1- 4> 2006~2008 청소년 발달권 지표항목 및 실태조사 문항*

2006 관심영역		2006 개별지표항목(총35개) *2007년 정량지표 (밑줄, 총17개)*	2007 정성지표 설문문항(총26개) 2008 설문문항(**회색박스**; 총43개)
인지적 발달	인지발달기회	*취학률*	사교육과 대학진학 관계에 대한 인식
		중퇴율	가정배경과 대학진학 간 관계 인식
		대학진학율	지난 1년 간 사교육 경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인지능력	창의성 지수	**하루 평균 공부시간(3)**
		문제해결능력 지수	**학교공부에 대한 의견**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외국 유학(2)**
		지능지수	
정서적 발달	정서발달환경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빈도
		부모님과의 관계(1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빈도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교사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휴일을 보내는 방법(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고민상담(2)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도
		고민거리의 유형별 경험유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	
		청소년 여가시간	**1일 평균 자유사용 여가시간****
		청소년 여가시설 수	여가시간 만족도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지역사회 여가시설 만족도
	정서적 안정	우울증 지수	청소년들의 자존감 수준의 차이
		스트레스 지수	청소년 행복도
		행복(심리적 안녕감) 지수	**자신에 대한 평가(7)**
			학교에서의 생활태도(2)
사회적 발달	사회성발달기회	*청소년 1인당 평균 단짝 친구 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수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PG 참여횟수	**청소년 단체 활동 가입여부* ****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 시간	청소년 동아리활동 여부
		1인당 평균 가입 동아리 수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외감 경험 빈도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진학 도움여부
			배우는 내용 적성/특기 개발 도움 여부
			배우는 내용 진로/직업 선택 도움 여부
	사회성발달정도	갈등 이해능력 지수	
		문화감수성(타문화수용능력) 지수	
		리더십 능력 지수	
직업적 발달	진로준비기회	*월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수*	고교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진로탐색 기회의 충분 정도	직업획득 조건으로 대학진학 인식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 획득 조건으로 대학진학 인식
			존중받을 자격으로 대학진학 인식
	직업능력	진로성숙도 지수	**자신의 적성/특기계발 및**
		직업기초능력 수준	**진로/직업 선택에 대한 의견(3)***
신체적 발달	신체발달기회	*청소년의 주당 평균 운동시간*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신체적능력	*50m 달리기*	
		지구력((팔굽혀펴기/팔굽혀매달리기)	
		근지구력(윗몸 일으키기)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2006년도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있어서 개발된 발달권 지표는 5개의 관심영역에 10개의 세부관심영역,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 35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의 내용에는 각 세부관심영역별로 개발되는 지표들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되었으며 개발된 각 지표들에 대하여 정의와 정량지표들에 대한 산식과 그의 근거자료들에 대하여 보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총 35개의 개별지표들은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지표가 17개, 정성지표가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② 2007년도 발달권 연구 내용

2006년에 이어 2007년에 속개된 청소년인권 관련 연구는 정성지표에 대한 검토·선별작업, 선정된 정성지표의 조사문항 개발,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의 실태조사, 정량지표에 의한 청소년 인권의 영역별 실태분석, 청소년 인권관련 정책제언으로 연구되었다. 2007년의 연구는 2006년에 개발된 지표항목 중에서 정성지표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선별 작업을 통해 2008년도에 실시한 국제비교 설문조사의 조사문항과 척도를 확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19명의 전문가들에게 2006년 개발된 지표항목들에 대하여 타당도(validity)와 중요도(importance)를 고려하여 최종 조사항목을 선정하도록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항목 선정에 참고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지표항목의 선별작업 과정에서는 각 지표항목의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실용성(practicablility)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문항으로 확정된 발달권 문항은 위의 <표 Ⅱ-1-4>에서 보는 것과 같은 총 16개 개별지표에서 26개의 설문문항이 구성되었다. 설문은

---

* <표 Ⅱ-1-4>의 괄호 안 숫자는 지표에 해당되는 질문문항 수이고 *표는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항 문항이다. ** 표는 개발된 지표와 같은 조사문항이며, 그 이외의 모든 회색 박스의 지표는 2008년 청소년인권 국제비교 실태조사 시 추가로 들어간 조사문항의 내용이다.

* 연구진은 1, 2차 심의를 거쳐 이중섭과 박해석이 제세한 총 37개 개별지표들 중에서 신체적 능력의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인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과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제외하였다.

2007년 7월에서 8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고등학교 일반계와 실업계 총 6,912명(남자 3,634명, 여자 3,19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7년도에 위의 <표 Ⅱ-1-4>에서 보는 정성지표 문항들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발달권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종원 외, 2007: 118~150).

- 청소년들의 진학률, 학업성취 동기는 매우 높은 편이나 이는 학업에 대한 흥미와 열망보다는 학력차별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내면화한 결과로서 내적인 동기보다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학업수행이 나타났다.
- 고등교육에 대해서 직업선택이나 기술습득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으며, 제일 중요한 목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는 좋은 직장과 배우자의 선택과 인격적 존중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한 청소년들이 절반을 차지했다.
-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조건에 사교육에는 낮게 응답했고, 좋은 가정환경이라고 응답한 수가 35% 정도로 더 많았다.
- 여가시간은 3시간 내외로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여가시설에는 70% 정도가 부족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또래관계는 60% 정도가 만족했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46%정도가 만족했으며, 학교생활은 43%정도, 지역사회에는 39%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스스로 행복하다는 응답(약 45%)은 불행하다는 응답(약 25%)보다 약 20%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2008년도 발달권 선행연구 내용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의 3차년도인 2008년의 연구에서는 국가별 비교조사를 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개발된 설문조사 도구를 재검토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 조사대상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비교가 가능한 공통지표 및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

의 사회문화적 환경 및 법·제도적 특성에 따라 국제비교 대상국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지표항목의 타당도와 중요도, 그리고 측정가능성과 비교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국제비교 대상국가인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조사기관들과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124개 문항을 확정하였고, 그 중에서 21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할 수 있었다. 124개 중에서 발달권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위의 <표 Ⅱ-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14개 조사문항과 43개의 세부 질문이었다. 국제비교를 위해 조사대상 국가 간에 합의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 2,000여 명이다. 한국의 청소년 발달권의 실태를 청소년 인권실태 국제비교를 위해 협력연구체계를 구축한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4개 국가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 정서적 발달권에서는 한국청소년이 조사대상국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수(78.1%)는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사람을 갖고 있었고 상담 대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머니, 동성친구, 아버지, 형제자매, 이성친구로 나타났다.
- 한국청소년의 하루 평균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비교대상 국가들의 청소년들에 비해 가장 적었으며,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남자청소년들(31.6%)은 게임으로, 여자청소년들(30.1%)은 TV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편이나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거나 대화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인지적 발달권에서 한국청소년은 평일 공부시간이 3시간 정도이며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중국청소년 다음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청소년은 학교 가는 것은 미국 다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일본 다음으로 싫어하고 있었고, 유학을 생각해 본 청소년이 과반수를 넘게(약 57%) 차지하였다.
- 직업적 발달권에서는 한국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적성 및 특기 계발(43.6%)이나 진로 및 직업선택(50.3%)보다는 입시준비(62.9%)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 청소년은 적성 및 특기계발(95.2%)이나 입시준비(90.1%)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사회적 발달권에 있어서는 한국청소년의 41.6%만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상당수가 학교 내 동아리활동(67.7%)을 하고 있은 반면, 스웨덴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8.8%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교 밖 동아리활동(65.1%)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2006~2008 3개년도 아동·청소년 발달권 연구내용 종합분석

2006~2008 3개년도에 걸쳐 수행된 아동·청소년 발달권의 연구내용은 크게 나누어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지표개발과 발달권의 실태조사이다. 먼저 2006년에 청소년생존권, 청소년보호권, 청소년발달권, 청소년참여권, 청소년 인권 인프라의 5개 대분류에서 개발된 지표 총 152개 중 청소년 발달권 지표는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의 5개 관심영역에 각 2개의 세부관심영역을 가져 총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이 형성되었고 정량지표 10개, 정성지표 25개로 총 35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2006년도에 개발된 발달권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먼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개의 발달권 관심영역들 중에서 신체적 발달은 모든 발달의 전제가 되는 지표로서 가장 중시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신체적 발달이 발달권 지표에서 소홀이 여기지는 경향이 있다. 개별지표에서도 주로 신체적 발달능력에 치우쳐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발달권의 개념정의와 무관하지 않다. 발달권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발달'을 '개발'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생물학인 자연적 발달보다 조작적인 잠재적 발달을 개발

하는 환경적 여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에서는 무엇보다 '정상적인' 자연적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신체적 능력보다는 발달 연령의 단계에 따른 신장, 몸무게, 골격, 신체적 장애, 피로도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할 경우 생존권의 신체충실도나 건강의 개별지표들과 중복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개별지표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여부에 따라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발달권에 개별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역시 앞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정서적 발달은 '정서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로 관심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심리적 발달에는 심리적 안정 정도나 스트레스 정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감성적 발달에는 문화·예술적 감수성 함양 기회와 환경, 감수성발달 정도의 세부관심영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2007년도의 발달권 관련 연구내용은 2006년 개발된 발달권 지표를 기초로 2008년 국제비교를 위한 발달권 지표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설문문항을 구성한 후 이를 실제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이었다. 2007년도에는 2006년의 10개의 정량지표와 25개의 정성지표로 구성된 총 35개의 개별지표 중에서 정성지표 16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26개의 설문문항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8년 국제비교를 위해 사전에 구성된 발달권 설문문항들은 실제로 국제비교 설문문항들과는 너무 차이가 있었다. 위의 <표 Ⅱ-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8년 국제비교의 설문문항 총 43개 중 2007년 설문문항과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은 고작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 '1일 평균 자유사용 여가시간', '청소년단체 활동 가입여부'의 3개뿐이다.* 3개 중 '청소년 단체 활동 가입여부'는 스웨덴하고만 비교하는 지표임을 감안할 때에 2007년 개발된 문항들이 국제비교에 사용된 것은 실제로 2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외국과 문화적, 환경적, 상황적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선정된 지표와

* 2008년 국제비교 설문문항 중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16개 문항들 중 하나가 "부모님과 자주 대화 한다."에 관한 정도를 묻는 문항이었다.

이에 따른 개별지표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2008년도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5개국과 공동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비교연구를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2007년도에 국제비교의 예비조사로서 선정된 지표들과 이에 따라 구성된 설문문항들이 실제로 국제비교에서 주도적으로 쓰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2006년과 2007년에 구성된 발달권 지표와 이에 따른 설문문항들이 잘못되었든지, 2008년도에 구성된 아동·청소년 발달권 국제비교 설문문항이 문제가 있든지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가시적으로 보아 국제비교의 총 43개의 설문문항들 중에서 33개가 정서적 발달을 묻는 문항들이라는 것은 지표의 균형성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서적 발달을 묻는 문항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16개나 배당된 것도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발달과 직업적 발달을 묻는 문항은 고작 1개씩에 불과했고, 가장 전제적인 발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신체적 발달에 관한 문항은 비록 정성적인 개별지표가 적다하더라도 문항이 배치되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2006년~2008년도 아동·청소년 발달권에 관한 종합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권의 지표개발에 있어서 '발달'의 개념과 '개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경계설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정상적 발달'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정서적 발달'의 관심영역 분류보다는 이를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로 나누는 것이 더 실증적으로 타당한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2006년 개발된 지표를 근거로 2007년도에 구성된 발달권 실태조사 설문문항이 2008년의 국제비교 설문문항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전문가적 분석으로 그 동안 연구된 발달권 지표개발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겠다.

(2) 3개년도(2006~2008) 참여권 선행연구 분석

① 2006년도 참여권 선행연구 내용 분석

이미 발달권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의 고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6년도에 연구된 내용들은 청소년인권지표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청소년인권지표 체계구축 및 영역별 지표(안) 개발,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였다.

먼저, '청소년인권지표 개념정립과 하위영역 설정'은 이를 토대로 개별지표들을 개발하고, 개발된 개별지표들은 다시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들을 만들어 현장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의 개념정립과 이를 토대로 한 하위영역 설정은 참여권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비중을 두고 연구되어야 한다. 2006년에 참여권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한 강현아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지표개발에 있어 근간이 되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조항들 중에서 제12조(아동의사의 존중), 13조(표현의 자유),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5조(결사와 집회의 자유), 17조(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총 5개 조항을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들로 분류했다(강현아, 2006: 35). 아동·청소년 인권의 4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에서 참여권은 발달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위의 5개 조항 중에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조항은 15조(결사와 집회의 자유)이다. 하지만 12조, 13조, 14조, 17조는 발달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하게 의사가 존중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면 발달에 장애가 올 수 있는 것은 발표된 여러 심리학 연구논문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조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적 가치, 종교에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참여의식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특히, 동양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의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종교를 선택하려는 것에 대하여 '쪼그만 것이 말이 많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라’, ‘부모와 다른 종교장소에 나가지 말라’ 등의 부모로부터의 억압은 분명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참여 개념의 외연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가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진정한 참여가 성립된다고 했을 때에 12조, 13조, 14조는 참여권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발달권과 참여권의 경계가 모호한 것과는 달리 17조(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보다 뚜렷하게 참여권보다는 발달권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17조에서는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라 하고 있다. 앞에서 논했던 것과 같이 참여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행위에 함께 하기 위한 개체의 능동적 의사표시이다. 17조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건강의 향상이다. 이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대중매체의 정보와 자료에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17조는 2006년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발달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대중매체의 정보와 자료에의 접근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참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Ⅱ- 1- 5> 2006년 청소년 참여권 지표 분류체계

청소년 참여권	1. 자기결정권(의견존중)	1-1. 종교 결정권
		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1-4.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
	2. 표현의 자유	2-1. 사적취향의 표현
		2-2. 학생으로서의 의견 표현
	3. 결사·집회의 자유	3-1. 학교 내에서의 결사·집회
		3-2. 학교 외에서의 결사·집회
	4. 정보접근권	4-1. 도서에 대한 접근
		4-2. 인터넷 접근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5-1. 사회참여
		5-2. 참정권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의 참여권 지표는 결국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17조를 포함한 위의 5개조를 근거로 '자기결정권(의사존중)',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의 5개 관심영역이 구성되었다. 각 관심영역에는 위의 <표 Ⅱ-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12개의 세부관심영역들이 개발되었다. 이 영역들은 다시 총 31개의 개별지표들을 생성하였다(최창욱 외, 2006: 155~156). 이 중에서 위에서 논쟁이 되었던 '아동권리에 관란 국제협약'의 17조(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외하여 참여권을 재구성한다면 참여권 총 4개의 관심영역과 10개의 세부관심영역, 그리고 26개의 개별지표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겠다.

'아동·청소년인권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의 참여권에 관한 연구내용은 아래의 <표 Ⅱ-1-6>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회원국으로서 1994년 제1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2000년에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3·4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차 보고서는 협약의 12조, 13조, 14조, 15조, 17조를 근거로 관련 내용들을 제출하였는데 주로 헌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고 세부적인 인권의 보장과 침해의 사례나 제도 등에 관하여는 크게 언급이 없었다. 이는 그 만큼 한국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해서 크게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현아가 지적했듯이 참여권의 가장 직접적인 협약이라 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생회 자치활동이나 자발적인 동아리 참여의 보장과 관련해서 헌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는 것만 제시하고 있지(강현아, 2006: 5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클러스터에 '가정환경과 대안양육(부모로부터 분리)'와 같은 입양관련 내용은 참여권에 속한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 만일 참여권에 넣는다면 클러스터 '일반원칙(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관련)'에 함께 서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표 Ⅱ- 1- 6> 참여권 관련 UN에 제출된 2차 정부보고서 내용*

클러스터(cluster)	2차보고서내용
일반이행조치 (유보사항관련)	• 한국정부가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을 유보하는 입장설명
일반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관련)	• 가사소송규칙에 의해 부모 이혼 시 15세 이상의 자녀의견 고려하도록 정함.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아동 입양 시 15세 이상 아동의 동의 얻도록 함.
시민적 권리와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	• 헌법에 충실하게 반영 • 언론 출판에 의한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 비상계엄선포 시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 가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관련)	•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 •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음.
시민적 권리와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인정하지 않음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정보접근권)	• 공중파 방송은 매일 1시간이상 아동방송 방영 • 도서관 등을 통해 청소년 양서 보급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부모로부터의 분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항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하지 않음 • 그 외 내용 1차보고서와 동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공중파 방송은 매일 1시간이상 아동방송 방영 • 도서관 등을 통해 청소년 양서 보급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정보접근권)	• 공중파 방송은 매일 1시간이상 아동방송 방영 • 도서관 등을 통해 청소년 양서 보급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부모로부터의 분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항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하지 않음 • 그 외 내용 1차보고서와 동일

2006년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보고에 UN아동권리위원회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 강현아(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51~52에서 재구성

에서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관련 기관과 제도의 아동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입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러한 아동의견 존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영향 여부의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초·중등교육 교과과정의 운영규칙과 10대 청소년이 만든 인터넷게시판이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위원회는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학교운영규칙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일련의 노력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1975년 UN이 청소년의 세 가지 영역 참여(participatio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것과 '청소년의 해'가 10주년이 된 1995년 역시 국제적인 청소년정책의 청사진으로 개발한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의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를 포함한 10개의 정책우선영역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되었다.

청소년의 참여권 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은 국내의 지표로는 한국아동권리학회가 2001년 개발한 '한국의 아동지표'와 2001년 개발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도구,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인권평가지표'들이 분석되었다. 참여권과 관련되어 연구·분석된 국외지표들로는 미국 교육부통계센터(NCES)의 청소년지표(2005), 미국 연방관계부처포럼(FIFCFS)의 '아동복지지표(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국제아동보호기구(CWI)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니카라구아, 세네갈,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 5개 국가에서 개발한 '아동권리지표'들이 참고 되었다.

② 2007년도 참여권 연구 내용

2007년의 참여권 연구는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 참여권 지표항목 중에서 정성지표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선별 작업을 통해 2008년도에 실시한 국제비교 설문조사의 조사문항과 척도를 확정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먼저 19명의 전문가들에게 2006년 개발된 참여권 지표항목들에 대하여 타당도(validity)와 중요도(importance)를 고려하여 최종 조사항목을 선정하도록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항목 선정에 참고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전문가들이 정보접근권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타당도와 중요도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참여권의 개념문제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정보접근권이 발달권에 속하는지 참여권에 속하는지에 관한 논란을 방증해주는 결과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참여권에 있어서 그의 타당도와 중요도가 다른 관심영역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참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관심영역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도 전문가들은 중요도를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도 매우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 참여권 지표의 관심영역 중에서 가장 타당도와 중요도가 높은 영역은 역시 참여를 직접 표식해 주는 사회참여 및 참정권 관심영역이었고, 다음으로는 자기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기대치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 관심영역 지표들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교내자치회가 있는 비율이나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과 같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영역은 참여의 직접적 행동을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보았을 때에 두발이나 복장의 자유보다 그의 중요도와 타당도가 낮게 인식되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이종원 외, 2007: 277~279).

<표 Ⅱ- 1- 7> 2006~2008 청소년 참여권 지표항목 및 실태조사 문항*

2006 관심영역		2006 개별지표항목(총31개) *2007년 정량지표 (밑줄, 총23개)*	2007 정성지표 설문문항(총15개) 2008 설문문항(회색박스; 총17개)
자기결정권	종교 결정권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종교재단별 설립학교 수/재학생 비율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율	
	가사 결정권	가정의 대소사 결정시 청소년 의견 존중	**부모님이 자신 의견 존중해주는지 여부****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부모이혼 시 부모선택권 반영 사례율	
		부모이혼 시 면접권 확보율	
	교육 진로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 의견 존종도	**진로/진학 문제에 대한 부모님 태도****
		진로선택 시 청소년 의견 존중도	**학원이나 가정교사 결정시 의견존중 정도**
	문화 여가	문화여가 활동 시 청소년 의견 존종도	**가족여행/여가활동 결정시 의견존중 정도**** **취미 학원/교실 결정시 의견존중 정도** **생활용품 구입시 의견존중 정도**
표현의 자유	사적 취향	*두발 및 복장 자율화 학교 비율*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 여부 학교규칙 제정 시 학생의견 반영 여부
		부모의 청소년 두발· 복장 규제 정도	자신의 두발/복장에 대한 부모님 간섭
	학생 의견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 학교 비율*	
		교내 징계 시 의사소명권 학교 비율	**징계대상 학생에 소명권 부여 여부****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선생님께 자유 의견표명 가능 여부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내 집회 결사	*교내 자치회 있는 학교 비율*	**학교 학생회 활동 활성화 여부****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 비율	
	학교외 집회 결사	*청소년관련단체 가입 청소년 비율*	
		청소년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학교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정보접근권	도서 접근	*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인터넷 접근	*청소년 가구 컴퓨터 보유율*	
		청소년 가구 초고속 인터넷 가입 비율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사회참여 및 참정권	사회 참여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학교에서 교외 아르바이트 인정 여부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
		청년 실업율	**복잡한 사회문제에의 불참여** **개인 힘의 정부정책에의 영향 가능성**
		청소년 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참여율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정치적 문제 참여활동 경험***
	참정권	*학생대표 피선출권 제한 학교 비율*	조건 없이 학생회장 입후보 가능 여부
		교칙 제·개정 학생참여 허용 학교 비율	**학교의 규율/교칙에 대한 의견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학교비율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반영**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우리 사회에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2007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진은 전문가들의 지표들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의 의견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2006년 참여권 개별지표 총 31개 중 표현의 자유 관심영역에서 가장 많은 조사문항 5개와 사회참여 및 결정권 관심영역에서 4문항, 자기결정권 관심영역에서 4문항, 집회·결사의 자유 관심영역에서 2문항으로 위의 <표 Ⅱ-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15개 문항들이 선정되었다. 정보접근권 관심영역에서는 해당 개별지표와 관련한 문항이 하나도 선택되지 않았다. 발달권과 같이 2007년 7월에서 8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고등학교 일반계와 실업계 총 6,912명(남자 3,634명, 여자 3,19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이종원 외, 2007: 150~173).

- 집안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자녀 의견에 대한 존중 여부에 있어서는 존중하는 경우가 55.2%였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약 15% 정도였다. 이 결과는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부모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직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가정 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가 24.7%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되어 역시 가정 내 의사결정에의 청소년 참여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는 66%가 되어 1/3 정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학이나 진로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가활동과 같은 문제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3.5%정도로 나왔는데 이는 여가활동을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가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 <표 Ⅱ-1-7>의 괄호 안 숫자는 지표에 해당되는 질문문항 수이고 *표는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항 문항이다. ** 표는 개발된 지표와 같은 조사문항이며, 그 이외의 모든 회색 박스의 지표는 2008년 청소년인권 국제비교 실태조사 시 추가로 들어간 조사문항의 내용이다.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소년 참여권 문항에서는 학교에서 두발과 복장 모두 규제하는 경우가 81.4%에 달하고 둘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는 4.1%에 해당해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두발과 복장에서부터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28% 정도도 두발과 복장에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 내의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9.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대표적인 참여권을 행사하는 학생회 활동에의 참여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낮거나, 참여에 여러 제약들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 제정 시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10.5%로 매우 낮게 나와 청소년 자신들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데에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2008년도 참여권 선행연구 내용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의 3차년도인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수행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 국제비교 조사에도 발달권과 함께 청소년들의 참여권에 관하여 조사되었다. 대상 국가들과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124개 문항이 확정되었고, 그 중에서 21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과 스웨덴만 조사하였다. 124개 중에서 참여권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위의 <표 Ⅱ-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부질문 없이 총 17개로 구성되었다. 국제비교를 위해 조사대상 국가 간에 합의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한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 2,000여 명이다. 5개국 국제비교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청소년의 참여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다른 국가와 비교 분석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논하자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한국의 청소년 참여권의 실태를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실태에서도 학생의 소명권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 매우 낮은 편임이 드러났다.
•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학생회 등 자치활동 참여 희망 여부'에서 한국학생들은 자치활동 참여의향이 중국과 미국 다음이었는데 두 나라와는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사회참여 영역에서도 한국청소년들의 참여 인식정도는 스웨덴과 미국의 다음으로 높고, 과반수 이상(68.1%)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 참정권 영역에서는 학교교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개국 중 가장 높아 학생의 참정권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청소년 참여권에 대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5개 국가와 함께 17개 문항들을 가지고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는, 전반적 스웨덴이 모든 문항에서 부모의 자녀 의견 존중도가 매우 높았으며,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자녀의 결정권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징계대상 학생에 대하여 소명권을 부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38.7%), 스웨덴(33.7%), 미국(26.0%), 한국(10.6%), 일본(8.3%) 순으로 중국과 스웨덴의 응답이 높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 사회참여와 관련하여서는 '나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포함)는 응답률이 스웨덴의 경우 7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69.3%),

한국(68.1%), 중국(61.1%), 일본(33.4%) 순의 응답률을 보여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 청소년의 과반수가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포함)는 응답은 일본의 경우가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41.0%), 한국(40.1%), 미국(34%), 중국(25.4%)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일본 청소년의 경우 79.8%가 '그렇다'('매우'와 '그렇다' 포함)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54.5%), 스웨덴(48.7%), 미국(43.4%), 중국(40.7%)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부정적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 모든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65.5%), 일본(60.2%), 중국(57.3%), 미국(51.9%) 순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국제비교 결과를 종합해서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연구결과의 요약과 제언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보고서는 한국청소년들의 참여권 실태는 5개국 비교 결과, 한국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였으나 참여의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대체적으로 스웨덴과 중국의 참여권 수준과 의식이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이 참여 실태와 수준이 낮은 것에 비해 일본은 인식과 의식면에서 참여에 대해 회의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과 차이에 있어 동서양 또는 대륙별 차이보다는 인권 선진국

인 스웨덴과 사회주의 정치체제 특성을 가진 중국 등 개별 국가단위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스웨덴도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공통적인 맥락이 있는지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도가 5개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참여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적시하였고, 표현의 자유 수준과 학교 자치활동 참여의향도 낮은 편이었음이 강조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참여권 보장수준과 권리수준 만족도에 있어서도 5개국 중 최하위에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연구보고서의 한국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욕구가 높아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고서는 조사결과에 나타난 대로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5개국 중 중간 정도 수준에서 긍정적인 의식을 보여주었음을 말하면서 특히, 학교운영에 학생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예를 들었다.

④ 2006~2008 3개년도 아동·청소년 참여권 연구내용 종합분석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의 참여권 지표는 '자기결정권(의사존중)',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의 5개 관심영역에서 총 12개의 세부관심영역들이 개발되었고, 이 영역들은 다시 총 31개의 개별지표들을 생성하였다. 이미 고찰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3개년 동안 연구된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간이 되는 연구는 역시 2006년도의 각 권리에 해당하는 지표개발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의 주요 연구내용이었던 실태조사와 2008년의 5개국 국제비교연구도 결국 2006년에 개발된 지표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속 연구들이기 때문이다. 2006년 시도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지표 개발의 결과에 대하여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표의 개발은 종국적으로는 가치에 대한 논의이고 그로 인해 보는 이의 관점

에 따라 그의 타당도와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개발된 참여권 지표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실태조사 문항들과 결과들은 계속 문제의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근원지는 바로 참여권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범주이다. 이는 비단 참여권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2006년도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연구 내용의 분석에서 가장 향후의 후속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참여권 개념에 대한 분석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참여권의 개념 설정과 범주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내용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접근권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15조(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제외하고 다른 조항들인 제12조(아동의사의 존중), 13조(표현의 자유),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도 발달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여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보접근권에 대하여는 참여권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많은 부분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17조를 근거로 2006년의 아동·청소년 참여권 지표개발에 있어서 정보접근권의 세부관심영역은 '도서에 대한 접근'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설정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분명히 참여의식의 형성이 부분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기에 보편적이고 정상적 발달을 위해서는 유익한 도서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들에의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즉, 정보접근권은 참여권에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협약의 17조가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발달권에 많이 근접하여 관련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논지의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참여권 지표에

관한 응답에서 정보접근권에 관하여 그의 타당도와 중요도를 선정한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대변될 수 있다.

한편, 2006년의 연구에서 한국의 보고서에 대하여 UN아동권리위원회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사항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 안팎에서 이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아동과 청소년들의 각종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참여활동들이 강압적으로 폐쇄되거나 진압당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심각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침해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의 청소년 참여권 실태조사 연구는 먼저 19명의 전문가들에게 2006년 개발된 참여권 지표항목들에 대하여 타당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설문문항 선정에 고려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들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타당도와 중요도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바로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정보접근권 자체의 영역이 참여권 귀속 여부에 관한 논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개별지표에 중요도와 타당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 가는 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내자치회나 학생자치회에 참여하는 것과 학교 밖에서 청소년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은 참여권을 직접 체험하는 중요한 개별지표들인데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생각에는 교내자치회나 학생자치회, 청소년단체에서의 참여활동들은 실질적으로 입시위주의 현 교육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개별지표로 '표현의 자유' 관심영역에서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이 선정되고, 가장 높은 타당도를 보인 개별지표로 세부관심영역 '참정권' 영역에서 '교칙 재개정시 학생참여 허용 학교 비율'이 선정

된 사실이다. 이 두 개별지표는 전체 참여권 영역의 순위를 평가하는데 최상위를 차지하였다. 교칙 재개정시 학생참여권은 타당도에서 1위와 중요도에서 2위를 차지한 반면에, 두발 및 복장 자율화에 관한 권리는 타당도 3위와 중요도 1위를 차지하였다. 중요도에서 1위로 나타난 두발 및 복장 자율화에 관한 개별지표는 항시 청소년과 학부모, 학교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라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참여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교칙 재개정시 학생참여'는 그의 타당도를 모두가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로 특이사항은 교차되지 않은 개별지표로 타당도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중요도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 비율'이었다. '참정권'이 세부관심영역에 속하는 이 개별지표가 전문가의 조사결과 교차되지 않은 이유는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의 자유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도 결국 교칙을 재개정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때에 역시 가장 중요하고 타당한 최우선의 참여권 개별지표는 '교칙 재개정시 학생참여 학교 비율'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설문문항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이사항들이 고려되어 15개의 설문문항들이 선정되었다. 이중에 집회·결사의 자유 관심영역에서는 2문항만이 선정되었고, 정보접근권 관심영역에서는 관련 설문문항이 하나도 선택되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아직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청소년의 1/3 정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학이나 진로문제를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 81.4%에 달하는 학교가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모의 28% 정도도 두발과 복장에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신을 표현하는데 참여하는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이러한 억압적인 가정과 학교 안팎의 문화는 전체적으로 청소

년들의 참여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회 활동에의 참여에 관해서 매우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들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도에 수행된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 5개국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에 선정된 문항 수는 총 124개 문항이었는데 이 중 참여권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17개가 선정되어 다른 권리들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발달권의 국제비교 조사문항 43개중 2007년 실태조사에 선정된 문항이 고작 3개였던 것에 비해 2007년 실태조사 참여권 설문문항 15개 중에서 7개가 국제비교의 설문문항으로 활동되었다. 이는 국제비교 설문문항이 총 17개 문항임을 감안하였을 때에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개국 국제비교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학생의 청소년 참여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히 분석하면, 한국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정권 영역에서는 학교교칙에 대한 학생의견 반영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힘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일본 청소년 다음으로 한국청소년이 많이 응답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국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발전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의 경우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현 한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한 강한 불만과 동시에 참여의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참여권 보장수준과 권리수준 만족도에 있어서도 5개국 중 최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욕구가 높아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시사점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이다. UN에서 1989년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선언되고 1991년 회원국으로 가입된 후 15년 만의 일이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3·4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UN아동권리위원회에 회원국의 의무로 3차례 아동인권의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 인권에 관한 실태가 여러 차례 조사되었으나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010년까지 5년간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온 이 연구는 향후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연구에 있어서 주춧돌과 같은 위상과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연구수행의 의의를 가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제기준 대비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는 연구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제한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과 제한점의 원인은 무엇보다 이 연구가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인을 찾자면 역시 인권문제에 있어 성숙도는 민주주의 성숙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것도 원인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탄생이 넓게는 인권으로부터 좁게는 당시의 시민권에서부터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서구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론과 실천의 오랜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서구와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미성숙 단계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 개개인은 인권문제 대하여 아직 성숙한 개념의 정립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 형성과 가치 판단 및 의사소통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어릴 적부터 가르쳐지고 일상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한국의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은 이러한 교육적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발전적 사고와 가치관 형성이 더디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기준 대비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상황적 배경을 들여다 볼 때에 이 연구의 가치와 의의는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 아래에서 지금까지 고찰된 지난 3년간의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 대한 성찰로서 2009년 생존권과 보호권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던 그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함께 드러내어 논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찾아본 후,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에 관하여 고찰해 보자.

(1) 한국의 아동 · 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의 일반적 문제점들에 관한 제언

2009년의 연구에서도 이미 제언되고 시사된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을 연구하는 데 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과 제한점들은 무엇보다 지표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해 이를 위해 제언된 내용은 크게 아동권리지표와 청소년권리지표 개발의 차별성, 변증법적인 인권지표의 개발 연구, 실천 지향적인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의 개발이다(모상현 외, 2009: 75~78). 이러한 제언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중요한 제언들로서 개발에 앞서 개발자들이 유념해야 할 거시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가지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영역의 범주로 고착되어 있는 영역성과 경계성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각 인권 영역에서의 개별지표 선정에서 개발자들이 가지게 되는 해석학적 순환의 어려움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론과 실천의 괴리로 아직 실태로서 인식되기에 미숙한 인권현장의 성숙도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자.

먼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영역의 범주로 고착되어 있는 영역성과 경계성의 문제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생존', '보호', '발달', '참

여’라는 각 개념이 가지는 범주와 경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모든 인권내용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4개의 단어로 압축되어 범주화되고 서로 경계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UN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마치 4개의 인권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 하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모상현 외, 2009: 45~46).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로는 협약 자체에 이러한 4영역의 분류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에도 이러한 분류로 범주화되어 목차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아동·청소년 인권 범주를 근본적으로 문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아동·청소년 권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현존하는 범주화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학문적으로도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권리의 4대 영역화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한 재검토와 비판적 논의를 거쳐서 다시 원안이 그대로 수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가 이번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존권과 보호권의 경계, 생존권과 발달권의 경계, 발달권과 보호권의 경계, 발달권과 참여권과의 경계 등에 있어서의 혼란이 하위 영역의 개별지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영역화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4대 영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영역화 하는 방법과 기존의 영역화에서 경계의 중복에 관한 문제를 인정하고 협약의 각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내용들이 영역의 분류에서 중복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새로운 아동·청소년 권리영역의 범주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인권지표의 개발자가 이미 범주화되어 있는 각 인권영

역에서 개별지표의 개발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해석학적 순환의 어려움이다.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은 문헌연구에 있어서의 해석학적 방법이 가지는 난제를 말하는데 이를 간략히 말하면 전체의 이해는 부분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부분의 이해는 전체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해석하는 주체와 해석의 대상인 객체, 텍스트(text)의 관계에서 볼 때에 이 둘은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텍스트의 이해는 해석자의 '전(前) 이해'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텍스트는 해석자가 가지는 해석의 주관적 '전 이해'를 수정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를 아동·청소년의 인권 연구에 대입을 하면 인권연구가 가지는 어려움이 바로 해석학적 순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3개년 간의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에서 나타난 어려움들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상이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표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범주에 대하여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4대 권리영역으로 하여 이미 선 이해로 가지면서 각자의 이해에 따라 하위 영역을 설정하여 개별지표들을 생성했기 때문에 지표의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어려울 수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하위영역이나 개별지표들 간 경계의 모호함과 중복성에서 나타났거나, 정성지표의 선정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6년에 개발된 총 152개의 개별지표들과 각 지표들과 관련된 인권현장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향후 이를 면밀히 실증적으로 재검토하여 개별지표들에 대한 가감을 한 후 다시 새로운 개념의 틀로 범주화하는 수정작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념의 이해에 관한 어려움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미 개발된 지표들을 현장에 비추어 보아 지표의 가감을 결정하는 연역적 반증(falsification)의 실증적 방법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연구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실례는 2007년 실태조사 연구에서 전문가들에게 지표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를 물었을 때에 나타난 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전문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 타당도와 중요도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참여권 개별지표로서의 타당도에 있어서는 2위를 차지하였으나 중요도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비율'이 바로 그 예다. 타당도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것은 이 개별지표가 가지는 이론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요도가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것은 이 개별지표가 가지는 현장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즉, 세부관심영역 '참정권'에 속하는 이 개별지표는 학교의 실천현장에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해도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어서 중요도가 낮았다고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하게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대변할 수 있는 참여권의 대표적인 관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타당도와 중요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결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학자들 간에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서 종종 이상적 이론의 추구를 더 중시하는 학자와 현실적 실천 상황에 더 가치를 두는 학자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론 없는 실천 없고, 실천 없는 이론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이상적 이론을 담을 만한 실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론은 버려지기 쉽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비율'의 개별지표는 만약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되어 학교운영에 반영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개별지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참여권의 타당도를 높게 인정하지만 결국 실천현장의 현실을 더 많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적 이론이 실천현장에서 계속 외면당하면 그 이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현실을 이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상적 이론이 논해져야 한다. 이론과 실천은 끊임없는 변증법적 발전 관계이므로 이론을 통해서 실천 현장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수정되어야 이상적인 실천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지표들이 그 자체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현실이 비록 따라주지 못해도 중요시하여, 계몽적 차원에서 계속 설문문항에 넣어서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2) 2006~2008년 연구된 아동 · 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제언

2006년의 아동·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개발부터 2008년 아동·청소년 권리 5개국 국제비교를 고찰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향후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나 개선 및 이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된 청소년 발달권 지표에서는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의 5개 관심영역 중에서 가장 발달에 있어서 전제적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체적 발달에 대하여 보다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지표에서도 주로 신체적 발달능력에 치우쳐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체적 발달 상태에 보다 많은 개별지표들이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논의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발달이 중요하고, '정상적인'이라는 수식어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는 기준의 상태를 표시하는 내용을 지닌 수식어지,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발달 상태가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측정될 경우에는 생존권에 속하는 지표로 분류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발달 수준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발달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빈곤, 질병, 영양, 신체충실도, 건강, 치료 등도 개별지표들이 따로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발달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달권 지표로도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언과 관련된 것으로 지표의 영역분류와 개별지표들은 때로는 중복되거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발달권의 관심영역 분류에 있어서 정서적 발달의 관심영역이 가지

는 범주가 모호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이란 수식어가 가지는 의미가 가지는 모호함에서 기인하는데 과연 '정서'라는 단어가 가지는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은 어디까지 인지에 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08년 5개국 국제비교 조사에서 총 43개의 설문문항들 중에서 33개가 정서적 발달을 묻고 있다는 사실과, 이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16개나 배당된 것은 정서적 발달이 가지는 의미의 범주의 모호함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발달의 관심영역을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발달 요소로서 문화적 발달이나 예술적 발달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성적 발달의 관심영역과 인간정신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심리적 발달*로 나누어 보다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은 보다 균형 있는 관심영역들의 안배에 따라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연구되어온 아동·청소년 권리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이 국제기준과 국제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 개발된 지표들은 2008년 국제비교에서 사용된 설문문항들과 맥락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국제비교 발달권 조사문항 총 43개 중 2007년 한국에서 국제조사를 예비하여 조사된 설문문항과 같은 것은 2~3개에 불과했다. 또한, 43개중 33개의 설문문항들이 정서적 발달을 묻는 설문문항이었고, 이 중 16개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었다는 것은 발달권의 다른 관심영역인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편향된 설문문항의 구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다 균형 잡힌 아동·청소년 권리의 실태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관심영역이나 세부관심영역간의 개별지표들과 관련된 설문문항의 구성에 대한 안배가 의미 있는 학술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위에서 일반적인 문제점에 관한 제언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

* 심리적 발달에 있어 '심리적'이라는 말을 학자에 따라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정서, 감성, 정신 모두가 심리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이라는 의미는 '정신'이나 '영혼', '마음'을 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권의 연구에 있어서도 '참여'라는 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앞에서 그 예로 '정보접근권'이 과연 참여권에만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개별지표들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이나 관심영역의 설정은 다른 권리에 관한 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역간의 중복의 가능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말하는 '정보접근권'도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발달권에 속하는 정보접근권과 참여권에 속하는 정보접근권 등으로 나누어 관심영역이나 세부관심영역을 중복해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제언들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표개발은 아동을 제외하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총정리하고 분석하여 아동을 포함한 인권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것인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성찰 가운데 실태조사의 신뢰도와 명증성은 결국 지표의 신뢰도와 명증성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개발된 기존의 지표들의 분류에 있어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영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류인지부터 재논의를 거쳐 개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4대 영역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각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개념이 가지는 내포와 외연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보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들이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할 경우에 4대 영역을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영역 간에 개별지표들이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들이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010년도 인권수준연구에 대한 개관

한국정부는 2008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5년 뒤인 2013년에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아동권리협약과 지속적인 행동프로그램(WPAY: 2005년 10월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의결)에 의거 국제기준 대비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기준에 부합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지표개발이 요청되며, 우리 아동·청소년인권 신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과제를 제시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각종 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국제기준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OECD 회원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아동·청소년 권리수준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김승권, 20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백서 발간, 각종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도되어 왔지만 대부분 기초연구나 시범적용에 그치거나 관심영역에 대한 부분적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주기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본원에서는 2006년부터 5개년에 걸쳐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주기적·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진전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확한 결과산출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의 사회지표체계 개발과 보완, 일반적인 적용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

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가 사회지표로서의 현실적 적합성과 타당성, 측정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차례의 수정·보완 및 개발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3차년도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체계적 파악 및 진전 상황 평가를 위해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검토·보완하여 표준화된 인권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지난 3년간의 지표 연구 성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년도 연구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내용과 국내외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여, 청소년인권지표(안)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1차년도 연구내용

① 청소년인권지표 개념 정립과 하위영역 설정

② 청소년인권지표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분석

③ 청소년인권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④ 청소년인권지표 체계구축 및 부문별·영역별 지표(안) 개발

⑤ 청소년인권지표의 산출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2) 사업 2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지표항목들 중에서 공식 행정통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성지표 항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생존권 분야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정량지표 일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청소년인권정책의 영역별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2차년도 연구내용

①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지표체계(안)의 개별지표항목들 중에서 정성지

표를 대상으로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사 실용성(practicability) 등을 기준으로 선별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실제 조사에서 사용할 조사문항과 응답척도를 개발하였다.

② 확정된 조사문항을 토대로 조사표를 구성한 뒤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인권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는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인권의 심층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조사와, 인권문제와 관련한 부모-자녀세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학부모 대상의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③ 선행연구·문헌자료 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인권지표의 활용, 인권 인프라, 정책 추진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인권보호 시스템 등 5개 영역에 걸쳐 포괄적 수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3) 2008년에 실시된 3차년도 연구에서는 1, 2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하는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 인권수준을 가늠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3차년도 연구내용

① 국제비교를 위한 인권지표항목 및 조사도구 검토

② 2008년도 한국청소년 인권실태 파악

③ 국가별 청소년 인권환경 분석

④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4) 2009년 4차년도 연구에서는 전체 4개 영역으로 분류된 인권체계 중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을 함께 묶어 주요 지표의 추가산출 및 표준화된 설문도

구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기존의 청소년 중심의 조사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함께 조사하여 횡단비교가 가능한 자료의 구축 및 연령 때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차년도 연구내용

① 생존·보호권 영역에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인권 변화양상의 시계열적 이해를 위한 종단 자료 수집을 목표로 정성지표를 개발하였다.

② 행정통계 중심의 정량지표를 검토·보완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고, 정성·정량지표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실태조사결과를 산출하였다.

③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 2010년 5차년도 연구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 체결국으로서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발과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제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권지표 개발의 요청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인권의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4년간(2006-2009)의 선행 연구 성과를 검토·보완하여 우리의 현 상황과 국제수준의 요구에 부합한 지표를 개발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기존의 청소년의 연령대 중심으로 수행해 왔던 연구방식과는 달리 아동과 청소년 연령층으로 나누어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아동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의 검토와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축적된 통계조사자료는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

고서 제출시기(2014년도로 예상)까지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로써 우리 아동·청소년인권 현황과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고, 아동·청소년인권정책의 목적설정과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5차년도 연구내용

2010년 5차년도 과제에서는 유엔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판 아동·청소년인권설문도구 개발을 완성하여,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 체결국으로서 청소년인권지표의 개발과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제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수준에 적합하며,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변화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권지표 개발의 요청이 시급하며, 체계적인 청소년인권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의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한국 아동·청소년인권 지표개발을 위해 수행된 기존의 4년간(2006-2009)의 연구 성과를 검토·보완하여 우리의 현 상황과 국제수준의 요구에 부합한 설문도구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에서의 개발이 완료됨으로 인권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조사도구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3개년 간 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대를 포괄했던 방식과는 달리 본 과제에서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 연령층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미흡했던 아동·청소년인권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의 검토와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결과는 우리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의 근거자료를 축적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기준에 준하는 표준화된 설문도구의 개발과 실태조사를 통해 ①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 수준의 문제점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는 모니터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②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통계자료의 구축을 통해 정부정책 방안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③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축적된 통계조사자료는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시기(2014년도로 예상)까지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로서 우리 아동·청소년인권 현황과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고, 아동·청소년인권정책의 목적설정과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0년 5차년도에는 전체 4개 영역으로 분류된 인권체계 중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을 함께 묶어 주요 지표의 추가산출 및 표준화된 설문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① 2010년도에는 정책적 활용도의 제고와 장기적 횡단 자료의 축적을 위해 행정통계의 검토·수집과 더불어, 전체 4개 영역으로 분류된 인권체계 중 서로 유관성이 있는 2개(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함께 묶어 정성지표중심의 항목·문항을 개발하였다.

② 동시에 행정통계 중심의 정량지표를 검토·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정성·정량지표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실태조사결과를 산출하였다.

③ 전년도(생존권·보호권)에 이어 올해 개발된 2개(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에 대한 지표·문항개발 및 조사를 통해 인권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조사도구가 완성되어 횡단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④ 2개년 과정을 통해 완성된 설문도구를 활용, 반복 황단자료의(시계열적) 수집이 가능하며, 추후 이렇게 생산된 자료축적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에 대한 통계적 기초자료의 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인권정책 수립의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4개년에 걸친 추진된 선행과제의 내용과 올해의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지표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2006년 :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 마련
- 2007년 : 일부 정성지표 중심으로 인권실태 설문조사 실시
- 2008년 : 일부 정성지표 중심으로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실시
- 2009년 : 생존·보호권 영역의 지표 및 설문도구 개발과 실태조사 실시
- 2010년 : 발달·참여권 영역의 지표 및 설문도구 개발과 실태조사 실시
  생존권·보호권영역에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인권 변화양상의 시계열적 이해를 위한 종단 자료 수집을 목표로 정성지표 개발

Ⅲ. 지표 및 설문도구 개발

1. 201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설문체제 개발방향
2. 지표산출과 설문문항 개발과정에 대한 개요
3.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
4.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5.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Ⅲ. 지표 및 설문도구 개발

1. 2010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설문체제 개발방향

2010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설문도구의 개발방향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旣) 개발된 지표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그 맥락을 같이하여 이를 새롭게 수정·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인권지표와 조사도구개발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6년도 지표개발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지표의 체계성에 근거하여 지표체계를 확립하여 기존 통계나 각종 추정치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 체계적으로 인권관련 정보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의 하위구성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하위영역에 속하는 지표항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한다.

둘째, 국제기준대비 우리 아동·청소년인권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표항목을 검토·보완하고 우리나라의 인권환경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발굴·보완한다. UN아동권리협약(CRC),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PAY), 의제21(Agenda 21), 아동특별총회 결의안,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등 각종 협약과 결의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기준에 적합하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특수한 인권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항목의 추가개발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국제협약과 권고사항에 따라 인권영역별 의무이행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의 특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 국제협약과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특수한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세부영역 별 지표항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현 시점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인권현황과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요 논쟁점들을 대표할 수 있

도록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 청소년 관련 지표와는 달리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의 우리 아동·청소년들 처한 인권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쟁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적인 내용을 지표항목에 담아야 한다. 시의적·현실적 지표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유형이나 인권침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인권의 쟁점과 그 특성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인권지표와 조사도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양한 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존의 행정지표 중심의 객관적 지표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인권의 제 조건을 측정하는 정태적(static)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의 축적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용이한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내에 포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권 변화의 추세와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정량화된 점수로 수치화된 객관적 지표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인권환경에 대한 의식, 태도, 주관적 느낌 등의 다양한 욕구현실을 반영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인권지표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인권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을 보완·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요구된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보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인권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청소년인권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인권관련 통계에 대한 관심이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정보수요의 증가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인권지표는 다양한 정보소비자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기능전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여섯째,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기초한 사회집단별 비교가 가능한 아동·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우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인권환경과의 상호적 역동성 속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있는 그대로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은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등)과 환경적인 특성(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사회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인권의 수준은 성별, 학교 급별, 연령별, 지역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지표는 이와 같은 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지역별 등 사회집단별 차이의 비교가 가능한 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지표산출과 설문문항 개발과정에 대한 개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다양한 사회체제 안에서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현재의 인권현황과 변동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분석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침해 요소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체계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인권지표와 설문도구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완이 요구된다.

본원의 지표연구의 1차년도 사업인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한 2007년도 설문조사도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4개 영역의 157개에 달하는 개별지표 항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당해 년도에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단 한 차례의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의 수는 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해, 2007년에는 지표별 우선순위에 기

초하여 4개영역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특정영역에서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2007년도에는 인권 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실태조사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주요 인권분야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설문조사 도구의 단계적 개발과 인권환경의 변화양상과 주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반복·횡단조사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인권지표가 안정적·지속적으로 보완·개발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연속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설문도구의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4개의 인권분야 중 서로 유사한 영역을 묶어 각각의 개별지표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설문도구개발이 요청되며, 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아동·청소년인권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주기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에는 발달권과 참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지표(2006년) 및 설문체계(2007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09년도 생존권과 보호권영역에 이어 2010년도에는 발달권 영역에서 63문항, 참여권 영역에서 6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기존의 세부관심영역과 개별지표항목을 검토·보완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지표 및 설문문항의 개발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관련 학계 연구자,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각 인권지표와 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의뢰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에게 올해 개발 예정인 각 영역에 해당하는 인권지표와 이를 대표하는 설문조사표를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지표가 그 영역의 인권을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문항이 얼마나 정확히 지표를 대표하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지표별점수와 문항의 타당도는 각 전문가들의 응답빈도를 합산해서 각각의 지표의 타당도 정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115문항(초등용-배경변인포함)과 133문항(중고용-배경변인포함)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2010년도에 수행된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과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그리고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 과정 등의 내용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3.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

해당 인권영역의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발달권과 참여권 인권지표 및 조사도구의 개발방향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영역에서 이 두 영역의 환경개선과 권리신장 실태를 잘 반영하고, 더불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성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행정지표 등의 객관적 지표에서 볼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특성과 욕구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지표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1) 아동·청소년 발달권 · 참여권 개별지표의 타당화조사

아동·청소년 발달·참여권 지표체계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온라인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1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0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는 델파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패널로 구성 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Murry & Hammons, 1995), 15명 정도의 인원은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준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 참가한 인력은 현직 청소년 관련 교수 8명,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3명, 현직 교사 4명으로 총 1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협조요청을 유선으로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e-mail 의견조사지를 전달하고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의견조사지는 개별지표항목이 세부관심영역을 얼마나 정확히 대표하고 있

는 지를 묻는 4점 리커터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75% 이상인 3점 이상인 항목에 대해 타당의견으로 채택하는 방식(Murry & Hammons, 1995)에 근거하여 해당지표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전문가 의견을 거친 후 최종 지표항목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개별지표 항목은 아래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지표체계구성에 제시되어 있다.

2) 발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 발달권 지표는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의 5개 관심영역에 각 2개의 세부관심영역을 가져 총 10개의 세부관심영역이 형성되었고 정량지표 10개, 정성지표 25개로 총 35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에 대한 개념 정립에 있어 생물학적 의미의 발달과 발달을 위한 제반 여건과 환경에 대한 요소도 고려하여 개발의 의미를 포함하는 발달을 전제로 개념설정을 하고 있다. 이에 모든 발달의 전제가 되는 신체적 발달지표와 아울러 청소년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정의될 수 있다. 발달권 중 정서발달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으로 심리적 발달과 감성적 발달로 관심영역을 분리 할 필요가 있으나,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문제 및 해당 관심영역 분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은 기존 지표분류의 틀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발달권의 경우, <표 Ⅲ-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각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세부영역의 개별지표항목을 검토·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세부관심영역 중 인지능력(3-1-2)과 신체적 능력(3-5-2)은 중요 발달권 지표이지만 여타 다른 청소년지표 연구에서 중복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할 두 번째 정량지표연구에서 행정통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함으로 본 실태조사에서는 해당지표 관련 문항개발을 수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조사가 통계청 승인과제로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이 함께 묶여 조사가 수행되기에, 조사해야하는 문항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표 Ⅲ- 3- 1> 2010 아동·청소년 발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3-1-1-1. 취학률 **3-1-1-2A. 중퇴율** **3-1-1-2B. 학교등교거부이유** 3-1-1-3. 대학진학률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3-1-1-5.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3-1-1-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3-1-1-7. 하루 평균 학습시간**
	3-1-2. 인지능력	3-1-2-1. 창의성 지수 3-1-2-2. 문제해결능력 지수 3-1-2-3.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1-2-4. 지능지수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3.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3-2-1-4. 청소년 여가시간과 유형**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3-2-1-6.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3-2-1-7. 고민유형과 고민상담** **3-2-1-8. 부모·자녀관계**
	3-2-2. 정서적 안정	**3-2-2-1. 우울증 지수** **3-2-2-2. 스트레스 지수(학업)**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3-2-2-4. 자존감 수준** **3-2-2-5. 자기 효능감** **3-2-2-6. 정서 조절감** **3-2-2-7. 정서적 고립감** **3-2-2-8. 낙관성** **3-2-2-9. 학교생활의 적응**
3-3. 사회적	3-3-1. 사회성	**3-3-1-1.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3-3-1-2A.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

발달	발달기회	램 참여횟수 **3-3-1-2B.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동아리 수**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3-3-2. 사회성 발달정도	**3-3-2-1. 갈등해결능력지수(기존의 갈등이해능력)** 3-3-2-2. 문화감수성 지수 3-3-2-3. 타문화 수용능력 지수 3-3-2-4. 리더쉽 능력 지수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3-4-1-1. 월 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 수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3-4-2-2. 직업기초능력수준**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기회	**3-5-1-1.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3-5-1-3.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평가**
	3-5-2. 신체적 능력	3-5-2-1. 50m 달리기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 굽혀 매달리기)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3-5-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3-5-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3-5-2-6.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2010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질 내용과 관련되는 개별지표항목은 진하게 표기되어 있다.

<표 Ⅲ-3-1>에 2010년 아동·청소년 보호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과 조사예정인 개별 지표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각 개별지표 항목들은 각각의 세부지표항목에 따라 인지적 발달은 인지발달 기회, 인지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서적 발달은 정서발달 환경, 정서적 안정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발달은 사회성 발달기회, 사회성 발달정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 직업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신체적 발달은 신체발달기회, 신체적 능력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다.

3) 참여권 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아동·청소년 참여권 영역의 지표체계는 청소년이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 개발된『청소년인권지표 분류체계(안)』에서는 청소년참여권의 관심영역을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종교결정권,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교육 및 진로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는 사적취향의 표현,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학교내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외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접근권은 도서에 대한 접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사회참여, 참정권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류된다.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관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량지표로 개발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보완·개발하고자 하였다. 참여권의 경우 2006년도에 개발된 지표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된 참여권 실태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분류틀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문서 검토를 통해 참여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지표체계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일정 상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도 지표체계 틀 내에서 개별지표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정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겨 두었다.*

2006년도 지표체계에서 변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참여권 지표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도에는 기존의 5개 관심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는 '참여관련 인식'을 추가하여 총 6개 관심영역으로 구성하였다(2006년도 참여권 지표체계는 5개 관심영역 - 12개 세부관심영역 - 31개 개별지표로 구성됨).

첫 번째 관심영역인 '자기결정권'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로 보완하고, 세부관심영역으로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별지표로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지표를 추가하였다.

두 번째 관심영역인 '표현의 자유'의 세부관심영역으로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과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를 보완하였다.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영역은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과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는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지표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관심영역인 '집회·결사의 자유'의 두 개의 세부관심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영역에 '4-3-2-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과 '4-3-2-3.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지표 등 두 개의 지표를 보완하였다. 2006년도 지표에 포함되어 있었던 '4-3-2-1. 청소년관련단

* 차년도 지표 수정작업에 참고가 되도록 수정작업 경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수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 중 제14조부터 16조 관련 내용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 관련 내용을 별도 관심영역으로 독립시키고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관심영역을 추가하여 7개의 관심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관심영역을 대표하는 개별지표의 분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지표의 경우 관심영역 이동이 이루어졌다. 참여권지표체계와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학자 외에 법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의 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으며 검토과정을 진행하여 1차 수정안은 7개 관심영역, 13개 세부관심영역, 47개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표틀과 지표항목 분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예: 정보접근권의 분류기준 등) 최대한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차 수정안에서 관심영역은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 및 사생활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 등 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은 발달권의 '3-3-1. 사회성 발달 기회'영역의 지표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권에서는 제외하였다.

네 번째 관심영역인 '정보접근권'을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로 보완하고, 세부관심영역으로'4-4-3. 알권리'를 추가하였다. '알권리'에 해당하는 개별지표는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와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이다.

다섯 번째 관심영역인 '사회참여 및 참정권'에 해당하는 세부관심영역으로 '4-5-2. 학교에서의 참여'를 추가하여 2006년도 지표체계에 '참정권'으로 분류되어 있던 학교에서의 참여관련 지표를 이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첫 번째 세부관심영역인 '4-5-1. 사회참여'에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과 '4-5-1-6.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를 추가하였고, '4-5-3. 참정권' 영역에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초등학생의 경우 선거 참여 의향)'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관련 인식'을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추가하여 참여 의의와 필요성, 참여의 장애, 참여 효과,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권 보장 수준 등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를 보완하였다. 지표 보완 결과, 2010년 참여권 지표체계는 <표 Ⅲ-3-2>와 같이 6개 관심영역-17개 세부관심영역-48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언급했듯이 지표체계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지표 분류틀부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수정 작업은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둔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기본틀은 유지한 채 일부 영역과 지표를 부분적·단편적으로 수정·보완함에 따라 지표틀 구성과 개별지표 분류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06년도에 지표체계(안)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지표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연구 과정에서 한 해 정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지표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사회지표의 성격 상 참여권 지표체계 검토 작업은 사회변

화와 관심이슈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Ⅲ- 3- 2> 2010 아동·청소년 참여권영역에서의 지표체계구성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4-1.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 보호*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4-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4.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취향의 표현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4-2-2.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4-3. 집회·결사의	4-3-1. 학교에서의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자유	집회·결사	**4-3-1-2. 학생 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4-3-2-2.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4-3-2-3.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
4-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4-4-3. 알권리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4-5-1-3. 청년 실업률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4-5-1-5.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4-5-1-6.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2. 학교에서의 참여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4-5-2-4.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3. 참정권	4-5-3-1.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 의향
4-6. 참여관련 인식		***4-6-0-1. 참여 의의와 필요성***
		4-6-0-2. 참여의 장애
		4-6-0-3. 참여 효과
		4-6-0-4. 참여 활성화 방안
		4-6-0-5. 참여권 보장 수준

※ 2010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질 내용과 관련되는 개별지표항목은 진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이탤릭체는 2010년에 보완된 지표이다.

4.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청소년용으로 수정·보완된 설문지의 일부내용은 조사대상 아동(초등학교 4~6학년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연령 특성상, 설문지의 내용과 어휘의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표본을 위한 설문지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를 초등학생 대상 프리테스트를 통해 점검하였다. 프리테스트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와 초등학교 교사 4명의 도움을 받아 연구진 차원에서 아동용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설문문항들이 제외되었고, 또 일부 문장과 어휘들이 수정되었다. 먼저 이 설문지를 가지고 초등학교 4,5,6학년 3개 반 90여명에게 배포되어 1차 프리테스트가 실시되었는데, 설문조사에 앞서 이해가 어려운 설문내용, 문장, 어휘들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주지시켰다. 이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표시된 문장과 어휘들은 보다 더 쉽게 수정하였고, 이렇게 재수정된 초등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교사 6인에게 감수를 받아, 내용과 어휘 등을 최종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수정된 설문지를 가지고 본 설문내용을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 3개 반을 대상으로 2차 프리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하면 <표 Ⅲ-4-1>와 같다.

<표 Ⅲ- 4- 1> 초등학생용 설문지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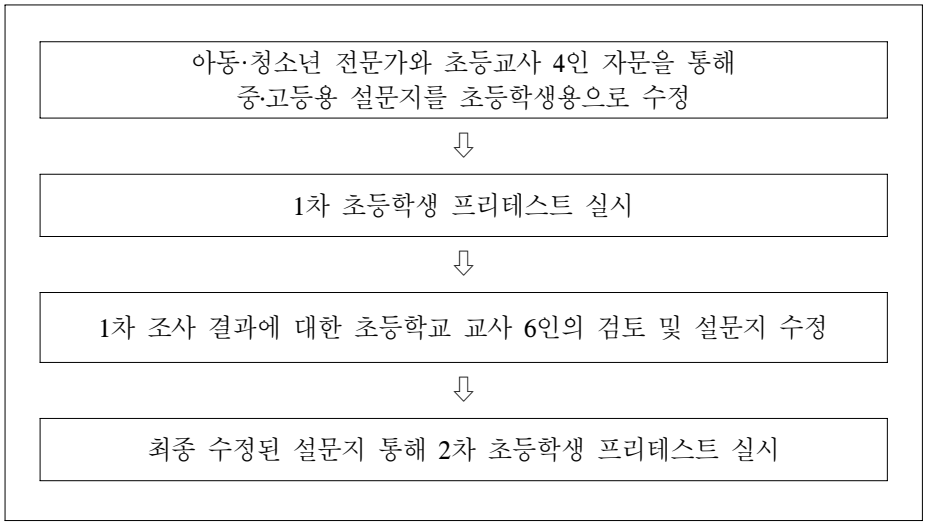

재 조사결과, 내용과 문장, 어휘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무응답이나 오류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프리테스트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초등학생용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고등학생용 설문지에는 포함되었으나, 초등학생용 설문지에는 제외된 내용은 아래의 <표 Ⅲ-4-2>와 같다.

발달권 영역에서는 인지적 발달기회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려는 이유를 묻는 문항과 사회적 발달지표 중 초등생들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문항을 그리고 초등용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직업발달과 관련된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에 대한 영역들이 제외되었다.

참여권 영역에서는 초등학생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문항으로,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을 묻는 문항, 교내·외 동아리활동 허용여부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 학생회 운영 시 학생 자율권 보장 정도에 대한 문항이 제외되었다.

<표 Ⅲ- 4- 2> 초등학생용 설문지에서 제외된 개별지표항목

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개별지표 고유번호
Ⅰ.발달권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중퇴율(학업중도포기이유)	3-1-1-2A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3-3-1-2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진로준비행동	3-4-1-2
			진로교육경험유무/만족정도	3-4-1-3
		3-4-2. 직업능력	진로직업태도	3-4-2-1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방향	
Ⅱ. 참여권	4-1.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보호	4-1-1. 종교 결정권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	4-1-1-3
	4-3. 집회·결사의 자유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4-3-2-1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4-3-2-3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2. 학교에서의 참여	학생회 운영에서 학생 자율권 정도	4-5-2-1

5. 발달권과 참여권 지표에 따른 설문항목체계

본 조사의 설문문항체계의 구성은 위에서 논의된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에서 선정된 정성지표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정성지표로서 활용 가능한 지표체계화 작업과 더불어 발달권 및 참여권의 개별지표에 상응하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도에 선별하여 설문조사문항으로 개발된 지표는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조사실용성(practic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

적인 지표선정의 보편적 기준인 측정가능성과 조사실용성 이외에도 국가 간 인권 모니터링 산출결과의 비교를 고려한 지표항목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측면과 우리 아동·청소년이 처한 특수한 인권현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대적 중요성(relative importance)이 중요 지표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 발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5개 발달권 개별지표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즉 개별문항의 개발은 활용성에 중점을 둔 정성지표로서 사용 가능한 지표체계화 작업을 의미한다. 인지발달의 기회는 중퇴율과 연관이 있는 항목, 학교등교거부의 이유, 사교육과 경험유무와 효과성,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 및 진행수준과 만족도, 평균학습시간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발달환경은 부모 및 선생님과의 대화 빈도, 여가 및 여가시간과 여가시설과 관련된 문항,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고민관련 문항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정서적 안정감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을 본 조사에 맞게 변형해 제시되었다. 사회성 발달기회는 묻는 문항들은 친구와 관련된 문항, 청소년 활동과 동아리 활동 유무와 그 유용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성 발달정도 혹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전략을 묻는 문항이 제세되었다. 진로준비 기회는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경험 유무와 효과성을 묻는 질문, 그리고 직업능력은 직업진로태도와 졸업 후의 진로방향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체발달 기회는 자신의 건강과 운동 및 수면과 관련된 문항들로 제시되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인지능력과 신체적 능력 지표는 중복 가능성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정량지표연구에서 행정통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함으로 제외되었다.

둘째, 아동·청소년 참여권 영역에서의 설문문항의 체계화 작업은 6개의 참여권 관심영역에 상응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정성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보호는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존

중되고 반영되는지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중요사와 교육 및 진로 결정에 있어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과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 등이 있다. 학교에서 개인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소지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두발과 복장 등 사적 취향의 표현 실태,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 자율권 보장 정도,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으로서 인터넷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에서 청소년이 어느 정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발언권 존중정도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볼 수 있는 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학생회 운영실태와 교내·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등 자치활동에 대한 문항,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을 알아보는 문항,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으로서 정보접근권과 정보참여의 경우 학교 규칙을 알려주는지와 학생들의 인지도, 그리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의 정책참여, 학교에서의 참여, 선거 참여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거관련 문항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선거가능 연령이 되었을 때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관련 인식의 경우 사회참여의 의의, 장애요인, 활성화방안, 현재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도구는 청소년용 기준 발달·참여권 분야에서 총 133문항(발달권 63문항, 참여권 61문항, 배경변인 9문항)으로 선정·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Ⅲ-5-1>, <표 Ⅲ-5-2>과 같다. 설문도구의 각 조사항목은 초등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누어 분류되었으며, 각 설문문항의 순서에 따라

해당 지표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Ⅲ- 5- 1> 발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관심 영역	세부영역	조사문항		문항번호 초등	문항번호 중고	지표 항목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학업중도포기 이유			26	3-1-1-2A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23	25	3-1-1-2B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8 8-1	8 8-1	3-1-1-4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5	5	3-1-1-5와6
		학교수업진행 수준		6	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5-1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7	7	3-1-1-7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아버지)		16-1	18-1	3-2-1-1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		16-2	18-2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16-3	18-3	3-2-1-2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		9	9	3-2-1-4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10	10	
		휴일을 보내는 방법		12	12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11	11	3-2-1-5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	가정	24-1	30-1	3-2-1-6
			친구	24-3	30-3	
			학교	24-2	30-2	
		고민 상담 대상		15	17	3-2-1-7
		고민거리 유형별 우선순위		14	16	
		부모·자녀관계		17-1 17-2	19-1 19-2	3-2-1-8
	3-2-2. 정서적 안정	우울감		20-1~3	22-1~3	3-2-2-1
		학업스트레스		20-7 20-8	22-7~9	3-2-2-2
		전반적인 행복감		21-1 21-2	22-1 22-2	3-2-2-3
		자아존중감		22-1~3	24-1~3	3-2-2-4
		자기효능감		22-4 22-5	24-4 22-5	3-2-2-5
		정서적 고립감		20-4~6	22-4~6	3-2-2-7
		정서적 조절감(24-6,7)		22-6,7	24-6,7	3-2-2-6

		낙관성 수준(24-8,9)	22-822-9	24-824-9	3-2-2-8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18	20	3-3-1-1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13	13	3-3-1-2A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14-1~3	3-3-1-2B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		15	3-3-1-4
	3-3-2. 사회성 발달정도	갈등해결전략	19-1~4	21-1~4	3-3-2-1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회	진로준비행동		28-1 28-2	3-4-1-2
		진로교육경험유무/만족정도		27 27-1	3-4-1-3
	3-4-2. 직업능력	진로직업태도		28-3~5	3-4-2-1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29-1 29-2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4	4	3-5-1-1
		평일 평균수면시간	1	1	3-5-1-2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2	2	3-5-1-3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3	3	

<표 Ⅲ- 5- 2> 참여권 설문항목체계의 구성

관심 영역	세부영역	조사문항	문항번호		지표 항목
			초등	중·고	
4-1. 자기결정권 (=청소년 의견존중)과 사생활 보호	4-1-1. 종교 결정권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경험	-	32-7	4-1-1-3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1	31-1	4-1-2-1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2	31-2	4-1-3-1
		진로선택 시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여부	25-3	31-3	4-1-3-2
	4-1-5.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			4-1-5-1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여부 -징계대상 학생 정보 공개 여부 - 개인 시험성적 공개 여부	26-7 26-8 26-9	32-8 32-9 32-10	
		학교에서 개인 소지품 검사 경험과 대응태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	30-3 31	36-3 37	4-1-5-2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취향의 표현	학교에서의 두발 등 용모 규제 경험과 대응태도 학교에서의 복장 규제 경험과 대응태도	30-1 30-2)	36-1 36-2)	4-2-1-1
	4-2-2.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 보장 정도	26-5	32-5	4-2-2-1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29	35	4-2-2-2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여부	26-6	32-6	4-2-2-3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 인터넷에서 댓글 작성 경험	34-1 34-2	41-1 41-2	4-2-3-2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 -대중매체의 부정적 역할	33-1 33-2 33-3	40-1 40-2 40-3	4-2-4-1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학생회나 학급회 참여도	26-12	32-13	4-3-1-2
	4-3-2. 학교 밖에서의 집회·결사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	38	4-3-2-1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토론 -모임이나 까페 가입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서명운동	36-1 36-2 36-3 36-4	43-1 43-2 43-3 43-4	4-3-2-2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	44	4-3-2-3
4-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4-4-3. 알권리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여부 학생생활규정, 자치규정 등 인지도	26-10 26-11	32-11 32-12	4-4-3-1

		아동·청소년 친화적 인권 정보 제공 정도 -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 -청소년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공 여부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여부 -인권교육 실시 여부	 37-1 37-2 37-3 37-4	 45-1 45-2 45-3 45-4	4-4-3-2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 횟수 자원봉사 참여 시간 자원봉사 참여 이유	38-1 38-2 39	46-1 46-2 47	4-5-1-1
		청소년 정책관련 자치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경험	35	42	4-5-1-5
		청소년 정책에 대해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지역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시 청소년 의견 반영여부	32-1 32-2	39-1 39-2	4-5-1-6
	4-5-2. 학교에서의 참여	학생회 운영 현황 -학생 자율권 정도 -임원 자격의 성적 제한 여부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 여부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 여부	 - 27-1 27-2 27-3	 33-1 33-2 33-3 33-4	4-5-2-1
		학교의 규칙/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여부	26-4	32-4	4-5-2-2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28	34	4-5-2-3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결정권 -특별활동, 방과후 교실 학생 선택권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결정에 학생 의견 반영여부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 의견 반영여부	 26-1 26-2 26-3	 32-1 32-2 32-3	4-5-2-4
	4-5-3. 참정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초등: 선거가능 연령이 되었을 때 선거참여 의향)	40	48	4-5-3-2
4-6. 참여관련 인식		청소년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	41	49	4-6-0-1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42	50	
		참여의 장애요인	43	51	4-6-0-2
		참여 활성화 방안	44	52	4-6-0-4
		청소년인권 옹호 기구 필요성	45	53	
		참여권 보장 수준	46	54	4-6-0-5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 표본설계

1. 조사실시의 목적과 필요성
2. 모집단
3. 표본설계
4. 표본응답률 및 대체율

Ⅳ.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실태조사 표본설계

1. 조사실시의 목적과 필요성

본 실태조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그 변화양상을 추적 할 수 있는 장기적 횡단 자료의 수집을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정책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유도함으로 국제수준의 아동·청소년인권보장 환경 조성과 인권의식에 대한 긍정적 확산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이 중요 국가통계자료 구축 목적과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가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통계청승인을 2009년 6월24일에 취득할 수 있었다. 본 조사의 통계작성을 위해 승인된 승인번호는 Nr. 40201이다. 아래에는 본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및 표본설계 명세서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2. 모집단

1) 목표모집단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한정함.

2) 조사모집단

○ 이 조사의 조사모집단은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조사대상자로 함. 제주도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함.

3) 모집단 층화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 된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12개 시도별 학생수를 구분한 후에 각 시도의 학생 현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함.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통계틀,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와 부차모집단별 표본학생수는 각각 <표-Ⅳ-2-1>에서 <표-Ⅳ-2-4>까지 제시되어 있음.

<표 Ⅳ- 2- 1>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를 위한 통계틀

구분	모집단		모집단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 학년	초4	586,343	101,993	36,021	30,945	33,149	20,820	19,423	15,173	150,787	17,833	43,095	45,617	71,487
			(100)	17.4	6.1	5.3	5.7	3.6	3.3	2.6	25.7	3.0	7.3	7.8	12.2
		초5	604,803	105,217	37,952	31,544	34,013	21,848	20,375	15,914	154,070	18,530	44,935	47,650	72,755
			(100)	17.4	6.3	5.2	5.6	3.6	3.4	2.6	25.5	3.1	7.4	7.9	12.0
		초6	633,055	111,224	40,170	34,350	36,341	22,993	21,234	16,807	158,941	19,089	46,362	48,998	76,546
			(100)	17.6	6.3	5.4	5.7	3.6	3.4	2.7	25.1	3.0	7.3	7.7	12.1
중학교	중1-3 학년	중1	648,244	114,630	43,557	35,692	37,109	23,003	21,998	17,415	160,098	19,395	47,095	50,379	77,873
			(100)	17.7	6.7	5.5	5.7	3.5	3.4	2.7	24.7	3.0	7.3	7.8	12.0
		중2	668,278	119,529	45,339	37,601	38,768	23,937	22,716	18,125	163,239	19,796	47,831	51,730	79,667
			(100)	17.9	6.8	5.6	5.8	3.6	3.4	2.7	24.4	3.0	7.2	7.7	11.9
		중3	665,078	121,679	46,080	37,156	39,321	23,531	22,211	18,085	161,319	19,414	46,959	50,775	78,548
			(100)	18.3	6.9	5.6	5.9	3.5	3.3	2.7	24.3	2.9	7.1	7.6	11.8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	일반고 1-3 학년	일반고1	502,171	102,059	34,775	29,230	30,152	17,882	18,134	14,019	119,392	11,185	33,962	33,917	57,464
			(100)	20.3	6.9	5.8	6.0	3.6	3.6	2.8	23.8	2.2	6.8	6.8	11.4
		일반고2	495,493	103,144	34,994	29,194	30,179	17,392	18,052	14,040	114,726	10,909	33,008	33,514	56,341
			(100)	20.8	7.1	5.9	6.1	3.5	3.6	2.8	23.2	2.2	6.7	6.8	11.4
		일반고3	471,953	101,400	33,915	28,120	28,414	16,196	17,015	13,516	107,096	10,382	30,713	31,295	53,891
			(100)	21.5	7.2	6.0	6.0	3.4	3.6	2.9	22.7	2.2	6.5	6.6	11.4
	전문고 1-3 학년	전문고1	159,722	20,363	11,991	7,827	8,640	5,384	4,037	3,860	38,738	8,232	13,472	16,673	20,505
			(100)	12.7	7.5	4.9	5.4	3.4	2.5	2.4	24.3	5.2	8.4	10.4	12.8
		전문고2	158,017	20,377	12,459	7,977	8,530	5,161	3,792	3,600	38,917	8,152	12,667	16,225	20,160
			(100)	12.9	7.9	5.0	5.4	3.3	2.4	2.3	24.6	5.2	8.0	10.3	12.8
		전문고3	155,000	20,732	12,489	7,897	8,467	5,074	3,901	3,629	38,028	7,823	12,082	15,360	19,518
			(100)	13.4	8.1	5.1	5.5	3.3	2.5	2.3	24.5	5.0	7.8	9.9	12.6
합계	-	-	5,748,157	1,042,347	389,742	317,533	333,083	203,221	192,888	154,183	1,405,351	170,740	412,181	442,133	684,755

※ 2009년 교육통계연보에서 제시된 현황표에 기초하여 작성했음.

<표 Ⅳ- 2- 2> 시도별 조사모집단 층화비율에 의한 표본배분

구분	표본수		교급별 표본수 (제주도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867	151	53	46	49	31	29	22	223	26	64	67	106
			(100)	17.4	6.1	5.3	5.7	3.6	3.3	2.6	25.7	3.0	7.3	7.8	12.2
		초5	894	156	56	47	50	32	30	24	228	27	66	70	108
			(100)	17.4	6.3	5.2	5.6	3.6	3.4	2.6	25.5	3.1	7.4	7.9	12.0
		초6	936	164	59	51	54	34	31	25	235	28	69	72	113
			(100)	17.6	6.3	5.4	5.7	3.6	3.4	2.7	25.1	3.0	7.3	7.7	12.1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959	170	64	53	55	34	33	26	237	29	70	74	115
			(100)	17.7	6.7	5.5	5.7	3.5	3.4	2.7	24.7	3.0	7.3	7.8	12.0
		중2	988	177	67	56	57	35	34	27	241	29	71	76	118
			(100)	17.9	6.8	5.6	5.8	3.6	3.4	2.7	24.4	3.0	7.2	7.7	11.9
		중3	983	180	68	55	58	35	33	27	239	29	69	75	116
			(100)	18.3	6.9	5.6	5.9	3.5	3.3	2.7	24.3	2.9	7.1	7.6	11.8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	일반고 1-3학년 (2,055)	일반고1	743	151	51	43	45	26	27	21	177	17	50	50	85
			(100)	20.3	6.9	5.8	6.0	3.6	3.6	2.8	23.8	2.2	6.8	6.8	11.4
		일반고2	733	153	52	43	45	26	27	21	170	16	49	50	83
			(100)	20.8	7.1	5.9	6.1	3.5	3.6	2.8	23.2	2.2	6.7	6.8	11.4
		일반고3	698	150	50	42	42	24	25	20	158	15	45	46	80
			(100)	21.5	7.2	6.0	6.0	3.4	3.6	2.9	22.7	2.2	6.5	6.6	11.4
	전문고 1-3학년 (701)	전문고1	236	30	18	12	13	8	6	6	57	12	20	25	30
			(100)	12.7	7.5	4.9	5.4	3.4	2.5	2.4	24.3	5.2	8.4	10.4	12.8
		전문고2	234	30	18	12	13	8	6	5	58	12	19	24	30
			(100)	12.9	7.9	5.0	5.4	3.3	2.4	2.3	24.6	5.2	8.0	10.3	12.8
		전문고3	229	31	18	12	13	8	6	5	56	12	18	23	29
			(100)	13.4	8.1	5.1	5.5	3.3	2.5	2.3	24.5	5.0	7.8	9.9	12.6
합계	-	-	8,500	1,541	576	470	493	301	285	228	2,078	252	610	654	1,013

<표 Ⅳ- 2- 3>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교(학급)수

구분	표본수		교급별 학급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급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30	5	2	2	2	1	1	1	7	1	2	2	4
			(100)	16.7	6.7	6.7	6.7	3.3	3.3	3.3	23.3	3.3	6.7	6.7	13.3
		초5	31	5	2	2	2	1	1	1	7	1	2	3	4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초6	31	5	2	2	2	1	1	1	7	1	2	3	4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31	5	2	2	2	1	1	1	7	1	2	3	4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2	34	6	2	2	2	2	1	1	7	1	3	3	4
			(100)	17.6	5.9	5.9	5.9	5.9	2.9	2.9	20.6	2.9	8.8	8.8	11.8
		중3	32	6	2	2	2	1	1	1	7	1	2	3	4
			(100)	18.8	6.3	6.3	6.3	3.1	3.1	3.1	21.9	3.1	6.3	9.4	12.5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	일반고 1-3학년 (2,055)	일반고1	28	5	2	2	2	1	1	1	6	1	2	2	3
			(100)	17.9	7.1	7.1	7.1	3.6	3.6	3.6	21.4	3.6	7.1	7.1	10.7
		일반고2	27	5	2	2	2	1	1	1	5	1	2	2	3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일반고3	27	5	2	2	2	1	1	1	5	1	2	2	3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전문고 1-3학년 (701)	전문고1	13	1	1	1	1	1	1	1	2	1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고2	13	1	1	1	1	1	1	1	2	1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고3	13	1	1	1	1	1	1	1	2	1	1	1	1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합계	-	-	310	50	21	21	21	13	12	12	64	12	22	26	36

<표 Ⅳ- 2- 4> 부차모집단별 표본 학생수

구분	표본수		교급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및 비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초등학교	초4-6 학년 (2,809)	초4	1,050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70	140
			(100)	16.7	6.7	6.7	6.7	3.3	3.3	3.3	23.3	3.3	6.7	6.7	13.3
		초5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초6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학교	중1-3 학년 (2,968)	중1	1,085	175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6.1	6.5	6.5	6.5	3.2	3.2	3.2	22.6	3.2	6.5	9.7	12.9
		중2	1,190	210	70	70	70	70	35	35	245	35	105	105	140
			(100)	17.6	5.9	5.9	5.9	5.9	2.9	2.9	20.6	2.9	8.8	8.8	11.8
		중3	1,120	210	70	70	70	35	35	35	245	35	70	105	140
			(100)	18.8	6.3	6.3	6.3	3.1	3.1	3.1	21.9	3.1	6.3	9.4	12.5
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	일반고 1-3학년 (2,055)	일반고1	980	175	70	70	70	35	35	35	210	35	70	70	105
			(100)	17.9	7.1	7.1	7.1	3.6	3.6	3.6	21.4	3.6	7.1	7.1	10.7
		일반고2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일반고3	945	175	70	70	70	35	35	35	175	35	70	70	105
			(100)	18.5	7.4	7.4	7.4	3.7	3.7	3.7	18.5	3.7	7.4	7.4	11.1
	전문고 1-3학년 (701)	전문고1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고2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전문고3	455	35	35	35	35	35	35	35	70	35	35	35	35
			(100)	7.7	7.7	7.7	7.7	7.7	7.7	7.7	15.4	7.7	7.7	7.7	7.7
합계	-	-	10,850	1,750	735	735	735	455	420	420	2,240	420	770	910	1,260

3. 표본설계

1) 표본크기

○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국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자로 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 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함.

<표 Ⅳ- 3- 1> 표본크기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모집단</th><th>모집단수
(제주도 제외)</th><th colspan="2">모집단 합계
(제주도 제외)</th><th colspan="2">목표표본수</th></tr>
<tr><td rowspan="3">초등학교</td><td rowspan="3">초4-6
학년</td><td>초4</td><td>586,343</td><td colspan="2" rowspan="3">1,824,201
(31.7%)</td><td colspan="2" rowspan="3">2,698</td></tr>
<tr><td>초5</td><td>604,803</td></tr>
<tr><td>초6</td><td>633,055</td></tr>
<tr><td rowspan="3">중학교</td><td rowspan="3">중1-3
학년</td><td>중1</td><td>648,244</td><td colspan="2" rowspan="3">1,981,600
(34.5%)</td><td colspan="2" rowspan="3">2,930</td></tr>
<tr><td>중2</td><td>668,278</td></tr>
<tr><td>중3</td><td>665,078</td></tr>
<tr><td rowspan="6">고등학교
(방통고,
산업체부설
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td><td rowspan="3">일반고
1-3
학년</td><td>일반고1</td><td>502,171</td><td rowspan="3">1,469,617
(25.6%)</td><td rowspan="6">1,942,356
(33.8%)</td><td>2,173</td><td rowspan="6">2,872</td></tr>
<tr><td>일반고2</td><td>495,493</td></tr>
<tr><td>일반고3</td><td>471,953</td></tr>
<tr><td rowspan="3">전문고
1-3
학년</td><td>전문고1</td><td>159,722</td><td rowspan="3">472,739
(8.2%)</td><td rowspan="3">699</td></tr>
<tr><td>전문고2</td><td>158,017</td></tr>
<tr><td>전문고3</td><td>155,000</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 colspan="3">5,748,157
(100.0%)</td><td colspan="2">8,500
(100.0%)</td></tr>
</table>

○ 표본크기의 결정 및 배분

(1)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의 부분 과제이며, 전체 통합조사의 측면에서 목표 표본크기는 8,500(중·고등학교는 5,802임)으로 결정되었음.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1.63%P(중·고등학교는 ±1.98%P)임 (다음 '3) 모수추정' 참조).

(2) 각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수(학생수)를 할당함 (<표 Ⅳ-2-2> 및 <표 Ⅳ-3-1> 참조).

(3)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목표 학급수를 할당함 (<표 Ⅳ-2-3> 참조). 학급: 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

(4)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 하에서 각 부차모집단별 예상되는 최종 학생수는 <표 Ⅳ-2-4>와 같음. 학생: 이차추출단위 (SSU; secondary sampling unit). 따라서 예상되는 최종 표본크기는 10,815(중·고등학교는 7,630임)이며, 이 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1.45%P(중·고등학교는 ±1.72%P)임(다음 '3) 모수추정' 참조).

2) 표집방법

(1) 초등학교 표본추출(안)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층화

② 층화지역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③ 할당표본수에 따른 추출학교수 결정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학교수 결정

④ 층화지역별 할당된 학교추출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별로 초등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누적 → 12개 지역별 초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

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학교추출순으로 첫 번째는 4학년 → 두 번째는 5학년 → 세 번째는 6학년 → 네 번째는 다시 4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2) 중학교 표본추출(안)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 층화

② 층화지역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③ 할당표본수에 따른 추출학교수 결정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학교수 결정

④ 층화지역별 할당된 학교추출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12개 지역별로 중학교 리스트 정렬 →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생수 누적 → 12개 지역별 중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학교추출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3) 고등학교 표본추출(안)

①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지역별×2개(일반고·전문고) 계열별 층화(two way : 24개 sector)

② 층화sector별 학생수 비례 목표표본수 할당

③ 할당표본수에 따른 추출학교수 결정

☞ 1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후 1개 학급(최종 표집단위) 전원조사 원칙이므로, 층화sector별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기준으로 추출학교수 결정

④ 층화sector별 할당된 학교추출

☞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층화 sector별로 고등학교 리스트 정렬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학생수 누적 → 층화 sector별 고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눠 추출간격 결정 → 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 제외

⑤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 추출

☞ 학교추출순으로 첫 번째는 1학년 → 두 번째는 2학년 → 세 번째는 3학년 → 네 번째는 다시 1학년을 뽑는 방식으로 추출

⑥ 추출된 1개 학년의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

※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층화sector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

☞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 리스트에서 추출된 학교의 아래, 위, 아래, 위 학교 순으로 대체

3) 모수추정

(1)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cdots, H$).
  학교구분×지역의 구분에 따른 번호.
  학교구분 : 4개(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전문고 고등학교).
  지역 : 12개(서울시/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경기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경상도)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c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cdots, m_{hi}$).
  m_{hi} : h번째 층의 i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즉, Y_{hij}는 h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의 j번째 학생에 대한 관측치임.

• w_{hij} : 표본 가중치 (표본추출확률의 역수)

- h번째 층, i번째 집락, j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w_{hij} = (\pi_{hi}\pi_{j|hi})^{-1}$
- π_{hi} = h번째 층에서 i번째 집락의 추출확률이며, 이는 집락 내의 학생수에 비례함.
- $\pi_{j|hi}$ = h번째 층의 i번째 집락에서 j번째 학생의 추출확률.

• $n = \sum_{h=1}^{H}\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overline{Y} = \left(\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text{ if } Y_{hij} = c_k \\ 0, \text{ 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c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4) 분산의 추정

• $\hat{V}(\overline{Y}) = \sum_{h=1}^{H} \hat{V}_h(\overline{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의 총 집락의 수

- f_h : h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h > 1$일 때,

$$\hat{V}_h(\overline{Y}) = \frac{n_h(1-f_h)}{n_h-1}\sum_{i=1}^{n_h}(e_{hi}. - \overline{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right) \Big/ w...$$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right) \Big/ n_h$$

- $n_h = 1$일 때,

$$\hat{V}_h(\overline{Y}) = \begin{cases} \text{missing}, &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2,...,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q h' \leqq H \end{cases}$$

(5)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StdErr $(\overline{Y}) = \sqrt{\hat{V}(\overline{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StdErr $(\overline{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α=0.05) $z_{\alpha/2}$=1.96임.

(6) 목표 오차한계(표본오차)

- 집락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 목표: N=5,800,890(3,972,764), n=8,500(5,802) ⇒ e=±1.06%P(±1.29%P)
  - 최종: N=5,800,890(3,972,764), n=10,850(7,630) ⇒ e=±0.94%P(±1.12%P)
- 대략 M=35(집락크기), ρ=0.04(급내상관계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경우)로 간주하여, $deff = 1 + (M-1)\rho$=2.36을 단순임의추출에 대한 집락추출의 설계효과로 하고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로 할 때,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times \sqrt{deff}$$

- 목표: N=5,800,890(3,972,764), n=8,500(5,802)

  $\Rightarrow$ e=±1.63%P(±1.98%P)

- 최종: N=5,800,890(3,972,764), n=10,850(7,630)

  $\Rightarrow$ e=±1.45%P(±1.72%P)

(7) 오차한계

○ 모수추정 방식이 동일하여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였으며, 모집단 총계 및 조사 표본수를 적용함.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 N=5,800,890, n=9,591 $\Rightarrow$ e=±1.54%P

4) 무응답의 처리

○ 단위 무응답

- 단위 무응답: 질문지 전체를 무응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표본의 교체를 통하여 이를 해결함.
- 본 조사에서는 단위 무응답이 발생하면 초기 표본에 있는 결측 단위를 초기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층 내의 다른 단위로 교체하여 처음 표본의 크기와 같게 해줌. 특히 단위 무응답에 대한 표본 단위의 교체 시 랜덤하게 초기 표본과 동일한 자료수집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하여 이미 표본에 있는 다른 단위와 유사한 것으로 교체되도록 함.

○ 항목 무응답

- 항목 무응답: 질문지의 특정 문항이나 항목을 무응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유사한 특성의 값을 대체시키는

것이 통계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

4. 표본응답률 및 대체율

1) 표본응답률

○ 부차모집단별 예상되는 최종 학생수(<표 Ⅳ-2-4>) 대비 표본응답률은 다음과 같음(<표 Ⅳ-4-1>).

2) 표본대체율

○ 본 조사는 2010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 조사의 일환으로 기간의 단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표본 및 대체표본의 학교를 모두 컨택하여 조사에 응하는 학교를 우선 조사함. 따라서 표본대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표 Ⅳ-4-2>).

<표 Ⅳ- 4- 1> 2010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표본응답률

교급	학년	총계	회수율	시도별·학년별 학생수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총계		9,591	88.4%	1,567	607	678	606	402	376	341	2,115	310	682	744	1163
초등학교	초4	874	83.2%	149	57	58	47	34	28	25	218	36	59	50	113
	초5	832	76.7%	143	48	63	52	8	31	27	202	23	62	76	97
	초6	875	80.6%	137	56	50	56	26	24	28	202	31	57	86	122
	소계	2,581	80.2%	429	161	171	155	68	83	80	622	90	178	212	332
중학교	중1	1,035	95.4%	154	60	77	76	34	40	25	243	31	72	91	132
	중2	1,105	92.9%	200	55	80	30	66	35	29	251	35	97	93	134
	중3	1,049	93.7%	193	62	71	71	33	31	27	243	28	64	88	138
	소계	3,189	93.9%	547	177	228	177	133	106	81	737	94	233	272	404
고등학교	일반고1	919	93.8%	152	41	69	72	36	29	34	206	27	70	60	123
	일반고2	932	98.6%	182	74	66	66	39	34	37	183	26	67	68	90
	일반고3	899	95.1%	169	77	60	56	31	33	36	184	17	60	48	128
	전문고1	350	76.9%	29	26	29	28	30	31	25	46	24	25	29	28
	전문고2	379	83.3%	29	28	28	24	37	30	30	71	16	33	24	29
	전문고3	342	75.2%	30	23	27	28	28	30	18	66	16	16	31	29
	소계	3,821	90.2%	591	269	279	274	201	187	180	756	126	271	260	427

<표 Ⅳ- 4- 2> 2010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표본대체율

교급		표본	총계	시도별·학년별 표본대체율 (제주도 제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총계		원표본율	45.9	42.2	40.2	60.8	40.6	81.8	56.1	22.0	40.3	37.7	34.8	45.0	58.4
		표본대체율	54.1	57.8	59.8	39.2	59.4	18.2	43.9	78.0	59.7	62.3	65.2	55.0	41.6
초등학교		원표본율	44.3	27.3	33.5	83.0	16.8	100.0	62.7	33.8	32.3	100.0	34.8	48.1	60.8
		표본대체율	55.7	72.7	66.5	17.0	83.2	0.0	37.3	66.3	67.7	0.0	65.2	51.9	39.2
중학교		원표본율	43.7	43.0	28.2	50.9	47.5	100.0	62.3	0.0	51.4	0.0	15.5	46.3	41.8
		표본대체율	56.3	57.0	71.8	49.1	52.5	0.0	37.7	100.0	48.6	100.0	84.5	53.7	58.2
고등학교	일반고	원표본율	50.6	55.9	46.4	49.7	43.3	66.0	65.6	0.0	37.0	38.6	53.8	47.2	81.8
		표본대체율	49.4	44.1	53.6	50.3	56.7	34.0	34.4	100.0	63.0	61.4	46.2	52.8	18.2
	전문고	원표본율	44.0	33.0	66.2	67.9	65.0	61.1	33.0	65.8	32.8	0.0	44.6	28.6	33.7
		표본대체율	56.0	67.0	33.8	32.1	35.0	38.9	67.0	34.2	67.2	100.0	55.4	71.4	66.3
	소계	원표본율	48.7	52.5	52.0	55.2	49.6	63.7	49.7	26.7	36.0	21.4	51.3	41.2	72.1
		표본대체율	51.3	47.5	48.0	44.8	50.4	36.3	50.3	73.3	64.0	78.6	48.7	58.8	27.9

Ⅴ. 아동 · 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1.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2. 아동·청소년 발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V. 아동·청소년 발달권·참여권 실태조사결과

1.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결과 분석방법

실태조사 결과는 주요 측정변수(세부지표항목)에 대한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개인의 사회·환경적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졌다. 중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학교 급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 경제수준 등이었으며 이들 변인별 집단 수준에 따른 측정변수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태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및 참여권 지표를 구성하는 관심영역과 세부지표항목별 설문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발달권·참여권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된 주요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연령층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층으로 나누어 실태결과를 분석·기술하였다. 각 세부지표항목에 대한 기술은 항목의 시의성에 부합되는 유관변인 중심의 기술을 원칙으로 하되, 비록 유관변인 이외에 다른 변인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어도 해당 항목과의 중요성(relevance)이 적으면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 통계적 분석 방법의 틀로는 주로 집단 수준 간 빈도 값의 차이에 기초한 교차분석이나 집단 간 평균비교 방식을 이용한 t검증이나 F검증을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생들이다. 조사의 표본크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초등학생(4～6학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1～3학년)과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자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

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배분과정은 시도별 부차모집단별 비례배분에 의하여 목표 표본수(학생수)를 할당하였으며, 일차추출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를 학급단위로, 이차추출단위(SSU; secondary sampling unit)는 학생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였는데, 지역별(7개 광역시와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로 구분) 기준 이외에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별(일반계, 전문계)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재학생수 기준 인구비례(PPS)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학교의 각 학년에서 1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는 집락표집을 실시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학교별 조정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표본의 성격과 대표성이 문제가 되어 선정에서 제외하였다.《2009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기초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근거하여 추정된 목표표본은 N=8,500으로 예측되었지만, 비례배분한 부차모집단 내의 표본의 배분이 불충분할 수 있어 층화지역별 1개 학교 1개 학년 1개 학급 전원조사를 원칙으로 삼았기에 실제 조사를 위한 최종표본 수는 목표표본보다 많은 9,591명이었다. 조사를 위한 표집인원은 초등학교 92개교, 중학교 97개교, 고등학교 121개교(일반고 82개교, 전문고 39개교)에서 추출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집된 학생들의 성별, 교급별 분포는 아래에 제시된 <표 Ⅴ-1-1>에 기술되어 있다. 추가로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직업유무, 가정경제수준, 지역, 학업성적 및 기초생활수급 경험유무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한 분포현황도 <표 Ⅴ-1-2>에 기술되어 있다.

성별분포는 남자 아동·청소년은 4,881명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아동·청소년은 4,705명으로 49.1%였다. 교급에 따른 인원비율은 초등학생 26.9.4%, 중학생 33.2% 고등학생 39.9%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분포에서 아동은 15%만이 자신의 성적이 하위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한 반면 청소년은 34.6%가 하위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아동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학업성적이 중상위 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아동이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1.7%, 7.4%만이 하위 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중간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아동 70.7% 청소년 83.7%, 상위집단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8.1%와 8.6%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간층 이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청소년과 아동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연구에서 자신이 지각하는 경제수준인식과 기초생활수급경험 유무에서 청소년의 경우 두 배 이상, 아동의 경우 약 다섯 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가정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결과를 해석할 때 아동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학업성적변인에 의한 집단 간 비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표 Ⅴ- 1- 1> 조사대상자의 성별·학교급별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비율(%)
성별	남자	4,881	50.9
	여자	4,705	49.1
학교급별	초등학교	2,581	26.9
	중학교	3,189	33.2
	고등학교	3,821	39.9

<표 Ⅴ- 1-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성

구 분		아동		청소년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학업 성적	하	386	15.0	2,424	34.6
	중	1,187	46.0	2,720	38.8
	상	1,008	39.1	1,845	26.3
가족 구성	양부모	2,342	90.7	5,936	84.7
	한부모	216	8.4	889	12.7
	조손가정	23	0.9	90	1.3
경제 수준	하	43	1.7	521	7.4
	중	1,808	70.7	5,865	83.7
	상	724	28.1	605	8.6

2. 아동 · 청소년 발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1) 발달권 영역에서의 조사 개요

첫째, 인지적 발달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은 인지발달 기회와 인지능력 영역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능력은 중요 발달권 지표이지만 다른 아동·청소년 연구에서 중복 조사되는 경우가 많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발달기회와 관련된 지표항목만을 조사하였다. 인지발달기회와 관련된 개별지표로는 중퇴율, 학교등교거부이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하루 평균 학습시간 등이 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학업중도포기 이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학교수업진행 수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통해 해당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 결과를 분석했다. 인지적 발달기회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려는 이유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아동용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제외되었다.

둘째, 정서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은 정서발달환경과 정서안정영역이며. 각 세분관심영역은 다양한 개별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발달환경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아버지),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휴일을 보내는 방법,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가정, 친구, 학교 생활영역별 만족도, 고민 상담 대상, 고민거리의 유형별 우선 순위 및 부모·자녀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적 안정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을 본 조사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되었다. 우울감, 학업스트레스, 행복감, 자

* 전체 실태조사결과는 두번째 보고서(Vol.II)인 인권실태조사자료집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본장에서는 주요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만 제시함.

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고립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수준 등의 영역에서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셋째, 사회적 발달을 구성하는 세부관심영역은 사회성 발달 기회와 사회성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성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성 발달정도 혹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전략을 묻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발달지표 중 아동들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와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문항은 제외되었다.

먼저 아동 청소년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해 1~2명 혹은 3~4명 정도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 집단 간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친구 수에 대한 남자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다. 가족 구성유형과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데 양부모가정이고 집안이 잘 살수록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넷째,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교육경험유무 및 만족정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후자는 진로직업태도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적 발달의 경우 초등용으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설문문항을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발달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신체발달 기회가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평일 평균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인지능력과 신체적 능력 세부관심영역 지표는 중복 가능성이 있고 행정통계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기에 제외되었다.

2) 결과요약 및 시사점

발달권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각 발달단계의 과업수행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권리로 정의된다. 발달권은 발달이라고 하는 성장의 개념과 권리라고 하는 법적 개념의 결합으로, 발달권 실현의 보장을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과 개선이 요구되며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필요하다. 발달에 대한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제반 조건형성 및 촉진과 더불어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 간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자질에 따른 세분화된 발달과업을 상정, 그에 따른 적절한 권리의 보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권 영역에서의 실태조사는 발달의 과업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은 인지, 정서, 사회, 직업, 그리고 신체적 영역으로 나뉘게 되며 실태조사 또한 이러한 구분에 의해 실시되었다.

첫째, 인지발달기회와 관련된 설문항목으로 학업중도포기 이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사교육 경험 유무와 효과성,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학교수업진행 수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 초·중·고 공통으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부가 싫어서라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남녀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성적이 낮은 집단 일수록 높았다. 대다수의 아동들이 학교수업이 이해하기 적당하거나 쉽다고 답

변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들의 경우 26%가 학교수업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답변하고 있다. 성적하위 집단이나 경제수준 하위집단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체 아동의 72%, 청소년의 63% 이상이 사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상응하여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80% 정도, 청소년은 63.5%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비율이 높았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73.2%는 학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지만,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8.5%, 경제적인 문제가 4.8%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집단 보다, 조손 및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경제수준 하위집단이 중간 및 상위 집단보다 학업포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둘째, 정서적 발달영역 중 정서발달환경은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아버지), 부모님과의 대화빈도(어머니), 학교선생님과의 대화빈도,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평균(하루기준),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지각, 휴일을 보내는 방법,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가정, 친구, 학교 생활영역별 만족도, 고민 상담대상, 고민거리의 유형별 우선 순위 및 부모·자녀관계 등의 지표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서적 안정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울감, 학업스트레스,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고립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척도등을 사용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가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 일수록 아버지와의 대화빈도가 높았다. 어머니의 대화빈도의 경우 상기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생님과의 대화 빈도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 일수록 그 빈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부모자녀관계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 수준이

상위집단에서 긍정적 관계정도가 높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 학교 및 친구에 대한 만족도에는 일정한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가족구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나 조손가정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변인의 경우 상위집단이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동과 청소년의 고민거리 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문제로 인한 고민이, 아동의 경우 여가시간이용에 대한 고민이 뒤따랐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민은 학업성적 하위집단에서 응답비율이 중간 및 상위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 일수록 보다 중간층이나 상위층의 청소년들보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관찰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민상담 대상에 대해 전체 아동의 43.5%가 어머니라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의 40.2.%가 동성친구라고 응답했으며, 어머니는 20.8%로 나타났다. 상담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아동 13%, 청소년은 13.9%였다.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전체 아동의 20.6%가 게임하기, 친구와 놀기 17.2%, 15.1%는 TV시청으로 응답했으며, 청소년의 25.5%가 게임하기, 19.9%는 TV시청, 친구와 놀기 13.3%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게임에 대한 응답비율이 여자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게임의 경우 가족구성 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양부모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루에 활용가능 한 여가시간에 대해 평균 1~2시간 정도 된다고 응답한 아동(28.1%)및 청소년(27.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그렇다 이상을 기준으로 아동은 57.7%, 청소년은 30.6%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39.4%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주변의 여가시설이 충분하다(그렇다를 기준으로)고 생각하고 있어 청소년의 11.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아동 및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과 정서적 고립감 정도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집단에

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구성 유형별 비교에서 양부모가정 아동의 우울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한부모, 조손가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조절감, 낙관성 수준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각의 변인에서 상위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위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유형에 따라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그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에 따라 하위, 중간, 상위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대해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행복감 수준은 중간집단과 하위집단 보다 높았으며, 가족구성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는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행복감보다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발달 중 사회성 발달 기회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아동·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동아리 가입 및 활동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성 발달정도는 갈등해결전략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에 대해 아동 청소년 모두 3~4명 정도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구성유형과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데, 양부모가정이고 집안이 잘 살수록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동아리 가입 및 활동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아동의 76%, 청소년의 55.3%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가입동아리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55.3%,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36.4%였으며, 사이버 및 학교 밖 동아리 활동에 대한 비율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단체에 가입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88.1%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는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청소년 활동의 효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았다.

갈등해결방식 중 협력전략('대체로 그렇다'를 기준으로)에 대해 아동의 72.2%, 청소년의 77.7%가, 양보전략은 아동의 57.7%, 청소년의 53.4%가, 회피전략은 아동의 58.5%, 청소년의 59.2%가, 지배전략에 대해 아동의 28%, 청소년의 29,5%가 해당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전략과 양보전략의 경우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서 사용 비율이 높았다.

넷째, 직업적 발달은 진로준비기회와 직업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교육경험유무 및 만족정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후자는 진로직업태도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진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59%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진로교육에 대해 전체 중·고등학생의 26.2%('그렇다'를 기준으로)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비교에서 학업성적 및 가족구성 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적 상위집단이 중간 및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보다 높았다.

진로 성숙도로 표현되는 진로직업 태도는 학업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이 중간집단 보다, 중간집단이 하위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와 조손가정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중학생의 45.5%는 인문계 진학, 추후결정이 28.8%, 자율형사립고 진학이 15.1%, 전문계 진학이 9.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3.4%는 보통수준의 대학진학, 상위권 대학진학은 33.1%로 나타나 전체 66.5%의 고등학생이 졸업 후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년제 대학진학과 졸업 후 취직의 경우 성적 및 가정경제수준 하위집단이나 중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신체적 발달 중 신체발달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실천 여부, 평일 평균수면시간,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일일평균 아동의 수면 시간의 경우 7~8시간(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는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일일 평균 수면시간 5~6은 31.6%로 가장 높았으며, 6~7시간은 30.2%로 그 뒤를 따랐다. 7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생의 응답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성적상위집단으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이 중간집단의 아동과 청소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았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에서 양부모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보다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가정경제수준 상위집단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중간집단과 하위집단에 보다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아동의 43.8%, 청소년의 19.3%가 일주일에 3~4회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신체적 안정, 양육환경의 적절성, 지적능력과 다른 능력들의 완전한 개발,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정책과제를 세분화하고 해당 시기의 정책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발달이 성장과정에서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고려된다면,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여가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향유가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교육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정내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존중 등을 포괄한다.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공간이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교사나 동교관계의 친밀감이나 결속력의 부족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중한 사교육과 학습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시간의 부족은 우리 아동·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인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인 교육의 권리가 실현되는 공간인 학교가 성장과 발달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창의성을 개발하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 의식변화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제도화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시작은 가정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 이를테면 빈곤 가족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오늘날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위주의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울증이나 자살, 사회적 고립감, 정서적 불안 등 발달권의 중요한 지표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고, 이 같은 요인은 주로 개성과 인성을 경시하는 현재의 입시중심의 교육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이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등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시체제는 상당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 시기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 그리고 현제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부터 그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3. 아동·청소년 참여권 실태조사결과 요약

청소년 참여권은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하나의 권리로 천명하고 국가와 세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이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듯이 청소년 참여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 등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6개 관심영역에 총 61개 문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 영역이다. 중·고등학생의 38.9%가 학교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직 미완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부모는 가정 중요사(초등 80.9%, 중·고등 72.5), 상급학교 선택(초등 82.9%, 중·고등 77.0%), 진로선택(초등 87.9%, 중·고 79.0%) 시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는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의견 존중도가 높았다.

학교에서 교육비 미납 정보, 징계대상 학생 정보, 개인 시험성적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에서 시험성적 공개가 많았고(초등 74.2%, 중·고등 59.8%), 교육비 미납 학생 공개(초등 40.2%, 중·고등 37.0%), 징계대상 학생 정보 공개(41.2%) 등도 40% 전후로 나타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인권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33.6%, 중·고등학생의 45.6%가 학교에서 개인 소지품 검사 경험이 있고 이 중 각각 47.1%와 77.1%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등교 후 휴대폰을 제출하는 경우도 초등학생 45.1%, 중·고등학생 62.1%로 나타났는데 개인 소지품 검

사 부당성에 대해 중·고등학생의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물품을 검사, 압수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만큼 합의된 타당한 목적하에 구성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사적취향의 표현으로 두발과 복장 규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의 15.1%, 중·고등학생의 80.7%가 두발 규제 경험이 있고, 그 중 각각 53.4%와 70.1%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복장 규제는 초등학생의 10.8%와 중·고등학생 68.4%가 경험이 있고 그 중 각각 60.7%와 70.5%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두발과 복장은 개인취향 표현권과도 관련되는 만큼 학교구성원 대상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인권친화적인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의견표현으로, 교지나 학교신문 제작 시 학생의 자율권 보장(초등 60.6%, 중·고등 48.9%)과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제시 가능(초등 77.2%, 중·고등 51.5%) 등에 대해 중·고등학생은 50% 전후의 응답률을 보여 학교에서의 의견표현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초등학생 16.8%, 중·고등학생의 24.5%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권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현행 교육법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으로, 지난 1년간 인터넷에 게시글 작성 경험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생 30.9%, 중·고등학생 68.7%였으며, 댓글 작성 경험은 초등학생 29.5%, 중·고등학생 35.5%로 나타나 특히, 중·고등학생이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표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 대중매체의 부정적 청소년상(像) 유포 등에 대해 초등학생은 40%선(46.3%, 48.1%, 43.4%), 중·고등학생은 70%선(73.0%, 77.2%, 70.6%)의 응답률을 보여 중·고등학생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이다. 학생회나 학급회 결정사항 인지도를 통해 자치조직 참여도를 알아본 결과, 인지도는 초등학생 58.2%, 중·고등학생 29.9%로 낮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 교내·외 동아리를 모두 허용하는 경우는 18.4%로 매우 낮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으로 토론(초등 48.3%, 중·고등 34.2%), 모임이나 까페 가입(초등 29.2%, 중·고등 31.0%),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초등 21.0%, 중·고등 11.3%), 서명운동(초등 14.4%, 중·고등 29.8%) 등 초등학생의 참여 경험이 중·고등학생 못지않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절반이 약간 넘는 51.4%의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네 번째, 정보접근권과 정보참여 영역이다.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성실하게 공지하는지, 학생이 학교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초등학생 응답률은 두 질문 모두 80%선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중·고등학생은 그보다 낮은 69.5%, 59.4%로 나타났다.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현황을 알아본 결과,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10~20%선으로 낮았는데, 그 중 초등학생에 대한 권리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은 43.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인권교육 경험은 초등학생 36.1%, 중·고등학생 26.5%로, 인권교육 필수 실시를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았다.

다섯 번째, 사회참여 및 참정권 영역이다. 사회참여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에 대해 초등학생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33.8%)'가, 중·고등학생은 '학교성적에 포함되기 때문(56.6%)가 1순위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점수화로 인한 부정적 단면을 보여주었다.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와 참여경험에 대해 초등학생의 50.5%, 중·고등학생의 64.3%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에 대한 홍보와 확산이 필요함을 제기해 주었다.

아동·청소년정책과 시설 설치·운영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

은 초등학생 각각 31.7%, 28.6%, 중·고등학생 각각 16.1%, 6.9%로 특히 중·고등학생이 정책사업 반영도에 회의적인 응답을 보였다.

학교에서의 참여 현황으로 학생회 운영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 중·고등학교 학생회 활동 시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5.2%,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50.5%, 중·고등학교 18.2%, 학생회 활동장소와 시간 보장의 경우는 초등학교 42.5%, 중·고등학교 18.1%, 학생회 임원 직선제 선출의 경우는 초등학교 80.8%, 중·고등학교 45.0% 등으로,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운영 시 학생 자율성 보장수준이나 민주화 및 활성화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65.0%, 중·고등학생 33.8%가 학교 규칙이나 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초등학생 17.8%, 중·고등학생 12.1%로 낮게 나타났다(발언권 없이 참여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각각 24.4%, 19.2%).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현황으로, 먼저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교실 선택권이 있다는 초등학생은 79.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추가교육 프로그램인만큼 선택권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교시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등 선택권이 있다는 중·고등학생은 36.6%에 불과했다.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결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초등학생은 73.5%로 비교적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은 51.4%로 절반 정도였다. 급식메뉴와 질에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60.5%, 중·고등학생 36.2%로 역시 중·고등학생이 낮게 나타나 각종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참정권과 관련하여 64.5%의 초등학생이 어른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고등학생의 37.4%가 선거연령 하향화(모두 선거에서 만 18세로 하향 21.9%,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지역 정치인만 만 18세로 하향 15.5%)에 동의하였고 '모르겠다'는 의견도 31.8%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 번째, 참여관련 인식 영역이다. 초등학생 65.2%, 중·고등학생 58.3%가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의

79.3%, 중·고등학생의 75.7%가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초등학생은 시간부족(40.7%)과 정보부족(40.3%)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고등학생은 정보부족(75.2%),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63.0%), 시간부족(57.5%) 등을 꼽아, '정보부족'이 참여의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은 부모협조(34.9%)와 사회인식 개선(21.7%), 정보제공(11.2%),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10.8%) 순으로, 중·고등학생은 사회인식 개선(37.6%), 정보제공(14.4%), 그 외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개발, 입시위주 교육풍토 개선, 학교 협조 등이 10%대의 유사한 응답률을 보여 '참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정보제공'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및 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예: 아동·청소년인권센터)에 대해 초등학생의 81.0%, 중·고등학생 7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참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생 28.9%, 중·고등학생 18.0%만이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각 45.8%, 36.0%로 높게 나타나 참여에 대한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은 낮았으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낮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신체의 자유, 사적취향의 표현 등에 있어 아동·청소년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 인권은 유보되는 측면이 있었고, 미성숙하고 무능력하며 잠재적 문제집단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미흡하였는데, 학내 매체, 학생회, 동아리 등 의견표현 통로나 자치모임 운영의 민주성과 활성도, 학생 자율성 보장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 반영 수준도 낮았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결정 시 학생의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아동·청소년정책과 시설 설치·운영

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이 사회참여의 하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로 '학교성적 반영'을 1순위로 꼽은 것도 시사적이다. 참여의 주요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정책 홍보자료와 인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에 필수적인 인권교육 실시 정도도 미흡하였다.

다행히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꼽힌 '시간부족'과 '정보부족', '사회의 편견' 등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아동·청소년인권센터와 같은 인권 옹호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문항들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꽤 높은 것을 볼 때, 아동·청소년 스스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권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또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권향유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면과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참여기구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역량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과 인권교육 실시, 이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인권센터와 같은 기관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늘 언급되는 시간부족과 입시위주 교육풍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 존재의 변화된 위상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전향적인 관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Ⅵ. 아동 · 청소년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1. 아동의 발달권 · 참여권 정책방안
2. 청소년의 발달권 · 참여권 정책방안

Ⅵ.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참여권 정책방안

1. 아동의 발달권·참여권 정책 방안

아동기는 인간발달의 한 과정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발달적 존재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성장할 것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으로 적시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성인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자로 규정하고 아동의 역량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촉구하였다. 이는 아동기의 발달양상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수동적 존재이고 성인기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Unicef, 2005)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국가들은 2002년 27회 아동특별총회에서 제12조 즉, 아동참여의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아동의견의 개진과 존중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여전히 오래된 관행과 태도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김영지, 2010).

아동의 역량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의 아동정책이나 부모의 아동양육이 아동의 발달 특성과 발달적 역량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발달적 손상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해 준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아동에게 마련해 주어야 이들이 갖고 있는 발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환경적 요소가 아동의 잠재적 발달 가능성을 위협하는가? 아동의 역량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으려면 어느 수준의 보호가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동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아동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Unicef(2005)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려면 아동을 발달적 존재, 참여적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절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참여와 관련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환경을 짚어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모든 아동에게 실행할 수 있을 지의 방안을 모색한다. 아동의 발달과 참여를 일상적인 삶과 각종 생활의 장, 다양한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 환경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과 관련된 우리나의 아동정책 환경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 있다.

(1)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미흡한 이행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2008년 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중 3,4차 통합 국가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체 예산대비 아동예산 비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관련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16.21%이지만 이 예산항목을 제외한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합친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0.007%에 불과하다.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예산의 0.001%이다. 유럽보육위원회((ECNC)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GDP대비

1%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47%(육아정책개발센터, 2008)에 불과하다(황옥경, 2009).

3,4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공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공교육비 부담을 늘려왔다.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은 2004년부터 전면 실시되었고 2008년부터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교육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2004년 7% 수준(12만 4,000천명)이었던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을 2008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10% 수준(17만 5,000천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육재정 공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08).

한편으로 200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88.8%, 중학생 74.6%, 고등학생 55%가 학원 등 사교육을 받고 있어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8).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법과 정책이 아동권리 중 가장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생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된 것은 아동참여의 발전적 변화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0조의 '보호조치 시 아동의 의사 존중'의 경우처럼 아동참여는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과정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의사를 청취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황옥경, 2009).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아동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입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아동의견 존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초·중등교육 교과과정의 운영규칙과 10대 청소년이 만든 인터넷게시판이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위원회는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학교운영규칙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표 Ⅵ-1-1>참조).

<표 Ⅵ- 1-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및 과제

Cluster	2차 권고사항	이행상황
일반 이행조치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관련 예산의 증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통계 수집체계가 미비함.	·매년 5월 '청소년 통계' ·아동권리지표 개발
아동의 정의	·남녀초혼 연령차이 동일화 (민법의 혼인적령의 남녀차이)	·2007년 11월 민법개정을 통해 혼인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
일반원칙	·아동견해존중을 위해 관련법률 제 개정 및 제도개선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 시, 아동의 의사 존중 (2004년 개정)
	·부모, 교육자, 사회일반 등을 대상으로 아동참여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제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6조 권리교육과 홍보 조항 2005년 신설되었음
	·징계과정에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증진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생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이 기회 부여하도록 명시함.

기초보건과 복지	·저소득층 대상 무료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의료급여 실시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학교 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비율을 100% 늘이려고 추진 중
교육	·공교육수준 향상/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2007년 학교 급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410.1만원, 중학교 445.4만원, 고등학교 592.3만원 ·2004년 2월에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관련 기관들의 아동 참여신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체계적이지 않다. 아동의 참여는 주로 아동관련 기관들의 아동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연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된 경우는 거의 없다(황옥경, 2010). 월드비전의 각 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타의 권리위원들의 모니터링 활동이 있지만 이 역시 상시수준의 체계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안동현, 2009). 보건사회연구원산하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옴부즈키즈는 아동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경우이지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아동기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기는 인간발달과정 중에서도 발달이 가장 빠르고 삶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아동기 발달적 손상은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책 대상자로서 아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은 매우 취약하다. 저출산의 파고에 아동 개개인의 역량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는

근래조차도 아동정책은 정책개발 및 실행의 핵심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업무의 통합과 분할과정에서 아동정책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을 생각해 볼 때, 전체 아동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도권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회적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하다. 더더구나 아동의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동이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정치적인 힘이 부족하여 아동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자조하는 현실은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의 현주소이자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기·황옥경·송미령·김지인, 2008).

우리나라 아동정책 속에서 아동은 영유아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 어느 정책 대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존재이다. 따라서 보육과 유아교육에 집중된 영유아 정책과 문제행동의 해결에 집중된 청소년기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어 왔다. 아동은 완전한 성인에 의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보육대상도 못 되었고, 행동문제의 소인을 갖고는 있지만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청소년에 비해 덜한 것으로 비추어 지면서 이들의 행동, 정서상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도 못하였다(황옥경, 2009).

(3) 아동참여에 대한 인식 결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기관, 법정, 행정당국, 입법기관이 아동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하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활동 과정에 여러 단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procedural right)와 유사하다. 아동권리협약은 회원국이 이런 활동을 책임지는 자들이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는 의무적이다(아동권리위원회, 2009. 김영지 2010년 재인

용).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있다. 심리학적, 생물학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아동에 대한 인식은 대다수 국가가 아동의 문화적 세계 즉 놀이나 친구관계 등으로 제한된 영역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을 성인과는 다른 존재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아동이 성인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자신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 그리고 자율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사회에서 조차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 때문이다. 이것은 아동의 자율성을 개발할 기회를 감소시키며 이런 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은 자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이재연·황옥경·박은미·이은주·강현아, 2008).

(4) 아동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취약함

2008은 아동청소년 담당 정부부처의 통합논의로 아동정책이 표류해 있었다. 결국 2009년 아동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 통합되었으나, 통합 1년 만인 2010년 3월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아동업무만 보건보지부에 남게 되어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터는 다시 분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정책은 더 이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래 2003년 보건복지부에 아동정책과가 신설되기 까지 아동 전담 정부부처가 부재하였다. 아동업무는 1970년대까지는 '부녀아동국'의 '아동과'가 담당하였으며, 1980년대는 '아동복지과'가 있었으나 영유아 보육법의 실시 이후 보육사업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몇 년간 '보육아동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8년부터 아동복지업무와 보육업무가 통합되어 '아동보건복지과'로 개편되었고, 아동복지 업무와 보육업무가 분리되면서 2002년 사회복지정책실 산하로 '가정·아동복지과'와 '보육과'로 분리 개편되었다. 보육업

무의 여성부 이관과 맞물려 2003년부터 현재의 아동정책과가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황옥경, 2005).

2010년 현재 보건복지부 직제를 보면 인구아동정책관 산하부서로 아동복지과와 아동권리과 두 개과가 실제적인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이다. 2009년 우리나라 총인구인 48,746천 명 중 0~18세까지의 아동인구는 10,902천명으로 우리나라 아동인구가 전체인구의 22.4%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정부구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교육부 전신으로 2010년 5월까지 상존해 있던 아동, 학교, 가족부가 6개국 즉 아동과 가족(Children and Families) 학교(Schools), 청소년(Young People), 의사소통(Comunications), 협조체계구축 서비스(Corporate Services), 법적관리(Legal Director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직원이 4,000명 정도이었던 것을 볼 때(황옥경, 2009),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부서와 인력 수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담당 정부부처가 얼마나 취약한 지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국가기구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책연구기관이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권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의 보건과 복지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으며 아동을 전담하는 연구부서가 없다. 육아정책개발연구소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연구대상이 미취학아동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2)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국가 아동정책과 아동지표의 부재

2007년까지 아동정책체계는 3개 대책과 총 154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Ⅵ-1-2>). 국무조정실이 2002년 5월 '어린이 보호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종합계획은 어린이 권리 증진,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어린이 안전강화,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어린이 보호, 어린이 교육, 육성 등 5

개 중점 분야별 4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조정실 안전관개 개선기획단은 2003년 6월 7대 분야 58개 과제의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빈부격차, 차별시정 위워회에서 2004년 7월 수립한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은 6개 과제, 45개 사업이 계획, 추진되었다(황옥경, 2009).

<표 Ⅵ- 1- 2> 2008년까지의 아동정책 체계

대 책	추진과제
어린이 보호・육성 대책	1. 어린이 권리영역(7) 2. 어린이보건복지서비스지원(8) 3.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5) 4. 어린이 교육・육성(9) 5. 아동관련 국제협약(3)
어린이 안전 대책	1. 교통안전(16) 2. 익사사고 대책(5) 3. 추락사고, 화재・약물・용품 등 사고 대책(16) 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28) 5. 아동학대 및 폭력, 미아찾기, 불량식품 방지 대책(11)
빈곤아동・청소년 대책	1.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8) 2. 빈곤아동・청소년 건강 성장 보장(10) 3. 균등교육・보육기회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8) 4.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5) 5.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내실화(6) 6.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9)

이후 3대 아동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는 중장기 아동정책(보건복지부, 2008)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대 정책을 포괄하는 보다 발전적인 아동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단행하였으나, 이 시기가 아동과 청소년 담당부처의 조정과정과 겹쳐 연구성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결국 2009년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2010

년 3월 다시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아동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아동특총에서 결의된 국가아동행동계획을 유엔에 보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08년 이후 국가가 제시하는 아동정책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그동안 촉구되어 왔다. 국가 아동정책의 목표와 세부 실행지표가 공표되어야 한다(황옥경, 2009).

국가가 제시하는 아동발달 비젼을 공공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동발달 목표가 지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정책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성과지표는 여전히 취약하다. 2008년 정부가 제출한 3, 4차 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3, 4차 통합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의 정책성과를 제시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보고 내용은 정책실행의 목표와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조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의 성과지표는 장단기 포함하여 11개에 불과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는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각 지표에 대한 기준선을 알 수 있는 통계의 산출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황옥경, 2009). 이런 맥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전문 분야의 통계수집 체계가 미미함”을 지적하고 “통계 수집 제도 마련 및 통계를 활용한 아동정책의 수립,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Every Child Matters:Change for Children*』은 아동과 청소년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5가지 구체적인 국가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건강하기 (Be Healthy)’, ‘안전하게 생활하기(Stay Safe)’, ‘즐겁게 배우기(Enjoy and Achieve)’,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Make a Positive Contribution)’, ‘경제적인 역량 갖추기 (Achieve Economic Well-being)’로 아동과 청소년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와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목표에 대해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웨

스트민스터시의 경우 '즐겁게 배우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2) 정책의 다양성 부족 및 정부부처 간 산발적인 정책 시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이나 아동정책은 아동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소극적인 환경에 개입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미래의 주인공(becoming)'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 현재 한 사람(being)이자 한 시민으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아동정책의 효율성 문제와 인간 소외의 문제 그리고 아동정채의 편협성을 야기했다(이재연·황옥경·이은주, 2008).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여전히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 잔여적 대책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윤혜미, 2002; 이태수, 2001; 박정란·서홍란, 2001; 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5)을 받아왔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주 관심이 요보호 아동의 보호에만 치중해 왔으며, 이러한 소극적 방향 설정만으로도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올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의 증대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아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웨스트민스터시의 성과지표 중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여름학기까지 14세 아동의 77%가 영어 과목 핵심단계 3에서 5+ 수준을 달성함. 수학과목에서는 77%의 아동이, 과학 과목에서는 73%의 아동이 이 같은 수준을 달성함.
2. 2009년 여름까지 16세 아동의 55%가 GCSE에서 5개 이상 A* -C 등급을 받음.
3. 2008/09까지 보호관리 종료 시 LAC(보호관리아동)중 80%가 최소 1개의 A*-G 등급을 받음.
4. 중등학교 결성은 2008년까지 전반적으로 6.5% 감소함.
5. 2008/09까지 수업일수 25일 이상 결석하는 LAC(보호관리아동)의 수는 10% 미만임.
6. 정학 및 퇴학률은 2007년까지 10% 감소함(2005년도 기준).
7.. 2008/09까지 웨스트민스터 초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학생들 중 87%가 중등학교로 진학함.
8. 2008/09까지 8개월 이상 언어치료(SLT)진단을 기다리는 초등학생은 없도록 함.
9. 2008/09까지 SEN(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 need))의 93%가 18주 이내로 완료됨.
10. 2008/09까지 유년기 유아교육 환경의 100%가 전공자들로부터 (외견·정보·제안 등을) 제공받음.

현 시점에서는 종래의 요보호 아동 중심의 아동정책에서의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요구를 지닌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아동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동은 그들의 부모자녀관계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ldren's Society, 2009).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아동양육 지원 책자의 공급, 애착발달 등과 같은 정책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수인 친구관계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또래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학교평가 등의 아동정책이 없다. 놀이시간 및 안전한 놀이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아동기 놀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아동 삶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놀이를 국가정책화해서 발달시켜나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Play council, 2008; DCSF, 2008)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편,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정책이 부처간 산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를 테면 1세아 양육수당, 조손가족의 자녀 5만원의 양육수당, 급식 지원 등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분산 실행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지원에 대해 각기 다른 전달체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는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양 만큼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중복수혜의 문제 또한 있다.

(3) 아동기에 대한 저조한 투자: 부족한 예산

아동문제를 논할 때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는 언제나 거론되는 주된 논의의 주제이다. 아동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GDP대비 0.01%에 불과하다. 정부 전체예산에서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예산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이며 선진국의 1/7~1/100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도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약 8,800원*이며, 아동아 및 가족대상 지출은 공

공사회지출 대비 1.7%로 나타나 북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1/10수준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수준이다(이재연, 2010).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에 대한 예산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이 염려된다. 2005년도부터 아동복지관련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이 일부 혹은 전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재정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에 따라 동일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상이한 양과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출산장려금 지금, 셋째 자녀아 지원 등이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산상의 한계와 인력배치의 문제는 아동정책 개발 및 실행의 한계를 가져온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한 조기개입 기반 마련, 아동통합서비스 체제 구축,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의료보호의 확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수 확대 등의 요청은 언제나 인력과 예산상의 고려로 인해 정책으로 진화하지 못하였다.

현 아동정책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 예산분석이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효율성,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관련 연구에서는 예산이라는 방대한 작업의 어려움 상, 아동관련 예산의 분석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종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관련 예산의 규모나 외국과의 아동복지비의 비교정도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아동에게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아동정책과 국가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가 되었다. 이는 아동관련 정책을 관련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이승기 외 2008).

---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예산에 국한 된 것으로 지방이양사업과 타부처 아동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 입양기관 일부사업(입양기관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일부사업(지방가정위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부사업(지방·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아동시설 운영 일부사업(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양육지원 전체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 전체사업, 아동급식지원 전체사업, 결연기관운영 전체사업, 퇴소아동정착금 전체사업.

아동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주요한 국가투자의 대상이다. 여기서 투자는 아동의 발달을 위한 총체적인 재정지원의 의미로서 1962년부터 실시한 Perry Preschool 연구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 $1당 $16.14의 환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시카고 Child-Parent Centers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 $1당 $7.14의 투자 환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영유아기에 대한 집중투자가 미래사회의 경제적 안정성 및 빈곤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보고들은 선진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 각국은 개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황옥경, 2010).

2010년 영국의 DCSF(2010)의 보고에 따르면 6세부터 15세까지 1인당 아동에게 소요되는 국가비용은 153, 687파운드인데 비해 0세 영아부터 15세까지는 42,243파운드에 불과 함을 발견하였다. 교육, 의료, 레져 등 아동기 투자비용이 높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의 연간수입이 상승하였다. 특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수입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국가경제상태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DCSF, 2010).

(4) 위기개입 위주의 아동정책: 아동참여의 소외

현행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위기개입 위주의 선별적, 잔여적 성격이 현저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 참여를 신장시킬 만한 정책은 거의 없다. 가족구성과 경제수준에 따라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행복감, 그리고 생활만족도 등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신체발달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발달검사 등이 충실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제도도 검사결과의 사후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청력검사 등 아동의 발달이상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검사가 제외되어 있어 그 실행이 얼마나 실

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책의 선택과 집중, 다양성 간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영향 평가 시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황옥경, 2009).

영국정부는 건강정책을 통해서 역량 있는 아동청소년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빈곤문제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건강서비스의 불평등 해소이다. 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 (2004)은 아동과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이 최상의 삶을 제공받고 그들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서비스는 장애아동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등이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7년 12월 영국정부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아동, 학교,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아동건강전략(child health strategy)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있는 정책은 더욱 취약하다. 아동의 참여에 대한 이와 같은 폭 넓은 해석은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제27회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결과 문서- 에 반영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의 가정, 학교, 지역 및 국가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겠다(para. 32, subpara 1)”고 약속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실행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한 일반논평 5번에서 “정부가 비정부기구나 인권기구 등의 중재를 통해서만 아니라 아동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08년 3, 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이 아동참여권에 대한 최근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이다.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5개국 인권실태 조사결과, 청소년 참여권 보장수준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중국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

(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영지 외, 2008).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이며 참여권 보장 수준이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황옥경과 이호균(2006)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참여요구는 강하게 나타났다.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3.0%에 이르렀다. 89.3%의 아동들은 지역사회나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개발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64.3%)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동들이 참여하기 원하는 영역은 보호 및 안전관련 영역이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관련 영역, 지역사회 개발 관련 영역 순이었다. 자신의 의견을 내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아동들은 아동참여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현행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그 동안 연구자들은 아동통합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민간의존도가 높은 아동보호서비스를 공적부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그동안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여러 연구(오정수 외, 2006; 이승기 외, 2008; 황옥경, 2007) 뿐 만 아니라 아동보호서비스 실천기관의 종사자들 간에도 제기되어 왔다. 이 두 가지 맥락의 논의를 근거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전달체계의 추진주체가 없다. 지방정부의 아동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보호아동 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민간전문기관과 아동관련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관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

스타트,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난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복지 업무를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의 혼란, 업무연계와 협력체계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오정수 외, 2005).

현행 아동복지 전달체계는 다양한 전달체계의 구심점이 되는 중심축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모든 과정의 추진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아동보호 서비스의 추진주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어떤 흐름으로 보호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지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추진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안별 지원요청은 각 사례에 대해 관련기관간의 책임의 분배를 통한 역할의 전문성과 집중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기관 간의 개별적인 협약체결 형태의 네트워킹은 철저하게 개별 센터의 역량에 달려있는 현실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사례관리(접수-욕구사정-통합서비스 제공-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단계적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즉 아동보호서비스의 추진주체는 공공성을 확보한 기관 즉 지방정부 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민간기관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입은 개인생활보호 및 부모의 권한과 책임 등과 맞물려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의 업무상 한계가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서비스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정보공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간의 통합서비스 즉 연계체계 구축을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통합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위험상황에 놓인 아동 즉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각 센터를 중심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만 신고·접수되는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한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다. 방임 아동이 처하는 위기는 신고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합서비스체계가 어떻게 확대,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족을 판별해내고 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서비스 개입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위험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해지면 아동보호서비스의 필수요건인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황옥경, 2002; 황옥경, 2009).

3)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정책 방안

앞에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향후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아동정책의 수립

국가차원의 아동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아동의 성장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아동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 정책은 한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반영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사회적 약자내지는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회의 주류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아동정책을 지향하며, 아동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사회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황옥경, 2009).

2008년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규모의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국가 아동정책의 목표와 세부 실행지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국가차원의 아동정책의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생활실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은 국가가 아동정책 수행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중앙정부의 아동정책의 비젼과 목표 및 하위 달성 지표들은 곧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아동정책의 틀 안에서 각 지역의 아동정책 실행지표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의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달성지표의 내용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로써 각 부처의 아동정책의 산발적 실행, 정책의 분절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되는 일관적이면서 체계적인 아동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아동정책 실천도 가능하다. 아동법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아동정책의 목표와 달성해야 할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아동정책 및 서비스를 실행, 평가하고 있는 영국의 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발달주기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0세부터 5세, 6-11세, 12-17세를 한 축으로 하고 각 발달주기를 망라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0-5세까지는 생의 초기경험의 동질성과 공평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건강 및 놀이 그리고 신체 및 예술활동 등과 관련된 정책이 있을 것이다. 6-11세까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12-17세까지는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및 자기성취와 진로지도, 성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영역별 발달과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아동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전 과정에 가족지원관련 정책

이 포함되어야 한다(황옥경, 2010).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영국은 정책수립의 모든 과정 및 실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영국 아동청소년 정책 10년 계획에서 명시되어 있다.

(2) 국가 아동지표 및 정책 성과지표의 확립

아동정책이 수립되면 각 정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아동지표와 이에 대한 성과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수준을 확인하고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지표를 선정하고 성취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한국의 아동지표(보건복지부, 2006)연구와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를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와 같이 아동연구 및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의 아동지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상태에 대한 단순 통계지표이며,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연구는 아동의 발달상태와 발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아동지표 연구는 기존 통계자료를 아동지표에 맞게 재생산, 해석한 자료이며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연구는 전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었다.

두 연구결과는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데 아쉽게도 이후 연구결과가 반영된 아동정책 수립이라는 후속조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두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지표 및 개별지표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다. 두 연구에서 산출된 자료로 국가아동지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연구의 연계가 가능할 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수집과 보다 효율적인 중장기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발 및 성과지표의 산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각 지방정부에도 요구된다.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정책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성과지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본요건이다.

(3) '아동참여' 에 대한 논의 공론화 및 체계화

아동이 관여하는 분야는 보건, 경제, 교육, 환경 등 폭이 넓으며 이런 분야들은 아동 개인뿐 아니라 아동 그룹들과 아동 전체에 관계된 분야들이다. 결과적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참여라는 개념을 폭 넓게 해석하여 아동 개인이나 특정 아동 그룹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절차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2의 32, 33, 34에 의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2항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에 대한 해석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규정이 아동에게 관련된 모든 사법적 절차,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아동양육권, 아동보호와 입양, 법을 어긴 아동, 신체적 심리적 폭력, 성적학대, 기타 범죄피해 아동, 보건의료(health care),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동반자 없는 아동(unaccompanied children), 난민요청 및 피난민 아동, 무력충돌 및 기타 비상사태의 희생자 등에 대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전형적인 행정절차에는 아동의 교육, 건강, 환경, 생활환경, 보호 등에 대한 의사결정까지도 포함된다.

의견표명권은 학대에 대한 아동의 고소나 학교 퇴학에 대한 아동의 호소 등과 같이 아동이 제기한 절차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과 같이 아동에게 관련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절차에도 적용된다. 회원국가는 사법, 행정 절차의 의사결정자들이 아동에게 아동의 의사가 고려되는 수준과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만들 법적 조치를 도입하도록 권고 받는다.

특히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은 효과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데 주목하고 사법, 행정 절차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적합

한 환경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동에게 친근한 정보, 자기변호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적절하게 훈련 받은 직원, 법정 디자인, 재판과 변호사들의 의복, 시야 가리개, 독립된 대기실 등을 제공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일반논평 12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의사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아동에게 자신에게 관련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아동에게 있으며, 특히 사법적, 행정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표명의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표현된 의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자기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표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환경은 일방적인 조사보다는 대화의 형식이어야 하고 아동을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기보다는 비밀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동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피드백을 통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가는 다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제12조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유보조항을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종사원, 시 공무원, 정부 공무원, 시설 담당자, 전통적 지도자 등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 대한 제12조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의 자기 의견표명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동의 의사가 법과 기관의 규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규정과 여러 장치에 의해 존중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규정과 장치들의 효과를 정

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리더와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통상적인 관념을 바꾸어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태도에 대항한다.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이혼과 별거 그리고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을 원가족에서 분리하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아동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는 소년사법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아동 범죄 피해자와 증인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공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사건에 대한 견해 및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아동의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무엇보다 아동이 학교 정책과 행동 지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급회의(class councils), 학생회의(student councils), 학교 이사회나 위원회의 학생 대표직 등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교육당국, 학교 혹은 교장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기 보다는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김영지(2010)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과정에 아동 참여(Get Ready for Geneva Project : 아동이 직접 작성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제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프리세션 회의 참석, 아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 미디어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운동), Young Equals(아동·청소년 연령차별 반대 캠페인), You've got the Right(인권훈련, 인권변호인단의 법률 자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가정내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였다.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가정 내 긍정적 훈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제12조는 구체적으로 아동이 아동에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

를 밝힐 권리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활동과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리에 관련이 있다. 제12조는 회원국에게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과 방법을 도입할 의무와 표출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지운다.

(4) 아동정책조정기구 활동 재개

아동이 관여하는 분야는 보건, 경제, 교육, 환경 등 영역이 다양하며 영역 간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에 따라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였다. 이 기구는 상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을 갖추지 못하였고, 회의가 정례화 되지 못하고 개최된 회의도 너무 적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중 업무추진보고를 위한 회의를 제외한다면 아동정책을 논의한 회의는 연 1회~2회에 불과하고, 서면(e-mail)으로 회의가 대체된 경우도 있다.

더욱이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 담당 부처가 일원화 되었다가 2010년 3월 아동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다시 분리,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혼란기 상태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다른 기구의 설치가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현재 발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작업의 하나였던 아동청소년관련법률 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책, 즉 아동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상설기구화하고 이 기구에 권한, 재정, 인적·물적 자원의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기구의 신속한 운영재개가 요구된다(이재연, 2010).

(5)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설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폭 넓은 권한을 가진 아동 옴부즈맨이나 커미셔너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설립할 것을 회원국에 적극적으로 권고해 왔다.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2006년 10월 24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범사업의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08년부터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고 아동과 청소년업무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의 와중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산하의 옴부즈퍼슨 제도가 2009년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2010년 옴부즈퍼슨 등의 임명을 포함 운영이 재개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여전히 위탁 형태로 존재한다. 위탁형식을 통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은 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의 문제와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재연·황옥경·김효진, 2009).

아동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요청에 의한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현재의 위탁운영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위탁형태의 운영이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탁운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모든 유형의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사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저조하다.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그 존재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현재 법적기반에 근거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권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아동권리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권

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정부에 의한 위탁형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업무는 상당부문 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그 동안 WFFC보고서,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였다. 반면 센터의 본래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직원은 현재 센터 소장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인력인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임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인력구조로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야하며 어떠한 권한을 주어야 할지에 대하여 정부는 아동권리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과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맨 사무국이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당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이재연 외, 2009).

(6) 아동 담당 부서의 확대 및 핵심연구 연구기관 설립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아동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행정체계를 구비하는 작업일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아동정책의 이념을 적절히 수용해 낼 수 있는 아동담당부서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배경을 다음의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아동권리 보호 둘째, 보편주의 서비스 지향 셋째, 아동정책의 업무추진의 효과성은

아동정책을 전달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아동권리 보호여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동의가 있고 아동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이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효과성은 정책 수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황옥경, 2005).

특히 아동정책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전반적 아동의 삶과 지위(state)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혹은 아동관련 지표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동권리현황에 관한 종합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모든 아동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양상을 보이며 역량 또한 다양하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역량은 아동자신의 경험, 자신에 대한 기대, 사회적 상황,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자신이 소유한 경제적 역량, 신체적 건강 상태 등에 의해 역량을 평가받는 어른과 달리 아동의 역량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질에 따라 다르다.

아동의 발달을 적극지원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그리고 의사표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모든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지표를 선정하고 성취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아동정책을 토대로 계획될 수 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적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하다. 아동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먼저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돌보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종사원, 시 공무원, 정부 공무원, 시설 담당자, 전통적 지도자 등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제12조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자기 의견 표명을 지지하고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동의 의사가 법과 기관의 규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규정과 여러 장치에 의해 존중 받도록 해야 하며 이 규정과 장치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와 미디어 등을 활용한 대중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통상적인 관념을 바꾸어,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 태도에 대항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2. 청소년의 발달권 · 참여권 정책방안

1) 청소년 발달권 정책방안

(1) 청소년 발달권 정책현황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급격한 변화와 발달이다. 아동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변화와 발달의 모습이 나타난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발달의 모습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발달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생애 전체의 행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청소년은 생애 전체의 행복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직업적인 제반 측면에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청소년의 발달권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태도, 행동, 기술의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성인이 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최창욱 외, 2006: 118). 국가나 사회는 청소년의 발달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청소년의 발달이 지니는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해 발달에 관련된 제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발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발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청소년 발달이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발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국가의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민법, 형법, 소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청소년의 발달권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유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을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바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의 결과 중학교 진학률은 99.9%,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대학교 진학률은 83.8%에 달하고 있다. PISA 2006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만15세 청소년은 OECD 국가 중 읽기 1위, 수학 1~2위, 과학 5~9위의 성취를 보이고 있다. 학업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해 2004년 소년원법을 개정하여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 학교를 정규학교화 하였고 2006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새터민 청소년을 위하여 하나원 입소교육, 사회입문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업중단학생의 계속 교육을 위해 2005년 '초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 조항 신설하여 대안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 사업,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을 위한 정책을 보면 국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

조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갈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6년부터 청소년이 방과 후 시간대에 전국의 광역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다양하게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존 정책을 실시하여 2008년 현재 106개의 문화존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지원정책을 펼쳐 2008년 현재 2000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YP(Youth Patro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 발달에 기본 토대가 되는 건강 가정 유지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센터, WEE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 국가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중시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청소년봉사활동 대축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구촌화 추세에 맞추어 국가 간 청소년 교류와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내에 청소년교류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과 같은 참여 프로그램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직업적 발달을 위해서, 국가는 근로기준법에 연소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취업희망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진로지도프로그램(Job으로), 취업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지원을 위해 두드림존(Do Dream Zone) 사업을 하고 있으며, 워크넷(Work-Net)을 통해 각종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을 통해서 각종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애로 청소년의 직업 개척을 위해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약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약물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학교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학교건강검사와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과목을 정규과목화 하였다.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상담과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TV 등 대중매체에 음주, 흡연 장면 노출을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체벌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대, 폭력,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소년 발달권 정책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가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① 청소년 발달권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 미비

청소년의 발달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생애의 행복을 좌우하는 매우 요소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발달은 개인의 행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하여 역량 있는 시민이 될 때, 사회와 국가는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발달권이 지니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의의를 인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발달에 관한 제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발달이 지니는 이런 가치를 인정하여 발달권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발달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청소년 발달권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 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지표체계와 자료 축적 미흡

학술적으로 볼 때, 청소년 발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발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발달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지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발달 관련 지표체계가 과학적으로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청소년 발달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때 청소년 발달에 관한 국가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③ 인지적 발달과 관련한 문제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교 수업 이해도와 사교육 경험은 다른 계층 청소년에 비해 부족하다. 학교 수업의 이해도를 보면, '이해가 매우 힘들다'와 '힘들다'의 전체 평균이 26.0%인데 가족구성별로 보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24.8%로 전체 평균보다 적은데 비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32.1%, 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34.8%로 전체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에 비해서도 높다. 경제수준별로도 보면, 상층 청소년의 경우 18.5%, 중층 청소년의 경우 25.5%, 하층 청소년의 경우 40.2%로 계층별 격차가 크고 특히 취약계층인 하층 청소년이 학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이런 격차는 사교육 경험 유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전체 평균 비율이 36.5%이다. 가족구성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33.5%로 전체 평균보다 적은데 비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52.5%, 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61.1%로 전체 평균, 양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격차는 경제수준별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상층 청소년의 경우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24.3%임에 비해 하층 청소년의 경우 61.1%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경험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 효과성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 효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63.3%가 되고 이런 응답

경향은 계층별로도 차이가 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나 인지발달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교 수업 이해도 부족이나 사교육 경험이 없는 것은 이들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저해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저해는 취약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④ 정서적 발달과 관련한 문제점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 시설 부족 :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와 여가 시설이 충분해야 한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내 문화 및 여가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9.0%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문화 및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에 있어 계층별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경제 수준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은 58.0%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반면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은 70.2%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 여가 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데다 이런 부족함은 계층별로 격차가 난다.

○ 지나친 학업스트레스 :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63.0%가 고민거리의 제1순위로 학업스트레스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업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고민의 정도는 학업성적이나 계층별로 반비례하여 나타나 있다. 학업스트레스를 제1순위로 꼽는 비율이 학업성적이 상에 속하는 청소년은 66.6%이나 하에 속하는 청소년은 56.4%이고,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65.3%이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은 51.5%, 조손가정의 청소년은 41.9%이다. 그리고 경제수준 상에 속하는 청소년은 64.2%, 하에 속하는 청소년은 41.1%이다. 성적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아버지의 역할 부족 :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

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25.5%, 어머니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7.5%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적다. 특히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서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경제 수준 상층이 16.7%임에 비해 하층의 비율은 45.1%에 달한다.

○ 학교선생님과의 대화 부족 :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낮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43.1%가 학교선생님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경제 수준이 하층에 속하는 청소년의 경우 51.2%로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의 비율 38.5%보다 높아 계층별로 선생님과의 접촉에 있어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사회적 발달과 관련한 문제점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있어 실태 조사의 결과 청소년의 55.3%가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참여율은 4.8%에 불과하다. 학교 밖에 많은 청소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에서의 동아리 활동이 저조함을 나타낸 결과이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이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리 활동이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 가입/활동에 있어서는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실태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88.1%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단체 가입과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이라는 점만을 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단체 가입과 활동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무관심한 것은 사회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⑥ 직업적 발달과 관련한 문제점

청소년의 건강한 직업적 발달을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응답 청소년의 59.0%가 진로교육 경험이 없다. 특히 대학진학이냐 사회진출이냐의 기로에 선 고등학교 청소년(진로교육 경험 없음 62.7%)이 중학교 청소년(진로경험 없음 54.3%)보다 진로교육 경험이 적다는 것은 문제이다.

⑦ 신체적 발달과 관련한 문제점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활발한 신진대사 활동을 통해 거의 성인의 몸에 가까운 발달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이 이후 성인기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과 영양 공급,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42.2%에 이른다. 200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15~24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30분 정도임을 감안하면, 6시간 이하의 수면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6시간 이하 비율 : 중학교 청소년 19.6%, 고등학교 청소년 51.3%),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6시간 이하 비율 : 경제수준 상층 청소년 38.8%, 하층 청소년 48.3%) 수면시간이 짧아진다.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기적인 운동 실천에서도 1년에 1-2회를 포함하여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34.2%에 달한다. 특히 경제수준이 하층일수록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점(상층 청소년 21.8%, 하층 청소년 38.3%)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3) 청소년 발달권 정책의 개선방안

① 청소년 발달권 규정과 과학적인 지표체계 구축

청소년 발달권을 청소년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 명문화 하고 청소년 발달에 관한 정책을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현재 여성가족부)

가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격상 청소년 발달에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서에서 입안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은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해야 한다. 그래야 청소년 발달에 관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청소년 발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안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에 관한 지표를 과학적으로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청소년 발달의 세부 영역을 나누고 이에 관한 지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측정하고 축적하는 일은 청소년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연구원 내에 청소년 발달 연구센터를 두어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인지적 발달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경제적 하층 청소년의 학교 수업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사교육 경험 비율도 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 대책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학습 멘토링제, 학원수강 바우처 시스템, 방과 후 교실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정서적 발달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청소년들이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늘림으로써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여가시설만 늘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가시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래집단과 함께 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급도 필요하다. 가족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많은 청소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

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면 청소년문제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등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게 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유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매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청소년의 날을 정하고 이 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박물관, 고궁, 극장 등의 입장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학생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대화를 주기적으로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④ 사회적 발달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단체에의 가입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에게 유용하고 청소년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만한 동아리와 청소년단체를 많이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와 청소년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여건을 만들고,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학교 밖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조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대회를 열고 동아리 활동에 부모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함께 하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후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격차도 줄어들고 기성세대의 경험이 전수되어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⑤ 직업적 발달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직업은 인간의 생존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이 장차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직업적 발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직업적 발달을 위해서는 체계적이 진로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면 **59.0%**의 청소년이 진로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직업현장체험을 다양하게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직업현장과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을 직업현장으로, 직업현장의 전문가를 학교로 상호 방문하여 체험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직업자원을 종합한 직업자원지도를 만들어 학교에 공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직업현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직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다양한 직업세계를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웹 사이트에 올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⑥ 신체적 발달에 관한 정책 개선방안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학교나 학원에서 학업을 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청소년 관련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있는 영양 등이 중요함을 알리는 건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도록 학교체육과 사회체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쉽게 있도록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사회체육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참여권 정책방안

(1) 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현황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Hart, 1997; Winter, 1997)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참여를 성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내재된 본질적인 욕구로 인정하고, 청소년의 참여도 점점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학교, 공공정책, 사회 등에서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진정하고 의미 있는 참여(authentic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UNICEF, 2002).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함으로써 청소년 참여권 정책을 독립된 영역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청소년 참여권 정책은 사회 전반의 인식과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청소년정책 중 가장 진전의 속도가 느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여·야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의 정부 등장과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 참여권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청소년 참여권 정책은 더욱 진전하여 보호 육성의 대상에서 성인과 파트너십을 가진 참여의 주체로 청소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개정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청소년 참여보장을 명시하였고,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특별회의를 제도화 하였다. 동년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의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

---

*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 등을 청소년의 자율참여확대를 위해 제시하였다.

** 참여정부 대통령인수위의 '새 정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좌표'의 기조를 이어 받아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수립 시부터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정책과 시설에서의 청소년 참여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청소년 관련 법 개정과 제정에서 이런 원칙이 제도로 규정되었다.

체에서의 참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명문화 하였다. 청소년 참여권 관련 정책추진체계도 정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참여개발팀(참여·인권팀)을 설치하였다(김헌태 외, 2006).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참여·인권팀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내 청소년정책과에서 청소년 참여권 관련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청소년의 사회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보고,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와 운영 개선, 청소년 참여활동 거점 공간 지정·운영과 확대, 지역사회·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여건 강화, 국제적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연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6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약 3,2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258개의 청소년시설에서 약 3,800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에는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 약 400명이 참여하여 시·도별 지역회의 토론을 거쳐 35개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 전국의 아동대표 약 150명이 아동총회를 열어 '우리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이런 제도권 안에서의 참여 외에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비제도권 속에서의 참여활동을 통해서 인권으로서 참여권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촛불집회, 온라인 상의 다양한 카페활동과 토론, 청소년 NGO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 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문제점

① 청소년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청소년 참여는 인권 차원의 가치를 지닌다. 사회성과 정치성을 본성으로 지닌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적인 욕구로 참여 지향성을 가지며 참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치공동체의 참여과정에서 배제되게 되면 인간으로서 존재

감과 가치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참여는 인권으로서 위상을 가지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중요하며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참여의 가치는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참여는 청소년을 성장·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은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시민으로서 역량을 증진하게 된다. 교육기제로서 참여의 가치는 일찍부터 참여민주주의자들이 강조해온 것이다(Barber, 1984; Dewey, 1916; Pateman, 1970; Rousseau, 1964, 이환 역 1999; Thompson, 1970). 또한 참여는 사회자원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지닌 에너지와 역량을 투입하여 사회발전과 변화를 추동하는 가치를 가진다.

우리 사회의 정책가나 기성세대는 청소년 참여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이 보인다. 청소년 참여 현황에서 보았듯이 청소년 참여 관련 정책 추진부서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현 정부 들어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 참여가 지니는 가치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미흡한 인식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정책가들의 인식 수준은 사회 일반의 인식 수준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관련 제도와 행사 등을 마련해 놓고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사회 일반에서는 아직도 청소년은 미숙하고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자원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보다는 결핍과 문제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경향은 실태 조사의 결과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 46.3%, 중고등학생 73.0%,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 48.1%, 중고등학생 77.2%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식은 사람의 가치판단과 행동을 좌우하며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풍토와 문화, 제도의 성립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참여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참여 가치의 인

정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성세대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실태조사 결과 사회 편견을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는 중고등학생이 63.0%에 이를 정도로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 인식 개선과 부모님 협조를 초등학생 56.6%, 중고등학생 45.3%로 들고 있는 점도 청소년 참여를 위해서는 성인들의 인식이 중요하고 현재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에 대한 참여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미흡

청소년이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인권을 실현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려면 참여 경로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경로와 제도를 갖추어 놓아도 일반 청소년이 이를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 일 수밖에 없다. 1998년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 참여제도와 경로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은 이를 알고 있지 못하다. 참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초등학생 79.3%, 중고등학생 75.7%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정보부족'을 들고 있는 비율이 초등학생 40.3%, 중고등학생 75.2%, 청소년용 정책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 74.0%, 중고등학생 79.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공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초등학생 85.8%, 중고등학생 87.0%, 권리침해 시 상담 구제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초등학생 57.0%, 중고등학생 77.1%, 청소년 정책관련 자치기구에 대해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의 비율이 각각 초등학생 24.7%, 50.5%, 중고등학생이 21.7%, 64.3%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난 점은 청소년이 참여 제도와 경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나타낸다.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권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 63.9%, 중고등학생 73.5%로 나타난

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참여를 위한 교육, 참여를 통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여에는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공공선을 중시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이런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어 갈 때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터인데, 이에 관한 체계적인 참여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 비제도적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 부족

청소년의 참여를 크게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 등을 통한 선거참여, 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은 정책참여 등과 같이 법과 같은 규범에 의해 정형화되고 공식화되어 있는 참여유형을 일컫는다. 반면 비제도적 참여는 인터넷 참여와 토론, 거리에서의 집회와 시위 등과 같이 어떤 규범에 의해 정형화되고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참여유형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참여는 비제도적 참여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나 경제적인 비용이 적게 든다(이승종,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 여러 나라들을 보면 전통적인 제도적 참여유형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제도적인 참여유형에 대한 관심과 실제 참여가 커지고 있다(Bennett, 2007).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예는 촛불집회,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결사체 형성과 토론 활성화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촛불집회나 인터넷에서의 결사체 형성과 표현은 헌법상 보장된 청소년의 참여권이다. 단,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점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제도적 참여에 대해서 공권력을 통한 억압,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훈계나 매도 이외의 정부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워 불필요한 긴장과 자원의 소모가 나타나기도 한다.

④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청소년의 참여는 다양한 부문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국가 정책과 사회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대부분 성인 중심의 기성세대가 하며 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경험도 성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원도 대부분 성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성인들의 안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의 참여에 있어서 성인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을 중시하여 Hart(1992)는 성인 참여 없이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7단계)보다는 청소년이 주도하되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8단계)를 청소년 참여 사다리의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한 것이다. 청소년 참여정책의 현실을 보면 성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협력체계 구축의 부족은 학교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이 청소년이 학생인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실현을 위해서 학교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 많은 참여 거리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 모색에 있어 고민을 하는 민간기업과도 정부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청소년 생활세계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 부족

청소년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나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나 사안은 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과 같은 생활세계에서 일어난다. 청소년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간·주제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 UNICEF(2003)에서도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할수록 참여기회는 사적공간에서 공적공간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어간다고 한다. 기존의 청소년의 참여권 정책을 보면 예전부터 행해져 온 사회봉사활동과 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지자체의 참여위원회, 최근에 도입된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지만,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생활세계에

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은 부족한 편이다.

⑥ 청소년 참여의 국제 교류 체계 구축 미흡

오늘날 지구촌화 흐름에 따라 각 나라와 문화권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호 발전에 도움을 받고 있다. 청소년 참여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일찍부터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EU의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영국의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국민투표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고안된 The Regional Referendum Great North Youth Vote 프로그램, 16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Involving Young People in the Electoral Process 프로그램,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하려는 York Central 프로그램, 미국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Youth Service America, 청소년의 참여 리더십 형성을 지향하는 Activism 2000 Project,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Youth for Justice,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를 위한 San Francisco Youth Commission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나라들과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 체계를 구축하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다.

(3) 청소년 참여권 정책의 개선방안

① 청소년정책담당자, 청소년지도자,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청소년정책담당자가 청소년참여를 인권 차원에서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시민역량을 계발하고 사회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담당자의 연수나 교육에는 반드시 청소년 참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정책담당자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나 제도를 탐구하게 하고 우수한 탐구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 참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는 청소년시민역량·참여팀(과), 지방에서는 청소년시민역량 · 참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현직 연수에 있어 참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우호적인 풍토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참여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활용하거나, 국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 저명 인사들을 청소년 참여권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회 여론 주도층을 교육하게 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참여 정보의 제공과 참여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

참여 정보에 관련된 실태조사의 결과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참여에 관한 정책과 제도, 경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실제 참여 행동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다음 단계의 판단과 행동을 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형 책자나 e-팜플렛 등을 만들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지역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시설/단체 등을 통해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만을 통해서 참여 정보를 청소년에게 인지시키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체계를 통해서 참여 정보를 전파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학습하는 교육과정에 중요한 참여에 관한 정책과 제도, 경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정책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의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개편 시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참여 정보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 참여 관련한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가 지닌 교육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참여는 인권으로서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기제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참여의 교육기제를 살린 대표적인 예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이다.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에서는 막연하게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과정에서 시민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적 설계를 한 의미 있는 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를 하도록 한다. 참여를 하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 있지만,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을 성장, 발달시키는 일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참여를 통한 교육은 프레이리(Freire)의 성인문해교육모델을 청소년에게 적용한 EE 모델(Empowerment Educational Model)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EE 모델은 지역사회의 참여 과정에서 경청(listening)-대화(dialogue)-행동(action)-성찰(reflection)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Jennings et al., 2006).

이외에 참여를 통한 교육은 참여리서치프로그램(Participatory Research Program), 참여리더십학교(Youth Participatory Leadership Academy) 등을 통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시간대(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참여리더십학교를 개설하여 서비스러닝, 참여리서치프로그램,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여리더십학교는 학교의 방과후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다. 중앙의 정부부처에서는 정책 지원을 하고, 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 각 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박람회장에 청소년 참여 부스를 설치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전시하고 참여에 관련된 각 종 정보를 알리는 것도 한 방안이다.

③ 청소년 참여 친화적인 지방자치단체(도시) 모델 형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청소년이 심리적·물리적으로 볼 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단위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시장 또는 시의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청소년 친화 도시 프로그램(The Child-Friendly Cities initiative)이다. 이는 청소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 수준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2001년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200여개의 도시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들이 매년 대회를 열어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공유하고 가장 우수한 활동을 벌인 도시에 상을 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청소년 권리를 위한 시장' 운동('mayors for child rights' movement)을 펼치기도 하고, 분쟁지역인 팔레스타인지역에서도 청소년 활동 센터(Child Activity Centers)를 두어 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 모델을 만들고 있다(UNICEF, 2003).

이런 외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 모델 정책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별로 거점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청소년 참여 친화 도시 모델 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를 다른 도시로 확대해 가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참여 친화 도시 모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요소로 참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위원회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 군수)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회(San Francisco Youth Commission)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문성호, 2006). 이외에 자치법규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두어야 한다. 청소년의회는 의회민주주의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참여의 장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청소년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이 의견을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해야 한다.

④ 세대 간, 부문 간 청소년 참여 협력 체계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효과적이지도 않다. 청소년 참여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국가, 세계 차원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과 세대,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세대 간 협력,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참여 단계 중 청소년이 주도하되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를 최고의 단계로 Hart가 설정한 것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참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성인과 청소년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과 함께 하는 참여를 통해서 성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 청소년이 가진 창의성과 에너지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성인, 청소년이 함께 하는 공동의사결정모델, 공동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또, 참여 멘토링제를 도입해서 참여를 매개로 성인 또는 선배의 경험과 지식 등이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이므로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학교교육정책과 분리된 청소년정책만으로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한계가 있다. 청소년참여권에 관련된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수록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정책부서와 학교교육정책부서의 유기적인 정책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로,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학교-청소년시설-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구안, 운영하면서 학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각각으로 하여금 협력체제 속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1 기업 1 참여프로그램 후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도 이런 시대정신을 수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청소년의 참여와 연계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하여금 하나의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 후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기업과 청소년단체가 공동으로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가정은 청소년이 처음으로 참여경험을 하는 곳이다. 가정에서의 참여경험은 이후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에서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가 가족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로 전환되면서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보급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다.

⑤ 밑으로부터 정책 참여 활성화와 비제도권 참여 수렴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해 두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청소년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또는 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들이 선출하고, 그 활동 과정에서도 자신들을 선출한 일반 청소년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민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 또는 이들 대표들에 다시 선출된 대표들을 청소년특별회의 또는 참여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참여기구의 대표성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정책에 투입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요구를 제도권으로 수렴함으로써 청소년참여가 비제도권으로 급진화 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밑으로부터 참여를 활성화 하고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수준의 토론회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급별로 토론회를 나누고(초등, 중고등, 대학 등), 밑으로부터 예선 대회를 거쳐 전국 수준의 본 대회를 치르게 하면 청소년들의 토론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제도권 참여가 활성화 되어 국가나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비제도권 참여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비제도권 참여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비합리성 등은 불필요한 사회자원의 낭비와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와 요구를 표출하고 모을 수 있는 제도권 참여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제도권에서, 집회와 토론을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청소년 집회와 토론의 광장을 보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너무 엄격하지 않은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지키면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이 광장에서 집회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와 토론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웹 2.0을 기반으로 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웹 2.0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확산·공유하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기성세대 이상의 참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은 시대의 대세로서 막을 수 없다. 국가는 웹 2.0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참여가 순기능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웹상에서 지켜야 하는 시민윤리에 대해 교육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웹 2.0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모니터링 체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참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인터넷 상의 청소년참여가 지니는 순기능을 최대화 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하며, 청소년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청소년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⑥ 청소년 참여 관련 국제 교류 활성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과 청소년 참여 관련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교류를 통해서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의 청소년 참여활동을 알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적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 참여 관련 국제회의나 발표회에 참석하는 것,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국제 청소년 참여 대회 또는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대회나 발표회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는 경우, 이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 많은 청소년들이 밑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강현아(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보고자료.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외(2008).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III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2010)'참여'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12,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 인권수준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인숙·오선영·송수진·정필현(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김헌태·김영인·고원·허동원(2006). 미래예측을 위한 청소년 참여·인권 환경 및 정책분석.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모상현·김희진(2009).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IV : 생존권·보호권 인군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성호(2006).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6), pp. 201-219.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안동현(2009). 한국아동학회춘계토론문.

이민희(2008). 청소년의 발달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p. 54-5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봉주 외(2006a). 2006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이봉주 외(2006b)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이봉주·곽금주·구인회·김인화·김선숙·김지현·김혜란·박혜준·신혜은·윤명희·이강이·이광호·이순형·정익중·전미경(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봉주·황옥경(2005).아동정책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이승기·황옥경(2008).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보건복지부.
이승종(1997).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이용교(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박창남·이중섭(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Ⅱ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천정웅·안경순(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서울: 인간과 복지.
이재연·박은미·황옥경·김형모·이은주·강현아(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재연·황옥경·이은주(2008).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 연구보고서. 서울복지재단.
이재연·황옥경·김효진(2009). 아동권리. 한국아동학회.
이종원·장근영·김형주(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Ⅱ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중섭·박해석(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Ⅰ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옥경(200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황옥경(2003).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수립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권 1호. pp. 1-24. 서울 :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2005). 아동정책 전달체계분석-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2005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53-75.
황옥경(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아시아아동의 과거, 현재, 미래. 아시아아동권리포럼 자료집. 한국아동권리학회. 일본아동권리종합연구소 공동주최.
황옥경(2009a).「한국아동의 삶의 현주소」에 대한 토론.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황옥경(2009b). 사회속의 아동. 서울: 창지사.

황옥경(2010). 아동권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어린이재단 포럼.

황옥경(2010).아동에 대한 교회 지원의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http://www.childrenssociety.org.uk/all_about_us/who_we_are/our_church_partnership/4335.html, 2010. 9.25일 검색.

황옥경·이호균(2006). 국가행동계획, 중장기아동정책과 국가행동 계획 연구 중 국가행동계획 연구 부분. 서울: 보건복지부 .

황옥경·정준미(2006).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Barber, Benjamin R.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Bennett, W. L.(2007). "Civic learning in changing democracies : challenges for citizenship and civic education". Dahlgren, P. ed. *Young Citizens and New Media*. New York: Routledge. pp. 59-7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Kinder- und Jugendhilfe.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Berlin: Druck Vogt GmbH.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Hrsg.)(2000). *Die Rechte der Kinder von Logo einfach erklärt*. Stuttgart: PV Projekt Verlag GmbH.

Children's Play Council(2006). *Planning for play-guidance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local play strategy*. London: Children's Play Council.

DCSF(2010). *Early Intervention*, HMSO.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2008). *Play strategy-play for life*. London: DCSF Publications.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b). *Statutory guidance to Children's Trust*. London: DCSF.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7). *The Children's Plan: Building brighter futures*. London: DCSF.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a). *Fair play: A consultation on the play strategy*. London: DCSF.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역 (1991).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DTV(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New York: UNICEF.

Hart, R.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UNICEF.

Jennings, L. B., Parra-Medina, De. M., Messias, De. K. H., & McLoughlin, K.(2006). Toward a Critical Social Theory of Youth Empowerment. In B. N. Checkoway & L. M. Gutierrez ed.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New York : The Haworth Press. pp. 31-56.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Reynolds, A. J., Temple, J. A., Robertson, D. L., & Mann, E. A(2002). Age 21 cost-benefit analysis of the Title, Chicago Child-Parent Center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4: 267-303.

Rousseau, J. J.(1964). *Du Contrat Social*. Paris: Gallimard. 이환 역(1999). 『사회계약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chweinhart, L. J., Montie, J., Xiang, Z., Barnett, W. S., Belfield, C. R., & Nores, M.(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Ypsilanti: High/Scope Press.

Sherrod, L.R., Flanagan, C.A., Kassimir, R., & Syvertsen, A.K. (Eds.).(2006). *Youth activism: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London: Greenwood Press.

The children's Society(2009). *A Good Childhood*. Penguin Books.

Thompson, Dennis F. (1970). *The Democratic Citize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UNICEF(2003).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3*. New York: UNICEF.

Unicef(2005). *Laying the Foundation for Children's Rights*. Innocenti Publications.

United Nations (2005). *World youth report 2005: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Winter, Micha de(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ress.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전공 교수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권혜정 서울 상원초등학교 교사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
김남정 한국청소년진흥원 참여봉사부 팀장
김봉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형근 서울 등원초등학교 교사
신승배 삼육대학교 연구교수
양돈규 중앙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센터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성 고양 행신고등학교 교사
이봉철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정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이지혜 서울 대림초등학교 교사
정혜민 서울 방산초등학교 교사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세용 서울 동산초등학교 교사
최윤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10-R0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 · 백혜정 · 임희진 · 이계오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 · 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 · 조흥식

10-R02-1 아동 · 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 · 조흥식

10-R03 위기아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 · 윤옥경 · 진혜전 · 황의갑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 · 송병국 · 이교봉 · 김영석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 · 오승근 · 김은정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유홍식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전명기

10-R08 초 · 중 · 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민경석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송민경 · 박선영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 · 이기봉 · 김현주 · 이명선 · 이은경 · 박경옥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 · 이기봉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최인재 · 이기봉 · 김청송 · 김진호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 · 미 · 일 · 중 4개국 비교- / 최인재 · 이기봉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 · 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 · 김영지 · 김영인 · 이민희 · 황옥경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 ·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 -발달권 · 참여권- / 모상현 · 김영지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 ·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 · 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 · 김영지 · 김윤나 · 이중섭

10-R12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 · 김승경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 · 이현숙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 · 최윤정 · 안소연 · 윤소윤

10-R14 취약가정 · 시설의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혜연 · 황진구 · 유성렬 · 이상균 · 정윤경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 · 오해섭 · 김지연 · 정익중 · 정소연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 · 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기헌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헌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 용역과제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 · 김정환 · 조윤오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조영희
10-R26 7~13세 아동 · 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 · 장근영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 · 백혜정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 · 김지경 · 김승경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10-R31 보편적 · 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김지연 · 이춘화 · 오해섭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 · 김승경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 · 류방란 · 김선아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헌 · 김형주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 · 이창호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 · 김지경 · 임희진(2011년 발간)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 · 장근영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2011년 발간)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 · 모상현 · 서정아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 · 이혜연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 · 이혜연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 · 이혜연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 · 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10-s03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10-s08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 · 발달권 · 참여군 정량지표- (6/29)
10-s09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I 자료집 (7/2)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10-s12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II 자료집 (7/27)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8/19)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10-s24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10-s27 2010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IV 자료집 (10/14)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10-s32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 · 참여권- (11/5)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 · 보완(안) 공청회 (11/8)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Ⅰ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Ⅱ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Ⅲ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Ⅳ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Ⅴ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Ⅵ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Ⅰ: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Ⅶ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헌·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Ⅷ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Ⅰ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헌·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Ⅸ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Ⅱ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Ⅹ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Ⅲ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헌·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Ⅴ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87-8

ISBN 978-89-7816-886-1(세트)